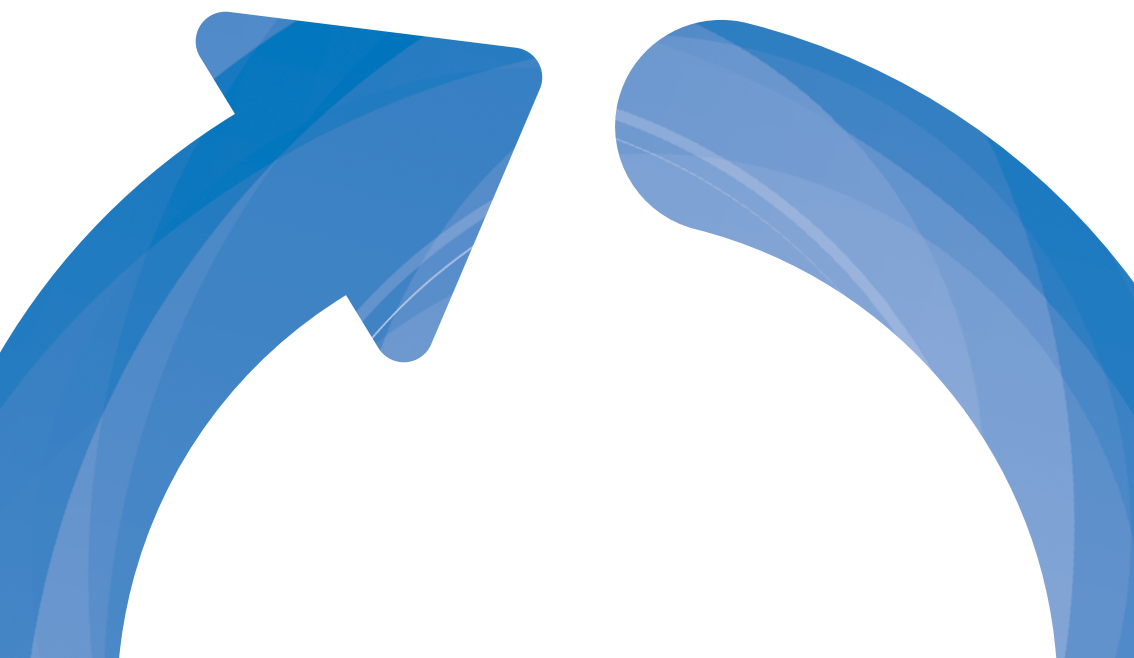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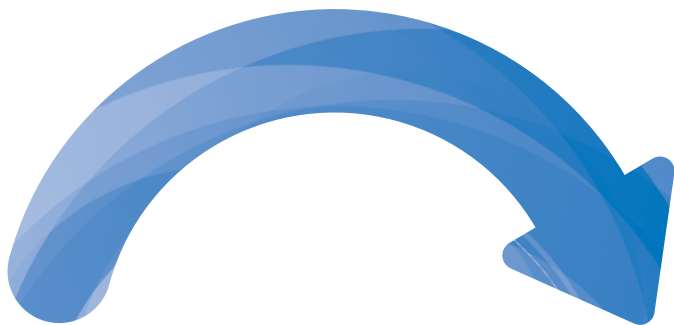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적용 대상별,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92)

01 금융·재정·조세 (105)

기획재정부 (92)

1. 장병내일준비자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군인)	63
2.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노후 경유자동차)	64
3.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 개별소비세를 조정 (발전기업)	65
4.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외교관 등)	66
5. 외국인관광객 숙박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관광객)	67
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외국인관광객)	68
7. 종합부동산세 개편 (일반국민)	69
8.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일반국민)	71
9.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일반국민)	72
10.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를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73
11.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상향 (일반국민)	74
12.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일반국민)	75
1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및 일몰 연장 (일반국민)	76
1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일반국민)	77
15. 영농·영여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일반국민)	78
16.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79
17.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80
18.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81
19.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82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종료 (일반국민)	83
21.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종료 (일반국민)	84
2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일반국민)	85
2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일반국민)	86
2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일반국민)	87
2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일반국민)	88
26.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일반국민)	90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27.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일반국민)	91
28.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일반국민)	92
29.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상향입법 등 (일반국민)	93
30.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 합리화 (일반국민)	94
31.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와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일반국민)	95
3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의 연장 (일반국민)	96
3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석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외 (일반국민)	97
34.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일반국민)	98
3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일반국민)	99
36.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100
37.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101
38.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102
39. 일반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103
40. 재활용폐자원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104
41.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일반국민)	105
42.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일반국민)	106
43.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일반국민)	107
4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일반국민)	108
45.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일반국민)	109
4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일반국민)	110
47. 부동산임대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혜택 축소 (일반국민)	111
48.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일반국민)	112
4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113
5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일반국민)	114
51.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일반국민)	115
52.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일반국민)	116
53.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일반국민)	117
54.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일반국민, 기업)	119
55.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율 인하 (일반국민, 기업)	120
56. 관세분야 지정·등록·특허 등의 취소사유 완화 (일반국민, 기업)	121
57. 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일반국민, 기업)	122
58.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일반국민, 기업)	123
59.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일반국민, 기업)	124
60. 통고처분 금액 납부 방법 개선 (일반국민, 기업)	125
61.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일반국민, 기업)	126
62. 환급금 총당사유 확대 (일반국민, 기업)	127
63.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일반국민, 기업)	128
64.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화 (일반국민, 기업)	129
65. 면세점 특허 갱신 등 제도 개선 (일반기업)	130

관세청 (1)

1.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일반기업)	164
---------------------------	-----

금융위원회 (8)

1.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근로자)	165
2.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일반국민)	166
3.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일반기업)	167
4.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일반기업)	168
5.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9
6.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70
7.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72
8.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청년~중장년(19세~64세))	173

02 교육 (3)

교육부 (3)

1.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교육기관)	177
2.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육기관)	178
3.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 (교육기관)	179

03 여성·육아·보육 (31)

보건복지부 (8)

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87
2.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영유아(0세~5세))	188
3.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영유아(0세~5세))	189
4.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영유아(0세~5세))	190
5.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영유아(0세~6세))	191
6.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아동(6세~12세))	192
7.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만 7세 미만)	193
8.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194

고용노동부 (6)

1. 아바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195
2.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근로자)	196
3.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197
4.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일반기업)	198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99
6.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00

여성가족부 (17)

1.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1
2.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출범·운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2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3
4.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4
5.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5
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6
7.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7
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8
9.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9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10
11.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확충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11
12.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청소년(13세~18세))	212
1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청소년(13세~18세))	213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청소년(13세~18세))	214
15.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13세~18세))	215
16.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중장년(30세~64세))	216
17.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중장년(30세~64세))	21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04 보건·복지 (37)

문화체육관광부 (1)

- | | |
|--|-----|
| 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선수가 없도록 장학금 지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225 |
|--|-----|

보건복지부 (24)

- | | |
|---|-----|
| 1.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근로자) | 226 |
| 2. 1세 미만 아동 및 임신부 의료비 부담 경감 (일반국민) | 227 |
| 3.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일반국민) | 228 |
| 4.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일반국민) | 229 |
| 5.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일반국민) | 230 |
| 6.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일반국민) | 231 |
|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일반국민) | 232 |
| 8.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일반국민) | 233 |
| 9. 감염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일반국민) | 234 |
| 10.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 235 |
| 1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장애인) | 236 |
| 1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장애인) | 237 |
| 13.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 238 |
| 1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239 |
| 15.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아동~중장년(6세~64세)) | 240 |
| 16.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 241 |
| 17.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 242 |
| 18.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청소년 이상(14세 이상)) | 243 |
| 19.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청년 이상(19세 이상)) | 244 |
| 20. “청년이 청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청년(19세~29세)) | 245 |
| 21.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청년~중장년(19세~64세)) | 246 |
| 22.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중장년 이상(30세 이상)) | 247 |
| 23.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중장년 이상(30세 이상)) | 248 |
| 24.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전연령) | 249 |

고용노동부 (5)

- | | |
|--|-----|
|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근로자) | 250 |
|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 252 |

3.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53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54
5.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55

국토교통부 (2)

1.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일반국민)	256
2.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지자체 및 공공기관)	257

식품의약품안전처 (5)

1.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58
2. 농약 안전관리강화로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전연령)	259
3.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전연령)	260
4.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전연령)	261
5.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전연령)	262

05 공공안전 및 질서 (11)

법무부 (2)

1.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 대폭 완화 등 국적제도 개선 (귀화관련자)	265
2. 귀화·국적회복자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제도 시행 (귀화관련자)	267

농림축산식품부 (1)

1.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일반국민)	268
--	-----

국토교통부 (3)

1. 버스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지자체 및 공공기관)	269
2.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270
3. 어린이 통학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 시행 (영유아~청소년(0세~18세))	271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3)

1.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일반국민)	272
2. 최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법 운용상 문제점 개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73
3.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 확대 (중장년(30세~64세))	274

기상청 (2)

1.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 (전연령)	275
2.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전연령)	276

06 국방·병무 (20)

국방부 (9)

1.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군인)	281
2.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군인)	282
3.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군인)	283
4.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허용 (군인)	284
5. 평상시에도 특별한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군인)	285
6. 군인도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 업무대행 지정 범위 확대 (군인)	286
7. 부사관 진급선발 제외 대상 개정 (군인)	287
8.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군인)	288
9.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군인)	289

국가보훈처 (3)

1.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290
2.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 직접 관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291
3.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292

병무청 (7)

1.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병역의무자)	293
2.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병역의무자)	294
3.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병역의무자)	295

4.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병역의무자)	296
5.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병역의무자)	297
6.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병역의무자)	298
7.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확대 (병역의무자)	299

방위사업청 (1)

1.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방위산업체)	300
---------------------------------------	-----

07 일반공공행정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07
2.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 TV 사업자 부담 경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08

문화체육관광부 (3)

1.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09
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화 (지역주민)	310
3.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청년~중장년(19세~64세))	311

국토교통부 (5)

1.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개시 (일반국민)	312
2.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일반국민)	313
3.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일반국민)	314
4.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일반국민)	315
5.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청년 이상(19세 이상))	316

중소벤처기업부 (5)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실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17
2.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18
3.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20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 | | |
|---|-----|
| 4.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설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 321 |
| 5.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존의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 322 |

조달청 (1)

- | | |
|--|-----|
| 1. 공공기관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GS로 변경 (지자체 및 공공기관) | 323 |
|--|-----|

문화재청 (2)

- | | |
|--|-----|
| 1. 문화재매매업 상호, 영업장소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마련 (문화재매매업자) | 324 |
| 2. 청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일반국민) | 325 |

특허청 (1)

- | | |
|----------------------------------|-----|
| 1.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일반국민) | 326 |
|----------------------------------|-----|

기상청 (2)

- | | |
|--|-----|
| 1.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 327 |
| 2.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 328 |

방송통신위원회 (1)

- | | |
|----------------------|-----|
| 1.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근로자) | 329 |
|----------------------|-----|

공정거래위원회 (9)

- | | |
|--|-----|
| 1.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일반기업) | 330 |
| 2.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일반기업) | 331 |
| 3.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 (일반기업) | 332 |
| 4.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일반기업) | 333 |
| 5. 수도권 가맹본부,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 (일반기업) | 334 |
| 6.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일반기업) | 335 |
| 7.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일반기업) | 336 |
| 8.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일반기업) | 337 |
| 9. 금지되는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유형 추가 (일반기업) | 338 |

국민권익위원회 (1)

1.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339

08 농림·해양·수산 (30)

농림축산식품부 (12)

1.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귀농귀촌 청년) 347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어업인) 348
3.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농·림·어업인) 349
4.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 (농·림·어업인) 350
5.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어업인) 351
6.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농·림·어업인) 352
7.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농·림·어업인) 353
8.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 지원 (농·림·어업인) 354
9.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농·림·어업인) 355
10.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식품기업) 356
11.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식품기업) 357
12. 농촌유희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청년, 귀촌희망자) 358

해양수산부 (12)

1.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근로자) 359
2. 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 출시 및 국고보조율 확대 (농·림·어업인) 360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 도입 (농·림·어업인) 361
4. 양식어업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농·림·어업인) 362
5.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5만원 지원 (농·림·어업인) 363
6.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일반국민) 364
7. 굴비, 생굴 품목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65
8.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366
9.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367
10.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행 (청년~중장년(19세~64세)) 368
11. 정부·민간이 함께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추진 (중장년(30세~64세)) 369
12. 감척대상을 어선어업에서 어구어업(정지성구획어업)까지 확대 (중장년(30세~64세)) 370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산림청 (5)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농·림·어업인)	371
2.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 (농·림·어업인)	372
3.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역제를 위한 제도개선 (일반국민)	373
4.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374
5.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청년(19세~29세))	375

기상청 (1)

1. 해양기상 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376
---	-----

09 산업·에너지·자원 (1)

해양수산부 (1)

1.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중장년(30세~64세))	379
---------------------------------------	-----

10 환경 (13)

환경부 (11)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일반기업)	383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일반기업)	384
3.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일반기업)	385
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일반기업)	386
5.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일반기업)	388
6.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 (일반기업)	389
7.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일반기업)	390
8.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일반기업)	391
9.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일반기업)	392
10.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393
11.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394

해양수산부 (2)

- | | |
|---|-----|
| 1.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중장년(30세~64세)) | 395 |
| 2. 노후 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중장년(30세~64세)) | 396 |

11 문화·체육·관광 (7)

문화체육관광부 (3)

- | | |
|---|-----|
| 1.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로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일반국민) | 399 |
| 2. 지역의 삶을 담은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지역주민) | 400 |
| 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401 |

국토교통부 (4)

- | | |
|--------------------------------------|-----|
| 1.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개선 등 이용편의 향상 (일반국민) | 402 |
| 2. 항공레저스포츠타운 저변 확대 (일반국민) | 403 |
| 3.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일반국민) | 404 |
| 4. 하늘길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일반국민) | 405 |

12 항만개발 (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2)

- | | |
|---|-----|
| 1.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규정 정비로 경쟁력 강화 (중장년(30세~64세)) | 409 |
| 2.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중장년(30세~64세)) | 410 |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45)

교육기관 (3)

교육부 (3)

1.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177
2.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178
3.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	179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3)

국가보훈처 (3)

1.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290
2.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 직접 관리	291
3.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292

군인 (10)

기획재정부 (1)

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63
-------------------------	----

국방부 (9)

1.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번호사 제도	281
2.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282

3. 유급지원병 총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283
4.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허용	284
5. 평상시에도 특별한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285
6. 군인도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 업무대행 지정 범위 확대	286
7. 부사관 진급선발 제외 대상 개정	287
8.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288
9.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289

귀농·귀촌 청년 (1)

농림축산식품부 (1)

1.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347
----------------	-----

귀화관련자 (2)

법무부 (2)

1.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 대폭 완화 등 국적제도 개선	265
2. 귀화·국적회복자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제도 시행	267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근로자 (8)

보건복지부 (1)

1.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226
------------------------	-----

고용노동부 (4)

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195
2.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196

3.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197
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50

해양수산부 (1)

1.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359
------------------	-----

방송통신위원회 (1)

1.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329
----------------	-----

금융위원회 (1)

1.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165
--------------------------------	-----

노후경유자동차 (1)

기획재정부 (1)

1.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64
--------------------------------	----

농·림·어업인 (14)

농림축산식품부 (8)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348
2.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349
3.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	350
4.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351
5.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352
6.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353
7.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 지원	354
8.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355

해양수산부 (4)

1. 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 출시 및 국고보조율 확대	360
2.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 도입	361
3. 양식어업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362
4.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5만원 지원	363

산림청 (2)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371
2.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	372

무주택자 (1)

국토교통부 (1)

1.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160
---------------------------------	-----

문화재매매업자 (1)

문화재청 (1)

1. 문화재매매업 상호, 영업장소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마련	324
--------------------------------------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발전기업 (1)

기획재정부 (1)

1.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조정	65
---------------------------	----



방위산업체 (1)

방위사업청 (1)

- | | |
|-------------------------------|-----|
| 1.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300 |
|-------------------------------|-----|

병역의무자 (7)

병무청 (7)

- | | |
|--|-----|
| 1.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 293 |
| 2.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294 |
| 3.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 295 |
| 4.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 296 |
| 5.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297 |
| 6.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 298 |
| 7.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확대 | 299 |

식품기업 (2)

농림축산식품부 (2)

- | | |
|-------------------------|-----|
| 1.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 356 |
| 2.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 357 |

신용카드사 (1)

국세청 (1)

- | | |
|----------------------------------|-----|
| 1.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 162 |
|----------------------------------|-----|

외교관 등 (1)

기획재정부 (1)

1.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66

외국인관광객 (2)

기획재정부 (2)

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67

68

일반국민 (72)

기획재정부 (47)

1. 종합부동산세 개편
2.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3.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5.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6.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7.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및 일몰 연장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9. 영농·영여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11.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2.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3.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종료
15.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종료
16.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69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1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85
18.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를 적용범위 확대	87
19.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88
20.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90
2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91
2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92
23.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상향입법 등	93
24. 토지와 건물·구축물의 공급가액 산정 합리화	94
25.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95
2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의 연장	96
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영역에서 석도에 의한 여객운송 영역 제외	97
28.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98
2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99
30.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영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0
31.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1
32. 영구임대주택 난방영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2
33. 일반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103
34. 재활용폐자원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04
35.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105
36.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106
37.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107
3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108
39.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9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10
41. 부동산산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혜택 축소	111
4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12
4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13
4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114
45.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115
46.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116
47.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117

문화체육관광부 (1)

1.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로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399
---	-----

농림축산식품부 (1)

1.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268
---------------------------------	-----

보건복지부 (8)

1.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227
2.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28
3.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29
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230
5.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231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232
7.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233
8.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234

국토교통부 (9)

1.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256
2.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개시	312
3.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313
4.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314
5.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315
6.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개선 등 이용편의 향상	402
7.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저변 확대	403
8.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404
9. 하늘길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405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2)

1.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272
2.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364

문화재청 (1)

1.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325
-------------------	-----

산림청 (1)

1.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역제를 위한 제도개선	373
-----------------------------	-----

특허청 (1)

- | | |
|---------------------------|-----|
| 1.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 326 |
|---------------------------|-----|

금융위원회 (1)

- | | |
|--------------------------|-----|
| 1.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166 |
|--------------------------|-----|

일반국민, 기업 (11)

기획재정부 (11)

- | | |
|-------------------------------|-----|
| 1.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 119 |
| 2.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율 인하 | 120 |
| 3. 관세분야 지정·등록·특허 등의 취소사유 완화 | 121 |
| 4. 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122 |
| 5.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안·허가 간주 규정 신설 | 123 |
| 6.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 124 |
| 7. 통고처분 금액 납부 방법 개선 | 125 |
| 8.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 126 |
| 9. 환급금 총당사유 확대 | 127 |
| 10.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 128 |
| 11.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화 | 129 |

일반기업 (44)

기획재정부 (22)

- | | |
|---------------------------------|-----|
| 1. 면세점 특허 갱신 등 제도 개선 | 130 |
| 2.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 131 |
| 3.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132 |
| 4.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133 |
| 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 135 |
| 6.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 136 |

7.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137
8. 기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정제도 합리화	138
9.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139
10.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140
11. 국가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141
1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2
13.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3
14. 농협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4
15.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145
16. 해외수리 선박·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폐지 등	146
17.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	147
18.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148
19. 설비투자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도입	149
20. 고용중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150
21.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151
2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152

환경부 (9)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383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84
3. 물관리기본법 제정 시행	385
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386
5.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388
6.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	389
7.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390
8.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391
9.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39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1)

1.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198
--	-----

관세청 (1)

1.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164
--------------------	-----

공정거래위원회 (9)

1.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30
2.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331
3.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	332
4.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333
5. 수도권 가맹본부,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	334
6.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335
7.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336
8.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337
9. 금지되는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유형 추가	338

금융위원회 (2)

1.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167
2.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168

장애인 (3)

보건복지부 (3)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35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236
3.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237

종교인 (1)

국세청 (1)

1. 2019년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163
-----------------------------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9)

기획재정부 (3)

1.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153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154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1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307
2.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 TV 사업자 부담 경감	308

문화체육관광부 (1)

1.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309
---------------------------------------	-----

고용노동부 (4)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199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200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252
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253

해양수산부 (2)

1. 최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법 운용상 문제점 개선	273
2. 굴비, 생굴 품목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365

중소벤처기업부 (5)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실시	317
2.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318
3.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320
4.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설	321
5.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존의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32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2)

1.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169
2.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170

지역주민 (2)

문화체육관광부 (2)

1.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화	310
2. 지역의 삶을 담는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400

지자체 및 공공기관 (6)

보건복지부 (1)

1.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238
--------------------------------	-----

환경부 (1)

1.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393
------------------	-----

국토교통부 (3)

1.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257
2. 버스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269
3.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270

조달청 (1)

1. 공공기관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GS로 변경	323
---	-----

청년, 귀촌희망자 (1)

농림축산식품부 (1)

- | | |
|-------------------------|-----|
| 1.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 358 |
|-------------------------|-----|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7)

기획재정부 (3)

- | | |
|------------------|-----|
| 1.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156 |
| 2.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158 |
| 3. 일용근로자 세 부담 완화 | 159 |

문화체육관광부 (2)

- | | |
|--|-----|
| 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선수가 없도록 장학금 지급 | 225 |
| 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 401 |

보건복지부 (2)

- | | |
|-------------------------------|-----|
| 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 187 |
|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239 |

고용노동부 (2)

- | | |
|------------------------------------|-----|
|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254 |
| 2.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255 |

환경부 (1)

- | | |
|------------------------------------|-----|
| 1.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 지원 | 394 |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11)

1.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201
2.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출범·운영	202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203
4.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비 파견	204
5.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205
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206
7.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207
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208
9.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209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210
11.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확충	211

해양수산부 (2)

1.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366
2.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	367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258
----------------------------	-----

산림청 (1)

1.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374
------------------------------	-----

금융위원회 (1)

1.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172
------------------------	-----

국민권익위원회 (1)

1.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339
--------------------	-----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47)

영유아(0세~5세) (3)

보건복지부 (3)

- | | |
|------------------------------------|-----|
| 1.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188 |
| 2.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 189 |
| 3.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 190 |

영유아(0세~6세) (1)

보건복지부 (1)

- | | |
|------------------------|-----|
| 1.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 191 |
|------------------------|-----|

영유아~청소년(0세~18세) (1)

국토교통부 (1)

- | | |
|---------------------------------|-----|
| 1. 어린이 통학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 시행 | 271 |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아동(6세~12세) (1)

보건복지부 (1)

- | | |
|-----------------|-----|
| 1.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 192 |
|-----------------|-----|

아동~중장년(6세~64세) (1)

보건복지부 (1)

- | | |
|-------------------------|-----|
| 1.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240 |
|-------------------------|-----|

만 7세 미만 (1)

보건복지부 (1)

- | | |
|------------------------|-----|
| 1.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193 |
|------------------------|-----|

12세 이하 (1)

보건복지부 (1)

- | | |
|--------------------------------------|-----|
| 1.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241 |
|--------------------------------------|-----|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5)

보건복지부 (2)

- | | |
|-----------------------------|-----|
| 1.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 194 |
| 2.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 242 |

기상청 (3)

- | | |
|--|-----|
| 1.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 | 327 |
| 2.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 328 |
| 3. 해양기상 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 376 |

청소년 이상(14세 이상) (1)

보건복지부 (1)

- | | |
|--------------------|-----|
| 1.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243 |
|--------------------|-----|

청소년(13세~18세) (4)

여성가족부 (4)

- | | |
|---------------------------|-----|
| 1.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212 |
|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213 |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214 |
| 4.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215 |

청년 이상(19세 이상) (2)

보건복지부 (1)

- | | |
|-----------------------------------|-----|
| 1.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 244 |
|-----------------------------------|-----|

국토교통부 (1)

- | | |
|---------------------------|-----|
| 1.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 316 |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청년(19세~29세) (2)

보건복지부 (1)

- | | |
|-------------------------------|-----|
| 1. “청년이 청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 245 |
|-------------------------------|-----|

산림청 (1)

1.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375
-------------------	-----

만 19세~만 34세 (1)

국토교통부 (1)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	161
------------------------------------	-----

청년~중장년(19세~64세) (4)

문화체육관광부 (1)

1.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311
---------------------------------	-----

보건복지부 (1)

1.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246
--	-----

해양수산부 (1)

1.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행	368
-----------------------------------	-----

금융위원회 (1)

1.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173
--------------------	-----

중장년 이상(30세 이상) (2)

보건복지부 (2)

- | | |
|------------------------------------|-----|
| 1.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247 |
| 2.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 248 |

중장년(30세~64세) (10)

여성가족부 (2)

- | | |
|------------------------|-----|
| 1.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 216 |
| 2.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 217 |

해양수산부 (8)

- | | |
|------------------------------------|-----|
| 1.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 확대 | 274 |
| 2. 정부·민간이 함께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추진 | 369 |
| 3. 감척대상을 어선어업에서 어구어업(정치성구획어업)까지 확대 | 370 |
| 4.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 379 |
| 5.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 395 |
| 6. 노후 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 396 |
| 7.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규정 정비로 경쟁력 강화 | 409 |
| 8.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410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전연령 (7)

보건복지부 (1)

- | | |
|----------------|-----|
| 1.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 249 |
|----------------|-----|



식품의약품안전처 (4)

1. 농약 안전관리강화로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259
2.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260
3.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261
4.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262

기상청 (2)

1.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	275
2.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276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92)

기획재정부 (92)

금융·재정·조세 (92)

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63
2.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64
3.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조정	65
4.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66
5.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67
6.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68
7. 종합부동산세 개편	69
8.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71
9.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72
10.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를 적용기한 연장	73
11.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상향	74
12.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75
13.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및 일몰 연장	76
1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77
15. 영농·영여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78
16.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79
17.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0
18.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1
19.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82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종료	83
21.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종료	84
22.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85
2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86
24.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87
25.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88
26.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90
27.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91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28.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92
29.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상향입법 등	93
30. 토지와 건물·건축물의 공급가액 산정 합리화	94
31.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95
3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의 연장	96
3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서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외	97
34.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98
35.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99
36.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0
37.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1
38.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02
39. 일반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103
40. 재활용폐자원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104
41.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105
42.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106
43.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107
4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108
45.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9
4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10
47. 부동산임대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혜택 축소	111
48.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12
4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13
5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114
51.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115
52.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116
53.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117
54.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을 인하	119
55.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간산금율 인하	120
56. 관세분야 지정·등록·특허 등의 취소사유 완화	121
57. 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122
58.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123
59.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124
60. 통고처분 금액 납부 방법 개선	125
61.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126
62. 환급금 충당사유 확대	127
63.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128
64.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화	129
65. 면세점 특허 갱신 등 제도 개선	130
66.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131

67.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132
68.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133
6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135
70.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136
71.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137
72. 기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138
73.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139
74.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140
75. 국가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141
76.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2
77.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3
78. 농협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44
79. 관세 과세가액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145
80. 해외수리 선박·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폐지 등	146
81.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	147
82.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148
83.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도입	149
84.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150
85.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151
86.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152
87.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153
88.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154
8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155
90.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156
91.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158
92. 일용근로자 세 부담 완화	159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교육부 (3)

교육 (3)

1.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177
2.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178
3.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	1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일반공공행정 (2)

1.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307
2.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 TV 사업자 부담 경감	308

법무부 (2)

공공안전 및 질서 (2)

1.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 대폭 완화 등 국적제도 개선	265
2. 귀화·국적회복자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제도 시행	267

국방부 (9)

국방·병무 (9)

1.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281
2.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282
3. 유급지원병 총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283
4.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허용	284
5. 평상시에도 특별한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285
6. 군인도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 업무대행 지정 범위 확대	286
7. 부사관 진급선발 제외 대상 개정	287
8.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288
9.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289

문화체육관광부 (7)

보건·복지 (1)

- | | |
|--|-----|
| 1.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선수가 없도록 장학금 지급 | 225 |
|--|-----|

일반공공행정 (3)

- |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2만 명→8만 명) | 309 |
| 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화 | 310 |
| 3.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 311 |

문화·체육·관광 (3)

- | | |
|--|-----|
| 1.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로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 399 |
| 2. 지역의 삶을 담은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 400 |
| 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 401 |

농림축산식품부 (13)

공공안전 및 질서 (1)

- | | |
|---------------------------------|-----|
| 1.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 268 |
|---------------------------------|-----|

농림·해양·수산 (12)

- | | |
|--------------------------------------|-----|
| 1.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 347 |
| 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348 |
| 3.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 349 |
| 4.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 | 350 |
| 5.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 351 |
| 6.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 352 |
| 7.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353 |
| 8.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 지원 | 354 |
| 9.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355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10.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356
11.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357
12. 농촌유희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358

보건복지부 (32)

여성·육아·보육 (8)

1.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187
2.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188
3.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189
4.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190
5.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191
6.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192
7.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193
8.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194

보건·복지 (24)

1.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226
2. 1세 미만 아동 및 임신부 의료비 부담 경감	227
3.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28
4.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29
5.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230
6.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231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232
8.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233
9.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234
10.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35
1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236
1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237
13.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238
1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39
15.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240
16.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241
17.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242

18.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243
19.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244
20. “청년이 청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245
21.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246
22.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247
23.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248
24.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249

환경부 (11)

환경 (11)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383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84
3.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385
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386
5.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도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388
6.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	389
7.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390
8.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391
9.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392
10.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393
11.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 지원	394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11)

여성·육아·보육 (6)

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195
2.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196
3.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197
4.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198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199
6.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200

보건·복지 (5)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50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252
3.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253
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254
5.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255

여성가족부 (17)

여성·육아·보육 (17)

1.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201
2.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출범·운영	202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203
4.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봄비 파견	204
5.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205
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206
7.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207
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208
9.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209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210
11.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확충	211
12.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212
1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213
1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214
15.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215
16.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216
17.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217

국토교통부 (16)

금융·조세·재정 (2)

- | | |
|------------------------------------|-----|
| 1.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160 |
|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 | 161 |

보건·복지 (2)

- | | |
|--|-----|
| 1.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 256 |
| 2.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257 |

공공안전 및 질서 (3)

- | | |
|---------------------------------|-----|
| 1. 버스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 269 |
| 2.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 270 |
| 3. 어린이 통학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 시행 | 271 |

일반공공행정 (5)

- | | |
|-------------------------------------|-----|
| 1.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개시 | 312 |
| 2.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313 |
| 3.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314 |
| 4.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 315 |
| 5.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 316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4)

- | | |
|-------------------------------|-----|
| 1.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개선 등 이용편의 향상 | 402 |
|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저변 확대 | 403 |
| 3.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 404 |
| 4. 하늘길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 405 |



해양수산부 (20)

공공안전 및 질서 (3)

1.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272
2. 최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법 운용상 문제점 개선	273
3.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 확대	274

농림·해양·수산 (12)

1.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359
2. 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 출시 및 국고보조율 확대	360
3.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 도입	361
4. 양식어업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362
5.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5만원 지원	363
6.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364
7. 굴비, 생굴 품목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365
8.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366
9.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	367
10.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행	368
11. 정부·민간이 함께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추진	369
12. 감척대상을 어선어업에서 어구어업(정치성구획어업)까지 확대	370

산업·에너지·자원 (1)

1.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379
------------------------	-----

환경 (2)

1.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395
2. 노후 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396

항만개발 (2)

1.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규정 정비로 경쟁력 강화	409
2.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410

중소벤처기업부 (5)

일반공공행정 (5)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실시	317
2.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318
3.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320
4.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설	321
5.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존의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322

국가보훈처 (3)

국방·병무 (3)

1.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290
2.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 직접 관리	291
3. 대한민국입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292

식품의약품안전처 (5)

보건·복지 (5)

1.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258
2. 농약 안전관리강화로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259
3.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260
4.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261
5.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262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국세청 (2)

금융·조세·재정 (2)

- | | |
|----------------------------------|-----|
| 1.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 162 |
| 2. 2019년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163 |

관세청 (1)

금융·조세·재정 (1)

- | | |
|--------------------|-----|
| 1.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 164 |
|--------------------|-----|

조달청 (1)

일반공공행정 (1)

- | | |
|---|-----|
| 1. 공공기관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GS로 변경 | 323 |
|---|-----|

병무청 (7)

국방·병무 (7)

- | | |
|--|-----|
| 1.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 293 |
| 2.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294 |
| 3.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 295 |
| 4.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 296 |
| 5.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297 |
| 6.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 298 |
| 7.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확대 | 299 |

방위사업청 (1)

국방·병무 (1)

- | | |
|-------------------------------|-----|
| 1.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300 |
|-------------------------------|-----|

문화재청 (2)

일반공공행정 (2)

- | | |
|--------------------------------------|-----|
| 1. 문화재매매업 상호, 영업장소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마련 | 324 |
| 2.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 325 |

산림청 (5)

농림·해양·수산 (5)

- | | |
|------------------------------|-----|
| 1.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371 |
| 2.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 | 372 |
| 3.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역제를 위한 제도개선 | 373 |
| 4.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 374 |
| 5.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 375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허청 (1)

일반공공행정 (1)

- | | |
|---------------------------|-----|
| 1.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 326 |
|---------------------------|-----|



기상청 (5)

공공안전 및 질서 (2)

- | | |
|--------------------------|-----|
| 1.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 | 275 |
| 2.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 276 |

일반공공행정 (2)

- | | |
|-------------------------------|-----|
| 1.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 | 327 |
| 2.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 328 |

농림·해양·수산 (1)

- | | |
|--|-----|
| 1. 해양기상 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 376 |
|--|-----|

방송통신위원회 (1)

일반공공행정 (1)

- | | |
|----------------|-----|
| 1.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329 |
|----------------|-----|

공정거래위원회 (9)

일반공공행정 (9)

- | | |
|---|-----|
| 1.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330 |
| 2.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331 |
| 3.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 | 332 |
| 4.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 333 |
| 5. 수도권 가맹본부,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 | 334 |
| 6.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335 |
| 7.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 336 |

8.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337
9. 금지되는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유형 추가	338

금융위원회 (8)

금융·재정·조세 (8)

1.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165
2.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166
3.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167
4.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168
5.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169
6.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170
7.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172
8.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173

국민권익위원회 (1)

일반공공행정 (1)

1.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339
--------------------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 금융·재정·조세
2. 교육
3. 여성·육아·보육
4. 보건·복지
5. 공공안전 및 질서
6. 국방·병무
7. 일반공공행정
8. 농림·해양·수산
9. 산업·에너지·자원
10. 환경
11. 문화·체육·관광
12. 항만개발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Before

2019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됩니다.

After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 85%)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향 상향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현행 150% → 200%),



- 3주택이상자
(현행 150% → 300%)

2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Before



- 분납 대상자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자
- 분납 기간 : 2개월

After

1주택자, 고령·은퇴자 등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 기간이 확대됩니다.



- 분납 대상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자
- 분납 기간 : 6개월

3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까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After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4 기획재정부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관세사 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근거 : 시험공고)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After

'19년 1월 1일 이후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며,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5 기획재정부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시행일 : 2019년 2월(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19년 1월 1일(가산금율)

Before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체납가산금이 인하됩니다.

After



6 기획재정부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국민의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합니다.

After



7 기획재정부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시행일 : (설비추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삭제)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Before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제를 안전·환경·복지시설과
R&D·생산성·에너지시설로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도입 위치가 달성되었거나,
범용화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After

한계 한도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환경보전시설 (19년 적용기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9년 적용기한)		
R&D설비 (18년 적용기한)		
생산성향상시설 (19년 적용기한)		
생산성향상시설 (18년 적용기한)		
개정 영역		
	공제율 (대·중·소, %)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3·7	1·5·10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7·10·7·10·10	3·5·10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1·3·6	
	1·3·7	1·3·7
	1·3·6	



8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2019년 1월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개편합니다.

단독가구 연령요건 30세 이상	
변경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85만원 지원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200만원 지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250만원 지원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After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독가구 연령요건 30세 이상 폐지	
변경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150만원 지원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280만원 지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300만원 지원
재산요건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9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  시행일 : 2019년 1월(예정)

Before

지금까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장려하였습니다.



After

'19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높이고 세대원 가입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10 금융위원회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시행일 : 2019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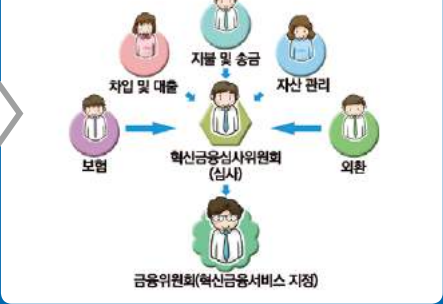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After

'19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법령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11 금융위원회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 17일

Before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 기업의 기술 및 투자가 확대됩니다.
은행 자본보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혁신적인 참가자의 은행산업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After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자본보유 한도를 기존 4% → 34%로 상향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 ① 금리, 수수료는 ↓down, 소비자 혜택은 ↑up
- ②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③ 혁신 기술의 도입이 빨라집니다.

12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시행일 : 2019년 1월 31일

Before

2019년 1월 31일 우대수수료를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 19.8만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4.6만개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경감이 예상됩니다.

After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
연매출 5 ~ 10억원 : 1.4%,
연매출 10 ~ 30억원 : 1.6%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를 인하 유도
연매출 30 ~ 100억원 이하 : 평균 0.3%p 인하,
연매출 100 ~ 500억원 : 평균 0.22%p 인하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군복무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과 전역 후 취업·학업준비 등에 필요한 준비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한도) 월 40만원
- (비과세기간) 복무기간(24개월 한도)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추진배경** 군복무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과 전역 후 취업·학업준비 등에 필요한 준비자금 마련 지원
- **주요내용**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한도) 월 40만원
 - (비과세기간) 복무기간(24개월 한도)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4)

노후 경유차에 대한 교체를 지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신설

- **추진배경**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08.12.31.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 노후 경유자동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조정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유연탄·LNG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조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발전용 유연탄· 천연가스 개별 소비세율 조정

- **추진배경** 발전연료(유연탄·LNG)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
- **주요내용** 개별소비세율 조정 : 유연탄(36원/kg → 46원/kg), 천연가스(60원/kg → 12원/kg)
- **시행일** 2019년 4월 1일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제도시행('97년) 이후 유지된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 (현행) 1인당 연 100만원
- (개정) 1인당 연 200만원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 추진배경 외교관 등에 대한 사후환급 한도 현실화
- 주요내용
 - 외교관 등에 대한 사후환급 한도 상향
 - 현행 : 1인당 연 100만원
 - 개정 : 1인당 연 200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 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19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관광객 유치지원
- **주요내용**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 2018.12.31. 까지
 - 개정 : 2019.12.31. 까지
- **시행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의료관광 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19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의료관광 유치지원
- 주요내용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2018.12.31. 까지
 - 개정 : 2019.12.31. 까지
- 시행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종합부동산세 개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됩니다.

▣ 주요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도 85%)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현행 150% → 개정300%)

〈주택〉

과세표준(시가)	현행	개편내용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0.50%	현행 동일	0.6% (+0.1%p)
3~6억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0.2%p)	0.9% (+0.4%p)
6~12억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0.75%	1.0% (+0.25%p)	1.3% (+0.55%p)
12~50억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00%	1.4% (+0.4%p)	1.8% (+0.8%p)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1.50%	2.0% (+0.5%p)	2.5% (+1.0%p)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00%	2.7% (+0.7%p)	3.2% (+1.2%p)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은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기획재정부

〈종합합산토지〉

구 분	현 행	개 정
15억이하	0.75%	1.0% (+0.25%p)
15~45억	1.5%	2.0% (+0.5%p)
94억초과	2.0%	3.0% (+1.0%p)
세부담 상한	150%	현행 동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 개편

- 추진배경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년도 85%)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 조정(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현행 150% → 개정200%), 3주택이상자(현행 150% → 개정300%)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공시가격 상승 및 종부세 개편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분납대상 범위 확대 및 분납기간이 연장 됩니다.

- 분납 대상자 :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분납 기간 :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500~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 **추진배경** 공시가격 상승 및 종부세 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 고려
- **주요내용**
 - 분납대상자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분납 기간 :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변경됩니다.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명의신탁재산이 제외됩니다.
 - 또한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되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 변경

- **추진배경**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제재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로 전환
- **주요내용**
 - 납세의무자를 (현행) 명의자에서 (개정) 실제소유자로 변경
 -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추가
 -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추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 까지 확대되며,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
- 2018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우대공제율(2.6%, 1.3%)를 2021년 까지 연장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자영업자 지원
- **주요내용**
 -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조정 (연간한도 500만원→1천만원, 2021년까지)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018년까지→ 2021년까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대상업종 및 공제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업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공제세액) 면세농수산물 등 매입가액의 6/106 (당초 4/104)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면세농수산물 등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 | |
|--------|---|
| • 추진배경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
| • 주요내용 | •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4/104 → 6/106
• 적용업종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
|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4)

관세사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근거 : 시험공고)
- 개정 : 최종 합격 발표일

■ 다만,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제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완화

- **추진배경** 법적 안정성 제고 및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 **주요내용**
 -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
 - 현행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근거 : 시험공고)
 - 개정 : 최종 합격 발표일
 - 미성년자 시험응시 기회 보장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미성년자에 해당하더라도 관세사시험 응시 허용 (진입장벽 완화)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및 일몰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 수령후 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을 등이 조정됩니다.

현행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 수령후 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보완
• 만기 3년 이상: 10% • 만기 5년 이상: 20%	→ • 만기 3년 이상: 10 → 15% • 만기 5년 이상: 20 → 25%
적용기한 : '18.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21.12.31까지

■ 시행일 :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및 일몰 연장

- **추진배경**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합리화
- **주요내용**
 -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 만기 3년 이상: 10 → 15%, 만기 5년 이상: 20 → 25%
 - 적용기한 : 2021.12.31.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97의3)와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	개정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율 특례 • 8년 임대시 : 50% • 10년 임대시 : 70% 〈신 설〉	좌동 • (좌 동) • (좌 동) 조특법 §97의4*와 중복적용 배제 명확화 * 민간·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을 6년이상 임대한 후 →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 적용 <table> <tr> <th>임대기간</th><th>추가공제율</th></tr> <tr> <td>6년 이상 7년 미만</td><td>2%</td></tr> <tr> <td>7년 이상 8년 미만</td><td>4%</td></tr> <tr> <td>8년 이상 9년 미만</td><td>6%</td></tr> <tr> <td>9년 이상 10년 미만</td><td>8%</td></tr> <tr> <td>10년 이상</td><td>10%</td></tr> </table>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 시행일 : 201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추진배경** 임대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 중복적용 배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2021.12.31.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법인세 면제·감면 •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적용기한) '18.12.31.	→ •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 | | |
|--------|--|
| • 추진배경 | 영농·영어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영 효율화 촉진 |
| • 주요내용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2021.12.31.까지 연장 적용 |
|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2021.12.31.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 지분보조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 ②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 (감면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주요내용**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2021.12.31.까지 연장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2021.12.31.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 (과세특례)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 **주요내용**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2021.12.31.까지 연장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2021.12.31.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의 대지·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과세특례)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공익사업 수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공장의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2021.12.31.까지 연장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2021.12.31.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물류시설*의 대지·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물류시설 이전시 기업의 생산 및 유통활동에 대한 지원
- **주요내용**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2021.12.31.까지 연장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종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일몰 종료됩니다.

현행	개정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요건)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임대 (시행령에 규정) • (감면대상)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 (감면요건) 85㎡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 적용기한: '18.12.31.까지 취득분* * 단,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일몰 종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종료

- 추진배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합리화
-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종료
- 시행일 일몰 종료

기획재정부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종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7에 따라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가 일몰 종료됩니다.

현행	개정
개인소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사업자	일몰 종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단,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로 미지정 또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미취득시 임대사업자가 감면액을 법인세로 납부 - 적용기한: '18.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종료

- 추진배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형건설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등
- 주요내용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종료
- 시행일 일몰 종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2017년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적용기간이 최대 10년 →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대상)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조합원
입주권 양도분
-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개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좌 등)
- (공제율) 연간 공제율 하향 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율(연8%, 최대 80%)은 현행 유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리화

- **추진배경**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주요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적용기간을 최대 10년 → 15년으로 연장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	개정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범위 명확화
1세대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1주택 보유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 - 배우자 →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좌 등)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 **추진배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조세회피 가능성 방지
-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양도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 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주주1인이 기타주주에게 양도 후 일정기간 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시 1차 양도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 (적용대상) 부동산*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 (과세요건) 대상 법인의 과점주주*가 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이상 양도 * 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등 (기타주주)이 주식의 50% 이상 소유 • (적용세율) 누진세율* * 주식 양도시 적용하는 10~30%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2% 누진세율 적용 ➔ 〈신 설〉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작 동) — 과점주주간에 양도(1차)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2차)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 **추진배경** 과점주주간 거래를 통해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 방지
- **주요내용** 주주1인이 기타주주에게 양도 후 일정기간(예: 3년) 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시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이후 과점주주간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양도 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 계산시 자산은 동일 유형별로 합산하게 됩니다.

현행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비교과세)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누진세율 6~42%)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개정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시 “자산”의 의미 명확화
① (좌 동)
② (좌 동)
- 다만, 소득세법 §104① 각호, ④ 각호, ⑦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 인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별로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위 각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의 합계액
* 소득세법 §104조 1, 4, 7항 (양도소득의 세율)



항	호
1	1호: 2년이상 보유토지, 특정주식등 (누진세율, 6~42%)
	2호: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40%)
	3호: 1년미만 보유토지등 (5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40%)
	4호: 조정지역내 분양권(50%)
	8·9호: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주식등(16~52%)
4	10호: 미등기자산(70%)
	3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26~62%)
7	1호: 조정지역 2주택(누진세율+10%p)
	2호: 조정지역 1주택+1조합원입주권(상동)
	3호: 조정지역 3주택(누진세율+20%p)
	4호: 조정지역 주택+조합원입주권 3이상(상동)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 추진배경 양도소득 세액계산 방법 명확화
- 주요내용 양도 자산별 산출세액 합계액 계산시 자산은 동일 유형별로 합산
- 시행일 2019년 1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추진배경	영세자영업자 지원
	• 주요내용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규 사업장의 사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1과세기간 동안 사업장단위 과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
- (개정)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 **추진배경**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과세형평, 조세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개정)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추가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 **추진배경** 과세형평, 조세중립성 유지
- **주요내용**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 취득재화
 - (현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추가)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상향입법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공급의 범위에 대해 납세자·과세당국 간 이견으로 쟁송이 발생하는 점 감안하여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행)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 (개정) 통칙→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시행령 개정사항)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상향입법

- **추진배경** 법적인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재화의 범위*를 통칙에서 법으로 규정
*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예: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등)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토지와 건물·건축물의 공급가액 산정 합리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해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규정 보완 하였습니다.

■ (현행) 토지의 가액과 건물·건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개정) ①, ② 중 하나의 경우

- ① 토지의 가액과 건물·건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② 토지와 건물에 대해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토지와 건물· 건축물의 공급가액 산정 합리화

- **추진배경** 조세회피 방지
- **주요내용**
 -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시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규정 보완
 - (현행) 토지의 가액과 건물·건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개정) 아래 ①, ②중 하나이상 요건 충족
 - ① 토지의 가액과 건물·건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② 토지와 건물에 대해 납세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기준 안분가액 대비 30% 이상 차이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부과 면제 기준금액을 20→30만원으로 인상 하였습니다.

- (현행) 20만원 이하
- (개정) 30만원 이하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추진배경 영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완화
- 주요내용
 - 예정고지, 예정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현행) 20만원
 - (개정) 30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의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대리납부기한을 다음달 25일
까지로 연장 하였습니다.

- (현행) 다음달 10일
- (개정) 다음달 25일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의 연장

- **추진배경** 사업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대리납부기한
 - (현행) 다음달 10일
 - (개정) 다음달 25일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영역에서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영역 제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에 한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면세 취지를 감안, 주로 관광용으로 이용되는 삭도(索道, 케이블카)등에 의한 여객운송 영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영역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행) 과세되는 여객운송영역 :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 (개정) 삭도(통칙→법으로 상향입법),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영역 추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여객운송 영역에서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영역 제외

- 추진배경 부가가치세 면세취지 감안
-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영역의 범위
 - 현행 :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 개정 : 삭도(통칙→법으로 상향입법),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영역 추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부가가치세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유흥주점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과세관청은 적용대상 사업자에게 제도적용 과세기간의 1개월 전까지 통지

■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제외)의 4/110 (4%)

■ (대리납부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3년간)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부가가치세 체납방지
- **주요내용**
 -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제외)의 4/110 (4%)
 - (대리납부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3년간)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친환경 수소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수소버스를 추가 하였습니다.

-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전기버스
- (개정) 전기버스, 수소버스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추진배경**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지원
- **주요내용**
 -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 전기버스
 - 개정 : 전기버스, 수소버스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20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 주요내용
 -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 2018.12.31. 까지
 - 개정 : 2021.12.31. 까지
- 시행일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농어민이 공급받은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농·임·어업용 석유류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2020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농·임·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
- 주요내용
 -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 농·임·어업용 석유류 2021년 12월 31일 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2020년 12월 31일 까지
- 시행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 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민 지원
- **주요내용**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2018.12.31. 까지
 - 개정 : 2021.12.31. 까지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일반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택시운송종사자 복지지원을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를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일반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택시운송종사자 복지지원
- **주요내용**
 - 일반택시 운송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연장
 - 현행 :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 2021.12.31. 까지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재활용 폐자원 : 2021년 12월 31일,
중고자동차 2019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재활용폐자원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 주요내용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 2018.12.31. 까지
 - 개정 : 재활용폐자원 2021년 12월 31일,
중고자동차 2019년 12월 31일까지
- 시행일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그동안 비과세되어 왔던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시행됩니다.

■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과세시 세액 : [총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기본공제*] × 14%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필요경비율: 50%,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

- 기본공제: 200만원,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①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 ② 분리과세 세액계산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등 차등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현행 : 2천만원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 '19년 :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19.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19.1.1.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9.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1.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①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② 사업자 미등록시 '20.1.1.부터 가산세(수입금액의 0.2%) 부과 예정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6)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됩니다.

- 대상자 :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 요건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임차
*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세액공제 : 주택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공제(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자의 경우 12%)

'19.5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등 주택 월세세액공제 도입

- 추진배경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 주요내용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임차시 주택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12%) 세액공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하였습니다.

- 공제대상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하여 100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추진배경 문화생활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공제대상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공제율 : 30%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인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규모를 확대하고,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을 2천만원 →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을 당초 5년→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추진배경** 기부문화 활성화
- **주요내용**
 - (고액기부 기준 인하) 고액기부 기준금액 2천만원 → 1천만원
 - (이월공제) 이월공제 기간 5년 → 10년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중산서민층 주거지원
- 주요내용 (대상주택 확대) 기준시가 4억원 → 5억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부동산임대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혜택 축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4)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정부안) 보도자료 및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보도자료

부동산임대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혜택 축소

-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취지 고려
- 주요내용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배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이월손금산입 기간이 확대됩니다.

- 현행 : 5년
- 개정 : 10년

▣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추진배경 기부문화 활성화
- 주요내용 201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하여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기간을 5년→10년으로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 단절자·휴직자 등이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이자·배당소득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가입대상 확대)

- (현행) 해당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개정) 해당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직전연도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 등의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가입대상 확대)
 - (현행) 해당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개정) 해당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적용기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의무가입기간) 2년
- (납입한도) 연 600만원
- (비과세한도) 이자소득 500만원(전체 가입기간 기준)
 - *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충족 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가능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추진배경**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 **주요내용**
 -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의무가입기간) 2년
 - (납입한도) 연 600만원
 - (비과세한도) 이자소득 500만원(전체 가입기간 기준)
 -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요건 충족 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가능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2)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가 보다 강화됩니다.

-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가 부여되고 해외부동산 미신고 과태료는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2억원 이하의 해외부동산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고 과태료 금액이 인상됩니다.
- 해외부동산,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의무가 신설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등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추진배경** 역외 세원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해외부동산 신고대상 조정 및 미신고시 제재 강화
 - 현행 : 모든 해외부동산 취득·임대 미신고시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 개정 :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 미신고시 각 가액의 10%(1억원 한도)
 - ②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시 제재 강화
 - 과태료 부과 대상
 - 현행 : 현지법인(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미신고자
 - 개정 : 해외영업소 미신고자 포함
 - 과태료 금액
 - 현행 :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
 - 개정 :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건별)
 - ③ 미신고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의무 신설(미소명시 20% 과태료 부과)
 - 소명요구 대상자산 : '19.1.1. 이후 취득하고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해외부동산 미신고 관련 과태료 인상 및 조정은 2020년 1월 1일)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2)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강화됩니다.

*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이 추가되고, 적용 세율이 조정됩니다.

* 부동산자산 비율 50%(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 세율 : (현행) 20% → (개정)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주식 보유현황의 신고 기준일이 조정(직전 연도 종료일 → 신고일 전날)됩니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국외전출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이 연장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등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 **추진배경** 역외 조세회피 방지, 납세편의 제고 등
- **주요내용**
 - ①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 추가 및 세율 조정
 - (세율) • 현행 : 20%,
 - 개정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3억원 초과분 25%
 - ② 주식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2%) 신설 및 신고 기준일 조정
 - (신고 기준일) • 현행 : 직전 연도 종료일, • 개정 : 신고일 전날
 - ③ 국외전출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 현행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개정 :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
 - ④ 세액공제 경정청구 기한 연장
 - 현행 :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제출(경정청구 방식)
 - 개정 : 3개월 → 2년
- **시행일** 2019년 1월 1일(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은 2020년 1월 1일)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감면 한도(대·중견기업만 적용)

- 투자액 50%+[상시근로자수×1.5천만원(청년 2천만원)]

** 감면 대상업종: 창업 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3% → 10%, 중견기업 1~2% → 5%로 확대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 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기업(세액공제): 임금감소분×10%, 근로자(소득공제): 임금감소분×50%

기획재정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위기지역 창업· 기존 기업 세제지원

- **추진배경** 위기지역의 창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를 지원하고,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대상)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 * 고용위기지역(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년)
 -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31개)
 -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중견·대기업 감면한도) 투자누계액50%+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 2,000만원)
 - 중소·중견기업의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중소) 3%→10%, (중견) 1~2%→5%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 (종전) 연간 임금감소 총액×50%+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75% → (개정) 연간 임금감소 총액×10%+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 대상)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율 인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1)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이 인하됩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 시중 연체금리(연6~8%) 등을 감안하여 1일 0.03%(연10.95%)
→ 1일 0.025%(연9.13%)로 인하
- (체납가산금)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시 매월 1.2%(연14.4%)
→ 매월 0.75%(연9.0%)로 인하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납부·환급·원천징수 납부 및 체납 가산금율 인하

- **추진배경**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납부·환급·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 미납기간 1일당 0.03% → 0.025%
 - 체납가산금율 인하
 - 최초 체납시 3% (변동없음)
 - 매 1개월마다 1.2% → 0.75%
- **시행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19년 2월
(가산금율) 2019년 1월 1일

체납된 관세에 대한 증가산금을 인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이후 매월 부과하는 증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체납된 관세에 대한 증가산금을 인하

- **추진배경**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체납된 관세의 증가산금을 인하
 - 월 1.2% ⇒ 월 0.75%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관세분야 지정·등록·특허 등의 취소사유 완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법인에 소속된 일부 임원이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 받는 사유로 해당 법인이 특허보세구역 등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하면 그 특허 등이 취소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 완화대상 지정·등록·특허 등

- 세율불균형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 취소
-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 종합보세사업장 폐쇄 명령
-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취소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관세분야 지정· 등록·특허 등 취소사유 완화

- **추진배경** 일부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으로 특허 등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취소사유 완화대상 지정·등록·특허 등
 - 세율불균형감면물품 제조(수리)공장 지정 취소
 -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 종합보세사업장 폐쇄 명령
 -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취소
 -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추진배경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주요내용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납세자 선택 허용)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에 후속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청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기간) 바로 행정소송 제기시 처분결과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시 결정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제기. 단, 기간 내 통지 미수령시 기간 경과일로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행정 예측가능성 및 민원인 편의제고를 위하여,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11개 허가사항 업무에 대하여 세관장은 허가 등의 신청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등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 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외국무역선 출항 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 **추진배경** 관세행정 예측가능성 및 민원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아래 11개 허가 등 업무에 대하여 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통지시 10일이 지난 다음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
 - 개항(開港)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134)
 - 외국무역선(기) 출항 허가(§136)
 - 입항절차 종료전 물품 하역·환적 허가(§140)
 - 항외 하역·환적 허가(§142)
 - 선(기)용품 등 하역·환적 허가(§143)
 - 보세구역외 보수작업 승인(§158)
 - 보세구역 장치물품 하역·절단작업 허가(§159)
 - 보세구역 등에 장치된 견본품 반출허가(§161)
 - 보세공장내 내국물품 작업 허가(§185)
 - 보세공장외 작업 허가(§187)
 -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195)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4)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대상물품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모든 수출물품으로 확대됩니다.

- 수출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행 : 관세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
 - 개정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관세특혜+비특혜)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 추진배경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 현행 : 관세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
 - 개정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관세특혜+비특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통고처분 금액 납부 방법 개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통고처분 받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 관세법을 위반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처분 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 납부일은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통고처분 금액 납부 방법 개선

- **추진배경** 민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현행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통고처분 금액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관세법」등 위반 사항이 없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들이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최대 6개월까지 관세 등을 납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세법 위반자 등 관세채권확보가 곤란한 업체*는 담보를 제공해야합니다.

- * ① 환급특례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환급특례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환급특례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 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⑤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 **추진배경** 수출업체 납부 편의 제고 및 자금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수출용원재료 수입업체들이 최대 6개월까지 관세등을 납부 유예하였다가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환급특례법·관세법 위반, 조세체납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업체들은 담보를 제공해야함
 - 일괄납부할 수 있는 금액 한도와 납부유예 기간은 세관장이 정함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환급금 총당사유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수출업체에게 환급해야할 금액이 있고, 과다 또는 잘못 환급되어 해당 업체로부터 징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환급할 금액을 징수할 금액에 총당할 수 있게 됩니다.

▣ 환급받을 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총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환급금 총당 사유 확대

- **추진배경** 수출업체 납부 편의 제고 및 자금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과다 또는 잘못 환급되어 수출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수출자에게 환급할 금액에서 총당할 수 있도록 함
 - 환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함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4)

관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요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사는 한국 관세사회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 새로 도입되는 관세사 연수교육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기관 : 한국관세사회
- 교육시간 : 8시간(관세사법 시행령에 규정)
- 면제사유 : 휴업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방식 : 위탁운영 가능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 **추진배경** 관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 관세사의 연수교육 의무화
 - 시행기관 : 한국관세사회
 - 교육시간 : 8시간(관세사법 시행령에 규정)
 - 면제사유 : 휴업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방식 : 위탁운영 가능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4)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관세사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됩니다.

- 정보공개 범위는 전문분야, 자격취득 사항 등 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제한됩니다.
- 등록된 관세사는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정보 공개를 위하여 관세사의 등록정보를 한국관세사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화

- **추진배경** 관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함양
- **주요내용**
 - 관세사의 정보공개 의무화
 - 공개주체 : 한국관세사회(홈페이지)
 - 공개범위 : 전문분야, 자격취득 사항 등 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의무 : 관세사는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하여야 함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면세점 특허 갱신 등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 044-215-4413)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및 면세점 특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5년) 만료 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합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경감합니다.

* (현행) 매출액 기준 0.1%~1% 부과 → (개정) 중소·중견제품 매출, 특허수수료 0.01% 부과

- 개정내용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면세점 특허갱신 등 제도개선

- **추진배경** 면세점 사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신규 특허 발급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
 - * (현행) 대기업 갱신 불가, 중소·중견 1회 갱신 가능
 - (개정) 대기업 1회, 중소·중견 2회 갱신 가능
 -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신설
 - * 지역별 특례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검토, 상생협력방안 등
 -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관세법) 2019년 1월 1일 (관세칙) 2019년 상반기(예정)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 044-215-4413)

면세점 사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대기업 면세점)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발급을 허용합니다.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 (중소·중견 면세점) 원칙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상시 진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한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면세점신규 특허 발급요건 완화

• 추진배경 면세점 시장의 신규 진입장벽 완화

• 주요내용 •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신규특허 발급요건 변경

-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 허용
- *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진입 허용

현행	개정안
① and ② (동시 충족)	① or ② (선택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50% 이상	①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증가(전년대비)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 중소·중견 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단, 지역여건에 따라 제한 가능)
- * (현행) 지역활성화 등 일정 조건하에 지방(서울 제외)에 진입 허용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3)

국민의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세관·검역 기능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후 본격 시행하고, 이후 전국 주요공항 등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인 현행 600달러로 유지합니다.
 -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추진배경** 국민 불편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 **주요내용**
 -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및 시범운영
 - 인천공항 시범 및 평가(6개월) 이후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①안전·환경·복지 시설과 ②R&D·생산성·에너지시설로 구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영역		개정 영역	공제율(대·중견·중소,%)	
			현행	개정
안전설비 등 ('19년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3·7	1:5·10
환경보전시설 ('18년 적용기한)	→	환경보전시설	1:3·10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년 적용기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10^*) \cdot 7(10^*) \cdot 10$	
R&D설비 ('18년 적용기한)		② R&D, 생산성 에너지관련 시설	1:3·6	1:3·7
생산성향상시설 ('19년 적용기한)	→		1:3·7	
에너지절약시설 ('18년 적용기한)			1:3·6	

* 직장어린이집(10%),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1:3·10%)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①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②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③범용화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 ① (신성장산업 설비)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 관련 설비 등
 ② (안전설비 등) 저온보관소,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③ (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임차비용

기획재정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통합·재설계

- **추진배경** 안전설비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정비하여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중소기업 지원 및 제도 단순화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①안전·환경·복지시설과 ②R&D·생산성·에너지시설로 구분하여 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①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②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③범용화 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설비추가) 20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설비삭제) 20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이 2021.12.31.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등 - 자경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단,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현물출자전 자경기간과 합하여 8년 미만) 양도시 적용 배제 - 자경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작물재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초지 제외)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적용기한: '18.12.31.	일몰기한 연장 적용기한 연장: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 추진배경**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영 효율화 촉진
- 주요내용**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 2021.12.31.까지 연장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연장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 중 소규모 공익법인이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대상은 2016년, 2017년 또는 2018년중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입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 **추진배경** 소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 **주요내용**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미신고하는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의무가 면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19.6.30.까지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 보고서 추가

- **추진배경**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규정)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 **추진배경**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추징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 등 보충적 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0.3%
- 미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 **추진배경**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가산세 합리화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0.3%
 - 미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도시철도 건설지원을 위하여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도시철도 건설지원
- **주요내용**
 -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2018.12.31. 까지
 - 개정 : 2021.12.31. 까지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국가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지원을 위하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20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 **주요내용**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2018.12.31. 까지
 - 개정 : 2020.12.31. 까지
-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공장, 학교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공장·학교등의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
- **주요내용**
 - 공장, 학교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농협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농어민과 창업 중소기업등 지원을 위하여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예금,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현행) 2018년 12월 31일 까지

■ (개정) 2021년 12월 31일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농협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농어민과 창업 중소기업등 지원
- **주요내용**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예금,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 : 2018.12.31. 까지
 - 개정 : 2021.12.31. 까지
- **시행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1)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 세무행정 효율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관세 가격의 사전심사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반 사항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 과세가격 가산·공제금액, 납세자 신고가격(거래가격) 불인정요건 판정 등에 한정
 - 개정 : 현행 심사대상 이외에 신고가격 불인정시 가격결정방법 등을 추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세무행정 효율화 및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비특수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관련 제반사항 확대
 - 현행 : 과세가격 가산·공제금액, 납세자 신고가격(거래가격) 불인정요건 판정 등에 한정
 - 개정 : 심사대상 이외에 신고가격 불인정시 가격결정방법 등을 추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해외수리 선박·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폐지 등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044-215-4434)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하는 선박·항공기는 간이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 또는 개체(改替)된 부분을 과세가격으로, 해당 선박·항공기의 관세율로 일반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 수리 선박·항공기 통관제도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해외수리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간이세율 폐지 등

- **추진배경** 해외수리 선박·항공기 통관제도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해외수리 선박·항공기 간이세율 적용 폐지 ⇒ 선박·항공기 관세율 적용
② 선박·항공기를 해외에서 수리한 후 입항 시 수리 또는 개체된 부분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일반 수입신고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
(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 보도자료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

- **추진배경**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합리적 지원
- **주요내용**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WTO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관세면제 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유예하고,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19년부터 감면율을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축소
- **시행일** 2019년 5월 1일 ('19.1.1.~'19.4.30.까지 수입하는 모든 항공기 제조·수리에 사용하는 부품은 100% 감면)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도 동일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국내로 부분복귀 또는 완전복귀하는 기업체는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모든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한도 : 부분복귀업체 → 2억원, 완전복귀업체 → 4억원

- 해외진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모두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 **추진배경**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주요내용**
 - 현행 부분복귀 및 완전복귀에 따라 정해진 감면 한도를 폐지하여,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모든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외진출 대기업도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킴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가 도입됩니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대상자산 : 2018.7.1.~2019.12.31. 취득한 다음의 자산

- 중소·중견기업 → 설비투자 자산* 전체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사용되는 경우 한정)

-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 개정내용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도입

- **추진배경**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주요내용** 2018.7.1.~2019.12.31.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대기업은 혁신성장투자자산 한정)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2018.7.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공제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

〈고용증대세제 연간 세액공제액 (단위:만원)〉

구 분	중소(공제기간: 2년→3년)		중견 (2년→3년)	대기업 (1년→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1,100	1,200	800	40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공제
 - (공제기간)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 2년 → 3년
 -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업의 범위를 대기업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 부분복귀시 요건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감축할 것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없음)
- 복귀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부분복귀 시 감면액
 - (소득세·법인세)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관세) 50%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시 세액 감면 대상 확대

- **추진배경**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지원
- **주요내용** 대기업이 해외진출 후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예도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비수도권 5년간(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관세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현재 157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30%) 세액공제

** 블록체인 기술(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80개) 투자시 투자액의 10%(중견 7%, 대 5%) 세액공제

- (중견)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이상 → (개정) 2%이상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최대 3%) 신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신성장동력·원천 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추진배경**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신성장 기술의 사업화 세제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추가
 - * 신성장기술(현재 157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30%) 세액공제
 - ** 블록체인 기술(보안기술, 네트워크기술, 플랫폼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 등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80개) 투자시 투자액의 10%(중견 7%, 대 5%) 세액공제
 - (중견)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5%이상 → (개정) 2%이상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 **주요내용**
 -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천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 감면
 - *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요건 :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정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적용기간 : 1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중소·중견기업 육아 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추진배경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요건 :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정
 - 공제율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적용기간 : 1년
 - 적용기한 : 2020.12.31.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7)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전기차 50%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서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하였습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 **추진배경**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중 감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비
- **주요내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
 - (종전) 전기차 50% 이상 보유
 - (개정) 전기차 또는 수소차 50% 이상 보유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이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하였고,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였으며,

* (단독) 1,300→2,000만원 (홀벌이) 2,100→3,000만원 (맞벌이) 2,500→3,600만원

** (현행)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미만 → (개정)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 단독 85 → 150만원, 홀벌이 200 → 260만원, 맞벌이 250 → 300만원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반기별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9월말에 정산을 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8.21~9.10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10 신청, 6월말 지급
-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 주요내용
 - ①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
 - ②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소득요건	종전	개정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 ③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종전	개정
가구당 1.4억원 미만	가구당 2억원 미만
*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재산 1.4억원 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④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종전	개정
단독 가구	85만원	150만원
홀벌이 가구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	300만원

- 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전환 :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초로
반기별 지급 선택가능
 - (상반기 소득분) 8.21~9.10 신청, 12월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3.10 신청, 6월말 지급
 - (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213)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허용으로 더 많은 가구에 더 많이 지급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20만원씩 인상하였으며,
* (현행) 30~50만원 → (개정) 50~70만원
-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출산·자녀양육 지원

• 주요내용 ①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종전	개정
자녀 1인당 30~50만원	자녀 1인당 50~70만원

②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10만원 → 15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과세방법

일용근로자의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 **추진배경**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 10만원 → 15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되어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입니다.

■ 심사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수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하여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2019년 중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하여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추진배경**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지원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① (소득기준) 부부합산 신고소득에서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개선
 - ② (자산기준) 부부합산 보유자산 기준을 신설
 - ③ 자산 확인 및 대출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금 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HUG가 통합 수행)
- **시행일** 2019년 중*
* 기금법 시행령 및 기금법 개정 진행 중이며,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19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4)

보다 많은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우대금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요건을 확대하고, 세대원 가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연령요건 확대)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가능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이나,
 - 취업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중반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을 위해 가입가능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세대원 가입 허용) 현행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나,
 - 20대 청년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경제적이유로 부모와 같이사는 세대원인 실정을 고려하여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참고자료>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요건 확대 검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개선내용

- **추진배경** 저소득·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개선
- **주요내용**
 - ① 가입연령 확대(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
 - ② 세대원가입 허용(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 세대원, 세대주예정자 포함)
- **시행일** 2019년 1월(예정)

국세청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22)

2019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그 금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 **추진배경**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주요내용**
 - ① 대리납부대상자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및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 또는 법인사업자
 - ② 대리징수방법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
 - ③ 대리납부
 - 신용카드사는 징수한 세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용카드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 ④ 대리납부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하고, 그 금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19년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소득세과 ☎ 044-204-3262

2018년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2019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을 지급받고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종교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 종교인소득 이외에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연간종교인소득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비과세소득	1.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본인의 학자금 2. 현물식사 또는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종교활동비 등 포함)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월 10만원 이내) 5.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소득 지급액	(= 연간 종교인 소득 -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종교인이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이하	1,600만원+2천만원 초과50%
	6천만원 이하	2,600만원+4천만원 초과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 초과20%
소득금액	(= 종교인소득지급액 - 필요경비)	

*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2019년 5월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추진배경** 2018년 귀속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과세
- **주요내용** 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교인소득 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시행일** 2019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2018년 1월 1일부터 과세)

관세청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875)

수출용원재료를 생산자에게 공급할 경우 유·무상 공급에 관계없이 국내거래증명서(기납증, 분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업체 등의 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만 국내거래증명서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무상사급(부분임가공계약에 따른 무상사급 포함)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경우 소요량 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수출물품 생산자가 일괄하여 소요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뉴스/소식>행정규칙행정예고>「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 **추진배경** 국내생산물품의 기업 간 분업구조 및 자재조달방식의 다양화를 반영한 소요량산정 및 환급신청업무의 효율성 도모
- **주요내용** 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무상사급물품 등에 대해 국내거래증명서 발급
②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은 운송장등에 의해 양도일자 확인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63)

소비자가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이전까지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며,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를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12월부터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퇴직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일정 요건 만족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가입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단체실손 종료시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 추진배경 소비자가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제도 시행
- 주요내용
 - ①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시 개인실손으로 전환가능토록 함
 - (조건) 단체실손 5년이상 가입, 퇴직 후 1개월 이내 전환신청, 직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 10대질병 치료이력 없을것
 - ②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시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 시행
 - (조건)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가입되어 있는 자,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개 신청
- 시행일 2018년 12월 1일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0)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점수제로 전환해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등급(1~10등급, 최고 1등급) 중심(‘등급제’)으로 활용

- * 신용평가 점수(1~1,000점)를 일정 구간별로 등급으로 구분
-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함
- * 한 등급에 최대 1,100만 명이 넘는 개인이 밀집(NICE평가정보, '17년말)
(1등급 1,119만명, 2등급 791만명, 4등급 633만명, 5등급 703만명 등)

■ 개인신용평가 등급제를 점수제(1~1,000점, 최고 1,000)로 전환*

- '19년부터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에 시범 시행하고 '20년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추진배경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 등 제고
- 주요내용
 - 개인 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1단계 :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시범 시행
 - 2단계 : 전 금융권 시행
- 시행일 (1단계) 2019년 1월, (2단계) 2020년 1월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02-2100-2531)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 부문에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 규제샌드박스 :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유예

-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으나,
- 2019년 4월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에 따라 핀테크기업이 신청 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추진배경** 핀테크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나, 각종 규제 등으로 사업화 이전 테스트는 불가능
- **주요내용**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인허가 등 각종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함
- **시행일** 2019년 4월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기술 및 투자 확대

금융위원회 은행과 (☎ 02-2100-2953)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CT 기업의 기술 및 투자가 확대됩니다.

- 은행 자본보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혁신적인 참가자의 은행산업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2019년 1월부터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자본보유 한도를 종전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혁신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요내용

- **추진배경** ICT 기업 등 혁신적인 참가자의 은행산업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자본보유 규제를 완화
- **주요내용** ① ICT기업의 자본보유 한도 상향(4%→34%)
②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금지 등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
- **시행일** 2019년 1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02-2100-2983)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			현행	개선안	인하폭
신용	우대 가맹점(우대수수료율)	5~10억원	약 2.05%	1.4%	약 0.65%p
		10~30억원	약 2.21%	1.6%	약 0.61%p
	일반 가맹점(평균수수료율)	30~100억원	약 2.20%	평균 1.90%	평균 0.3%p
		100~500억원	약 2.17%	평균 1.95%	평균 0.22%p
체크	우대 가맹점(우대수수료율)	5~10억원	약 1.56%	1.1%	약 0.46%p
		10~30억원	약 1.58%	1.3%	약 0.28%p
	일반 가맹점(평균수수료율)	30억원 초과	약 1.60%	평균 1.45%	평균 0.15%p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 19.8만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4.6만개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경감이 예상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추진배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필요
- 주요내용
 - ①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5~10억원 : 1.4%, 연매출 10~30억원 : 1.6%
 - ②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을 위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 유도
→연매출 100억원 이하 : 약 0.3%p 인하,
연매출 100~500억원 : 약 0.22%p 인하
- 시행일 2019년 1월 31일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5)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겠습니다.

- 조선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친환경설비 분야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부품업체가 최근의 경영애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장기 시설·운영자금(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1조원) 및 우대보증(1조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력산업 중소·중견 기업 금융부담 완화

- **추진배경** 조선·자동차 업종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 **주요내용**
 - ① (조선) 조선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 지원(1천억원), 친환경설비 보증 제공(2천억원), 중형선박 RG 발급 확대(1천억원), 대출·보증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
 - ② (자동차)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1조원), 우대보증 공급(1조원), 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내 부품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
- **시행일** 既 시행 (※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은 '19.1분기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年 2%대 초반)을 1.8조원 공급하겠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미래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0.2조원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 추진배경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별대출* : 1.8조원 공급
 * 年 2%대 초반 금리 수준
 ②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1%p 금리 인하) : 0.2조원 공급
 * 미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익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매출대금 입금액으로 대출금을 자동 상환
- 시행일 '19.1분기 ~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3)

더 많은 분들이 사잇돌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급규모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를 2조원 확대(現 3.15조원 → 5.15조원)하여 '19년에도 사잇돌 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 보다 취약한 계층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재직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

업권	차주 유형	기준	현행	개선
은행, 상호금융	근로소득자	연소득	2,0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사업/연금소득자	연소득	1,2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사업기간/수령횟수	1년 이상/1회 이상	6개월 이상/1회 이상
저축은행	근로소득자	연소득	1,5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	5개월 이상	좌 동
	사업/연금소득자	연소득	800만원 이상	600만원 이상
		사업기간/수령횟수	6개월 이상/1회 이상	4개월 이상/1회 이상

*연소득기준·재직기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잇돌대출 지원 가능

또한 카드로 중금리대출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자체적으로도 중금리대출이 더욱 폭넓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계획

- 추진배경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사잇돌 대출 공급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 사잇돌 대출 보증한도를 확대(3.15 → 5.15조원)하고, 소득·재직기준 완화
 - ②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기반 확대
 - 카드로 중금리상품 출시를 통해 민간 중금리대출이 더욱 폭넓게 공급되도록 지원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3)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보다 낮은 비용으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를 쉽게 개발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2019년에는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됩니다.
- 또한,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이 마련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위원회소식>보도자료>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방안

- 추진배경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로 핀테크 혁신성장을 촉진
- 주요내용
 - ①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확대(비중요정보限 → 개인신용정보 등)
 - ②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
 - ③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예정

02

교육

교육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교육부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시행일 : 2019년 3월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4)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19년 기준, 4인가구 230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19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교생은 연간 203천원, 중·고등학교생은 290천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 지원합니다.

〈'19학년도 교육급여 항목별 연간 지원금액 (1인)〉

지급대상	지급항목	2018	2019	비고
초등학교생	부교재비	66,000원	132,000원	연1회 지원
	학용품비	50,000원	71,000원	
중·고등학교생	부교재비	105,000원	209,000원	연1회 지원
	학용품비	57,000원	81,000원	
고등학교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	실비 전액	납부금 감면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인상

- 추진배경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초·중·고등학교생 교육급여 항목별(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단가 대폭 인상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 (교육비) 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과학비·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수준
 - 문의전화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시행일 2019년 3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 044-203-7026)

학교 수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인정도서의 승인 시 교과기준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고, 심사기간도 9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는 승인 시 공통기준 준수여부만 확인하고, 심사기간도 3~4개월로 단축됩니다.
- 2019년부터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도에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 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 품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답재 예정)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추진배경**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 지원
- **주요내용**
 - 일부과목 인정도서 심사 기준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인정도서 승인 시 공통기준 준수 여부만 확인
 - 인정도서 심의 기간 단축 : 9개월 → 3~4개월
- **시행일** 2019년 4월 1일(예정)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739, 6384)

직업계고*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19년부터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특성학교,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 학점제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존 연구·선도학교 23교에서 100교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점제 운영모델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계획

- 추진배경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인프라 소요 파악, 우수 운영 모델 확산
- 주요내용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등 다양한 모델의 연구·선도학교 운영
 - ① 연구학교(34교) 운영
 - 2018~2021 : 23교
 - 2019~2022 : 14교
 - ② 선도학교(66교) 운영
 - 2019~2022 : 66교
- 시행일 2019년 3월 1일

여성·육아·보육

[illegible]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만 6세 미만 아동)

Before



After



2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After



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대상	중위소득 120%이하
비율	소득유형별 30 ~ 80%
시간	연 600시간
돌보미 인원	2.3만명
가구	4.6만 가구

After

'19년 1월 1일 부모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 · 비율 · 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도 확대하여 서비스를 더욱 늘리겠습니다.



대상	중위소득 150이하
비율	소득유형별 5%p상향 신규 15 ~ 20%
시간	연 720시간
돌보미 인원	3만명
가구	9만 가구

4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After

2019년 1월 1일에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5 여성가족부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신설

After

2019년 1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 사건발생기관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

- 신고센터운영 및
초기상담,
지원기관 연계
-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집중 지원

6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시행일 : 2019년 상반기

Before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을 초기에 발견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 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 (226개)
- ② 청소년동반자 확대(1,261명)
- ③ 청소년쉼터 확대(130개),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
- ④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60명)

After

'19년 상반기 청소년의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지원과 회복까지 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 확대(232개)
- ② 청소년동반자 확대(1,318명)
- ③ 청소년쉼터 확대(138개),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6개)
- ④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확충(90명)
- 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예산 지원(20개소 신규)

7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지금까지는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생리대 지원을 신청했으며, 지자체에서 일괄 구매하여 현물로 지원하였습니다.



After

'18년 1월부터는 방문 신청 외에도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청소년이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여성가족부는 '18년 새일센터 15개소에서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After

'19년 1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을 새일센터 30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5, 3396)

'19년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하며, 체외수정(신선배아)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이에 따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확대됩니다.
- 또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으며,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① 지원 소득기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130% → 180%
 - ② 지원 횟수 및 범위 확대
 - 신선배아4회 → 신선배아4회, 동결배아3회, 인공수정3회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기존 외 일부 본인부담금 30%부분 포함 지원
 - ③ 지원 항목 확대 :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추가
- 시행일 2019년 1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202-3546)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18.12.7.)로 내년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될 계획입니다.

*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 여부는 재량 사항이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18.10월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하여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부모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
- 주요내용
 - ① 추진목표 :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 ②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자체 지원
- 시행일 2019년 1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 044-202-3590)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위한 향상시키기 위한 어린이집 평가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기존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전체 어린이집 39천 개소 중 약 20%(8천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아 평가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19.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평가 비용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또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을 하였을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합니다.

전체 어린이집 대상 평가의무제 실시

- 추진배경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체 어린이집 평가 실시
- 주요내용
 - ①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
 - ② 평가비용 전액 국가부담(기존 어린이집 평가수수료 부담 : 39인 이하 25만원, 40인 이상 30만원, 100이상 45만원)
 - ③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을 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 시행일 2019년 6월 12일

보육료(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19년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0~2세) 단가가 ’19년 1월부터 전년 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됩니다.

-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인상되며,
- 최저임금 상승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집중 지원되도록 기본보육료가 평균적으로 10.9% 인상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보육료(0~2세) 현실화
- 주요내용
 - ① 모든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 3.0% 인상
 - ②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10.9% 인상
 - ③ ’19년 1월부터 보육료 인상으로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
- 시행일 2019년 1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202-3547)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충으로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 확대 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충(신규 60개소)’ 시행으로 6세 미만 아동 1만명 당 ’18년 0.55개소에서 ’19년 0.75개소로 확대되며,
- 영유아에게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이권을 보장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 **추진배경**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지원
- **주요내용**
 - 신규 놀이체험실 60개소 지원
* ’18.10월 말 기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165개소 운영
 - 놀이체험실 선정 기준
 - ① 신규설치(놀이체험실이 없는 지역 → 보육수요 대비 놀이체험실 수가 적은 곳)
 - ② 리모델링(기존 설치가 오래된 곳)
- **놀이체험실 공모·선정**
 - 놀이체험실 수요조사(’18.9월)
 - 놀이체험실 공모(’19.1월) → 심사·선정(’19.2월)
 - 국고보조금 교부(’19.3~4월)
- **시행일** 2019년 1월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 044-202-3361)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사업을 2019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제공되었고, 초등돌봄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 영유아 68.3% (215만 / 315만명) vs 초등 12.4% (33만 / 267만명)

- 앞으로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 2018년 1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에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 **추진배경** 영유아기 무상보육을 통해 전일제 돌봄서비스를 받던 아동이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초등돌봄 결벽” 문제 발생
- **주요내용**
 - (대상) 소득 수준 무관, 모든 계층의 6~12세 아동(초등학생)
 - (내용) 상시·일시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하원 지원, 돌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공간) 주민자치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가용공간 활용
 - (돌봄인력) 상근 2인(관리자·돌봄선생님 각 1인)
 - * 돌봄선생님은 지역 여건에 따라 2인이 시간제 근무 가능
- **시행일** 2019년부터 확대 시행('18년 17개소 → '19년 150개소 신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825)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금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상위 10% 선별을 위해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19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19.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추진배경**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현재)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 ('19.1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 ('19.9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매월 25일 지급
 - 지원방식 : 현금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시행일** '19.1월(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급)
('19.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2, 3439, 3437)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를 신규 지원합니다.

- 이에 따라, 2019년 1,200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비가 지원됩니다.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해 방과후 아동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① 지원개소 : 지자체·법인 설치시설 400개소, 개인 설치시설 800개소
 - ② 지원 내용 :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
 - ③ 지원 절차 : 환경개선비 신청(시설→시군구) → 대상시설 선정(시군구) →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시군구) → 시공
- 시행일 2019년 1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19.1.1.~).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현 상한 200만원)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19.1.1.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현행) 3개월 간 최대 600만원 → (개선)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 또한, '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250만원으로 인상

- **추진배경** 아빠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로 남성의 육아참여 촉진
- **주요내용**
 - 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250만원으로 인상
 - ② '19.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첫 3개월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19.1.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17.9월부터 시행중(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150만원, 하한 50→70만원)

■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또한,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

(기존) 육아휴직 첫 3개월 100만원 (100만원×3개월=300만원) →

(‘17.9월~) 첫 3월 150만원, 이후 9월 100만원(150×3+9×100=1,350만원) →

(‘19년~) 첫 3월 150만원, 이후 9월 120만원(150×3+9×120=1,530만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추진배경**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한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 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으로 인상
 - ② ‘19.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19.1.1.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19.1.1.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90일간 48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 지원합니다.

■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90일간 540만원).

■ 또한, ‘19.1.1.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라도, ‘19.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주와 고용보험기금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체계〉

		1개월	2개월	3개월
우선지원기업 근로자	통상 임금	사업주 부담(통상임금과 180만원 차액)		지원X
		고용보험기금 지원(상한 18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통상 임금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 100%)		지원X
		고보 지원 상한 180만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추진배경** 임신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하한기준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간 역전현상 방지
- **주요내용** ①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상한액 인상(160→180만원)
② ‘19.1.1.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이라도, ‘19.1.1.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됩니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출산육아기(임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장려금의 수요가 적고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분야별 정책>일자리 창출>고용안정장려금(총괄)(예정)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추진배경** 수요 저조 및 정규직전환 지원사업과의 중복
(「2018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
- **주요내용**
 - ①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 ② '19.1.1.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
 - ③ '19.1.1. 이전에 비정규직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 기준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라면 지원대상입니다.
 -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합니다.
- 개정 내용은 '19.1.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추진배경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중 일부)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20만원→30만원)
② '19.1.1.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을 포함하였으며,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습니다.
 - 법령 개정 이후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포함하는 인수인계기간을 2개월로 확대합니다.
 - 또한, 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합니다.
- 개정 내용은 '19.1.1.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중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예정)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추진배경**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중 일부)
- **주요내용**
 - ①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인수인계기간 2주→2개월)
 - ② 인수인계기간 중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월 60만원→월 120만원)
 - ③ '19.1.1.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채용중인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02-2100-6176)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이 시작됩니다.

- 지역 간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성주류화,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운영됩니다.

*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 예정

지역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며,

- 국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 추진배경 지역 간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 및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
- 주요내용
 - ①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사업
 - ②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사업
 - ③ 정책 모니터링 사업
- 시행일 2019년 1월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출범·운영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51)

청년들의 성평등 이슈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이 2019년에 출범합니다.

- 청년과 정부 간의 상시화된 소통과 청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은 정책 제안을 넘어 실제 정책을 바꾸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은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가족, 다양성, 혐오,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합니다.
* 정책 이슈(예시) : 기업문화 혁신, 청년 여성 안전 구현, 젠더 갈등의 해소, 다양한 가족 포용, 지역 청년 활동 지원 등
-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은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혁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출범·운영

- 추진배경 청년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디지털과 안전, 지역 균형 등 정책을 정부와 함께 소통·공론화하고, 직접 기획 실행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주요내용 ①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이행준비단 운영(‘18.12월)
 ② 청년 모집 및 분과 구성(‘19.1월~2월)
 ③ 정책 제안 및 실행(‘19.3월~연중)
 ④ 문화 혁신 사업(‘19.3월~연중)
- 시행일 2019년 1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2)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각종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 감면 등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추진배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주요내용
 -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지원단가 : ('18년) 월 13만원 → ('19년) 월 20만원
 - 지원연령 : ('18년) 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
 - 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지원단가 : ('18년) 월 18만원 → ('19년) 월 35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2)

2019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

-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 일반적으로 돌보미 1명이 아동 1명을 돌보는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 방식과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 상담 : 1644-6621, 아이돌봄서비스 문의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www.idolbom.go.kr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추진배경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 강화
-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한부모의 일·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무상 제공
- 시행일 2019년 1월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3인 월 442만원) 이하에서 150%(3인 월 564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되며, 신규 지원가정은 15~20%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 600시간(일 2.5시간)에서 연 720시간(일 3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되어, 이용가정이 더욱 많은 시간 동안 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출·퇴근시간대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확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를 9만가구까지 확대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아이돌봄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용부담은 줄이고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 **추진배경** 수요 집중 시간대의 미스매치 해소 및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및 아이돌보미 확충 필요
- **주요내용**
 - ① 정부지원대상 : (‘18) 중위소득 120% 이하→(‘19) 중위소득 150% 이하
 - ② 정부지원비율(가·다형) : (‘19)소득유형별 5%p상향, 신규 정부지원 15~20%
 - ③ 시간제정부지원시간(가·다형) : (‘18) 연 600시간→(‘19) 연 720시간
 - ④ 아이돌보미 수 : (‘18) 2.3만명→(‘19) 3만명
 - ⑤ 정부지원 가구 수 : (‘18) 4.6만가구→(‘19) 9만가구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1)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공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 또한 이웃간 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체험 활동을 함께하는 품앗이돌봄 활동을 지원 합니다.
- 장난감과 도서이용도 가능하며, 2018년 113개소에서 2019년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규 운영 지역은 지자체 공모신청에 따라 선정 예정

참고 이용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1577-933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추진배경**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지원
- **주요내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17년 113개소 → '18년 218개소
- **시행일** 2019년
※ 시군구별 개소(開所)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 상이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02-2100-6425)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2019년에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결정하며, 자립지원금은 월세, 임대보증금 등 주거 안정과 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추진배경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 및 자립·자활 지원
- 주요내용
 - ① (지원조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② (대상자) 여성가족부 자립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심의·결정
 - ③ (지원내용)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한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내외) 지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3)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양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합니다.
-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대(16명 → 26명)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도 지원합니다.

참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전화 ☎ 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 및 삭제 지원 등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확대
※ '18년 16명 → '19년 26명
- 시행일 2019년 1월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 (☎ 02-2100-616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또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결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조직구성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희롱·성폭력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 추진
- **주요내용**
 - ① 사건발생기관 대상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 ② 신고센터 접수 사건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 ③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컨설팅, 실태조사, 조직구성원 교육
- **시행일** 2019년 1월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02-2100-6428)

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폭력피해 노출, 임금체불, 체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추진배경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① 권역별로 5개소 신규 설치·운영
 -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종합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19년 5월 (예정)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확충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형,통합형) 간호인력이 39명 확충 됩니다.

* 여성가족부-시·도-(지방)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지금까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통합형) 간호인력 부족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2019년부터 간호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됩니다.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확충

- 추진배경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 주요내용 ①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통합형) 간호인력 확충
②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19년 4월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6278)

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261명에서 1,31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CYS-Net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견,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또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가 130개에서 138개로, 청소년자립 지원관은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은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 아울러,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20개소 신규 지원됩니다.

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전화 ☎ (지역번호)1388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지역 기반의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상담·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 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 확대(226개→232개)
 - ② 청소년동반자 확대(1,261명→1,316명)
 - ③ 청소년쉼터 확대(130개→138개), 청소년자립지원관 확대(4개→6개)
 - ④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확충(60명→90명)
 - 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예산 지원(20개소 신규)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2, 6242)

청소년이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

국민행복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CU편의점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 또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2019년부터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신청>복지서비스신청>아동·청소년>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신청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추진배경**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
- **주요내용**

저소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 바우처 지원

 - ①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법정 차상위 가구에 속한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②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③ (지원금액) 연 12만원 내외
 - ④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모바일 어플을 통해 지원 신청
- **시행일** 2019년 1월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9)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 센터 7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단위 :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8	206	25	15	9	9	6	3	5	1	31	10	13	15	10	16	15	20	3
'19	213	26	16	9	9	6	3	5	1	31	11	13	16	10	19	15	20	3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도 1개소 추가 개소됩니다.

- * ('18년) 8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
('19년) 9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경북)

참고 지원문의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청소년 전화(13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추진배경** 학교 밖 청소년의 꿈드림 센터 접근성 제고 및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꿈드림센터 확충(206개소→213개소)
②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추가(8개소→9개소)
- **시행일** 2019년
※ 시군구별 개소(開所) 일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기 상이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0, 6259)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활동)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미래사회에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기반의 실생활 문제 해결 활동인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전국 방과후 아카데미에 확산합니다.
- 또한 개별 청소년의 잠재력과 소질을 탐색하고 구체화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진로체험지원 센터·진로정보망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진로체험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2019년도에 농산어촌 지역 등 방과후 돌봄(활동) 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개소를 신규 개소해 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18) 260개소 → ('19) 280개소

역량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추진

- 추진배경 수요자 역량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확대
- 주요내용
 - 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충('18년, 260개소 → '19년, 280개소)
 - ② 과학기술 기반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 확대 시행
 - ③ 지역 유관기관(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연계 '진로체험활동' 확대
- 시행일 2019년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3)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18년 새일센터 15개소에서 '19년 30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 취업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 추진배경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경력단절 사전예방 기능 확대 및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 주요내용 경력단절예방 지원 기관 확대(15개소→30개소 이상)
- 시행일 2019년 1월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새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 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1인 기업은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2019년부터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해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 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5인 미만 기업은 새일센터장 확인서를 통해 예외적으로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특정 업종관련 확인 자료를(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해 집니다.

참고

문의 : 대표번호 1544-1199

신청 : 새일센터 홈페이지(<http://saeil.mogef.go.kr>) 또는 “새일센터” 로 검색해 현재 인턴 연계 가능 센터 확인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 추진배경 새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주요내용
 - ① (인턴대상)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여성
 - ② (인턴기업)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기업으로서 새일여성인턴십 참여가능 기업
 - ③ (지원기준) 인턴 3개월간 월 60만원씩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 장려금 지급(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04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보건복지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현재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

종별	개인 부담	사용 기간	출산 후
상급 종합 병원	42%	출산 후 60일까지	단태아 50만원
종합 병원	35%	지원 금액	다태아 90만원
병원	28%	사용 범위	임신·출산 진료비
의원	21%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50만원 (90만원), 사용기간 출산 후 60일까지, 사용범위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정

After

2019년 1월부터 1세 미만 아동 종별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5 ~ 20%로 완화

종별	개인 부담	사용 기간	출산 후
상급 종합 병원	20%	출산 후 1년까지	단태아 60만원
종합 병원	15%	지원 금액	다태아 100만원
병원	10%	사용 범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의원	5%		

2019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인상, 사용기간도 출산(생) 후 1년까지 확대, 사용범위도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사용 가능

2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시행일 : 2019년 3월(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7월(방과후돌봄서비스)

Before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시작합니다.

After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2,500명('19년)
서비스 내용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 (단가 12,960원)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자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19년)
서비스 내용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단가 12,960원)

3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18. 10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17. 11월)

〈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약 452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 약 135.6천원

After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사실보호
종료 아동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
(생계급여면)

(생계급여면)

〈 ‘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약 461.4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가구 기준 약 : 138.4천원

4 보건복지부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를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수준이 큰 편이었습니다.



가격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10여만원

After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부담은
치과의원 기준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시행일 : 2019년 4월(잠정)

Before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fter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이하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6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일자리 안정자금」 '18년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습니다.



After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5인 미만은 2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7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시행일 : 2019년 3월 접수 시작

Before

신설

After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소득기준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지원대상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8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안전관리강화로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는 농약도 국제기준이나 유사농산물의 낮은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잔류하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After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PLS가 시행되며,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기준 (0.01 mg/kg)으로 더 엄격히 관리됩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선수가 없도록 장학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4)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초·중·고 학생 선수(장애인 포함)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3년 이상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17개 시·도교육청 협조를 통해 3년 이상 선수 활동 경력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급 자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도자료 배포, 누리집 등재 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승인('19.2월) 후에 보도자료 등 배포 예정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신규)

- 추진배경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초·중·고 학생 선수(장애인 포함)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 지원요건 3년이상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
- 시행일 2019년 3월부터 장학금 지급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202-3242)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종사자 약 13만 명의 임금이 올라갑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돌봄서비스 서비스단가 인상 현황(단위 : 원,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2018	10,760(16.5%)	10,760(9.8%)	12,750(14.6%)	11,800(15.7%)
2019	12,960(20.4%)	12,960(20.4%)	14,000(9.8%)	14,000(18.6%)

■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5만명을 추가로 배치 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경·조사 등 휴가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8년부터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조리원 대체인력 35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18년) 사회복지직 233명 → ('19년) 사회복지직 233명 + 조리원 35명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인상 등
처우개선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전 사회적 근로여건 개선
-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 어린이집 보조교사 1.5만명 추가 확충,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은 2019년 7월~)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2/ 2731)

모성 보호 및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 현재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21~42%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됩니다.

〈1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 비율(%)〉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현행	42	35	28	21
개정	20	15	10	5

- ▣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의 금액(10만원 인상), 대상, 범위 및 지원 기간 등을 확대하여 혜택을 넓혀줍니다.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용을 지원금액 한도(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 내에서 출산(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발표 예정

1세 미만 아동 및 임·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경감

- **추진배경**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 후 산모·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① 1세 미만 아동 외래 본인부담 경감지원 확대(21~42%→5~20%)
 - ②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 10만원 인상, 사용기간 및 대상 확대
 - * 단태아 50→60만원, 다태아 90→100만원,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1년까지,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 **시행일** 2019년 1월

보건복지부

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신낭종, 요로결석, 맹장염, 장충첩증, 치질 등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9년에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비뇨기나 하복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18.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19년에는 두부·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 (변경)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환자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044-202-3692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이 시작됩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 방문 의료·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식사·이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 돌봄 수요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여 향후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시행

- **추진배경** 지역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대상 선도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선도사업 지자체 : 8개 기초지자체(사업예산은 총 6,393백만원)
* 노인 4개 시군구,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 실시
 -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대상별 케어모델 운영
 - 돌봄 관련 상담·안내를 위한 케어상담창구 운영, 집수리(낙상방지), 방문의료, 방문 건강관리, 요양 등 통합 서비스 제공
- **선도사업 공모·선정**
 - 지자체 및 관계기관 대상 정책 설명(‘19.1월)
 - 선도사업 공모(‘19.1월) → 심사·선정(‘19.3월 초)
 - 선정 지자체 추진계획 전문가 컨설팅(‘19.3~4월)
- **시행일** 2019년 6월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044-202-3535)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19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로써, 치매안심병동 확충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치매환자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므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 **추진배경** 이상행동이 심한 치매환자를 위한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여 치매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경감
- **주요내용**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6~7 및 별표2의2 신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일정한 시설·장비·인력기준을 갖춘 병원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8)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예산상 제약으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에 머물렀으나,
 - 2019년 1월부터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18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월 363만원) → 100%(월 452만원)
 - ** (지원 대상) 8만 명 → 11.7만 명(3.7만 명 증가)
- 앞으로도, 저 출산 대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저출산 대책의 핵심과제로 선정, 검토
- 주요내용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
 - * ('18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월 363만원)
→ 100%(월 452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044-202-2815)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 등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만성질환자 약 1,397만명(총인구의 27%), 전체진료비(54조원)의 35%인 18.7조원(고혈압·당뇨 4.3조원)

- 앞으로는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 특히, 기존 만성질환관련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통합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여 경증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 중심으로 관리됨으로서 만성질환 적정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기대됩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시행

- 추진배경 포괄적·통합적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관리
- 주요내용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케어플랜 수립, 지속 관찰·관리, 교육·상담, 평가 등 제공
- 시행일 2019년 1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 검역지원과 (☎ 043-719-714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오염인근지역이 6개국으로 확대·선정하여(5개국 신규 선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 검역감염병(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6종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변경(지정·해제) 하였습니다.

*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증후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 | | |
|---|------------------------|
| ① (콜레라) 15개국→18개국 | ④ (폴리오) 7개국→9개국 |
| ②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국 11개 성·시→9개 성·시 | ⑤ (페스트) 1개국→1개국(변동없음) |
| ③ (중동호흡기증후군) 5개국→10개국 | ⑥ (황열) 42개국→42개국(변동없음) |

- 특히, 메르스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중동지역 일부 국가(5개국)를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향후에도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12년 이후 메르스 발생지역, 지정학적 근접 위험국, 선진국의 중동지역 관리 범위를 고려하여 선정(입국자 검역조치는 오염지역과 동일)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 **추진배경** 해외감염병 발생 변화에 따른 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현행화
- **주요내용**
 - ① 오염지역 변경(60개국→67개국*) * 감염병별 중복 국가 제외
 - 지정 : (콜레라) 니제르, 카메룬, 짐바브웨, 알제리 (폴리오) 니제르, 파푸아뉴기니
 - 해제 : (콜레라) 수단
 - 변경 : (AI) 중국 11개 성·시 → 9개 성·시*
 - ② 메르스 오염인근지역 신규 지정 :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
 - ※ 감염병별 중복 국가 제외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9)

'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계획

- 추진배경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①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 ②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입니다.

-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돌봄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2천까지 방과후돌봄을 단계적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시

- 추진배경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①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자: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500명('19년)
 - 서비스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단가 12,960원)
 - ② 방과후돌봄서비스
 - 대상자: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19년)
 - 서비스내용: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단가 12,960원)
- 시행일 2019년 3월(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7월(방과후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8)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자해나 공격 등 행동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서울과 경남(양산시) 2곳에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 서울한양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16.9월~)

- 2019년에는 6곳을 신규 지정하여 전국 권역별*로 포함 8곳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권역별로 거점병원이 지정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및 개입과 더불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행동발달증진 센터 권역별 확대

• 추진배경 발달장애인 전문적 치료지원 및 의료접근성 제고

• 주요내용

• 주요기능

-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 발달장애인 행동치료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가족 및 종사자에 대한 행동문제 중재 교육, 행동치료지원 전문가 양성 및 전문 연구 등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제고, 문제행동 관련 발달장애인 다빈도 질환, 문제행동의 원인이나 개입과정에서 발견된 질환의 치료지원 등

• 지원확대 : 2018년 (2개소) → 2019년 下 (8개소)

• 시행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47)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예정입니다.

- 그간 사회서비스는 민간중심으로 제공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현저히 미흡하여
 -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향상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 종사자들의 근로안정성 및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 '19년에는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종사자들의 일자리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시범사업 개요

- 추진배경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 주요내용 시·도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시설 직접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등 각종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시설 안전점검 등 민간제공기관 지원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2)

비수급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의 급여 보장 수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개선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 됩니다.
 - 또한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 '19년 기준 중위소득(452→461.4만원) 및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4인가구 135.6→138.4만원)에 따른 생계급여액이 확대 지급되고
 -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주거급여도 '19년 기준 임대료 인상(5.0~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확대(기존 중위 소득 43 → 44%) 됩니다.
 - 교육급여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 추진배경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주요내용
 - 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3단계 시행
 - ②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보장수준 강화
- 시행일 2019년 1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24, 3821)

'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별도 서비스가 없고, 보호종료 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19년부터는 만18세~24세인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주거와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를 제공하여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역량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 강화

- **추진배경**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및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 지원
- **주요내용**
 - 보호종료 2년 내인 만 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시범사업)
 -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맞춤형 사례관리(240호) 통합 제공 (시범사업)
 -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880명) 제공
- **시행일** 2019년 4월(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19년 5월(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2019년 6월(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12세 이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044-202-2685)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대부분의 충치 치료에 사용됨에도 비급여로 남아있어 국민 부담 수준이 큰 편이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 원 기준 치아당 8만 원~9만 원 수준입니다.
-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간은 비급여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용(약 8만 5,000원)의 일부(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한방推拿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추진배경 어린이 충치 치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자활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자활장려금 지급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3)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하여 차감함에 따라 근로유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 '19년부터는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9년 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약 19천명에 최대 38.5만원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자활장려금 개요

- **추진배경** 자활장려금 지급을 통해 자활참여 생계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소득증가 및 탈수급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원금액 : '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천명 대상, 월평균 21.3만원 지급 예상(최대 38.5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4)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 SOC 예산 39억을 지원합니다.

-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 개소당 평균 2,300백만원 지원

- 그간, 지역자활센터는 노후화된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 욕구가 컸으나 국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19년에는 사업단 리모델링, 노후 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히, 시공 단계에서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추진배경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자활센터에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자활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①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자활센터 발굴 및 신청 접수
 - ② 지자체는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등 반영
 - ③ 시공단계에서는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실시
- 시행일 2019년 1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2)

2019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이 됩니다.

-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출입구나 건물 근처에서의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흘러들어가는 등,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 또한,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19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17.12.29.)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및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 **추진배경**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 **주요내용**
 - ①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②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영업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 1단계 : (‘18.7.1.시행)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단계 : (‘19.1.1.시행)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
-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어린이집·유치원 금연구역), 2019년 1월 1일(흡연카페)

“청년이 청년을 돕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3228)

‘19년부터 17개 시·도별로 한 곳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하여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가 없었으나, ‘19년부터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서 청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대학, 사회복지기관, 사회적기업 등을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채용·교육 후,

■ ‘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층의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게 됩니다.

■ ‘19년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여 ‘20년에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시범 운영 실시

- **추진배경**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시·도별 사업단에서 청년 119명(1개 사업단 당 7명씩 채용, 17개 시·도에 119명 채용)을 채용·교육 후, 청년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 분야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정부에서는 청년 임금과 사업단 운영비를 지원
 - * 서비스 제공 청년: 19~34세의 저소득층, 관련분야 전공자 등 우대 채용
 - ** 서비스 이용 청년: 15~39세의 청년층(소득기준 없음, 무료제공)
- **시행일** 2019년 3월~12월
 - * 사업계획 공고(‘18.12.17.~‘19.1.11.) →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19.1.)
 - 인력채용 및 교육(~‘19.2.) → 사업시행(‘19.3.~12.)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044-202-2828)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건강검진대상 포함 및 20세, 30세 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합니다.

▣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

-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19년부터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 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 추진배경 20~30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 주요내용
 - ①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을 포함하여 국가건강검진 대상 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년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 → '19년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② 우울증검사 대상 : 40세·50세·60세·70세 →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 시행일 2019년 1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8년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만9,960원 → 25만원으로 인상

–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배포 예정(12월 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추진배경**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①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25만원→30만원)
 - ②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시행일**
 - ① (소득하위 20%) 2019년 4월(잠정)
 - ② (소득하위 40%) 2020년
 - ③ (소득하위 70%) 2021년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6)

노인일 자리를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노인일 자리는 활동역량에 비해 활동시간이 적어 참여자 활동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활동 시간을 60시간으로 확대하고, 활동 수당도 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어르신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 추진배경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
- 주요내용
 - ① 노인일자리 확대(51만개 → 61만개)
 - ②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 : 월 65만원/월 60시간 기준
 - * 지역아동센터 환경정리,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등
- 시행일 2019년 1월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과 (☎ 043-719-8775)

'18년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이 공고되었으며, 의료비 지원 및 진단지원 대상질환 확대 등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되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또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 예정입니다.

** '19년 추가 검토에 따라 질환 개수 변동 가능

'19년에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 지정·운영하여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관리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새소식)의료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희귀질환 지원확대 추진

희귀질환자 지원확대

- 추진배경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역할 확대
- 주요내용
 -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652개→927개)
 - ②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사업 대상 확대(극희귀질환 51개→89개)
 - ③ 권역별 거점센터 확대 지정 및 운영 (중앙 1개 센터, 지역 10개 센터)
- 시행일 2019년 1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970)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됩니다.

종전에는 ①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②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최저임금법 개정('18.6.12)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보도자료>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개정 최저
임금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고임금 근로자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불합리 해소 및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 계기 마련
- **주요내용**
 - ① 개정 최저임금법(‘18.6.12)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규정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 다만,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상여금), 7%(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②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 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 044-202-778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9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 '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18년과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합니다.
- * (5인 미만)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 지원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19년에도 안정자금 지원 지속
 -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더 크나 지불여력은 낮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 추가지원 실시
-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지원)
 - * (5인 미만) 월 15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67)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 '19.1.1.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하여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신규고용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할 것(대규모 기업)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 가능하며, 승인절차가 폐지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자료(일자리창출)>고용창출장려금(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추진배경** 근로시간단축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지원수준 인상 등 실시
- **주요내용**
 - ① (지원금 인상) 기업규모 관계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 월 60만원 지원
* 우선지원기업·중견기업 대상, 간접노무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10만원
 - ② (지원요건 완화) 사전승인절차 폐지 및 기업규모 관계없이 신규고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110%이상이면 지원가능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93, 7443)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만 18~34세 청년 중 ①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②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졸업·종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종퇴 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② (소득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무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제외).

참고 '19.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 시작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 **추진배경**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클린카드로 지원)
- **시행일** 2019년 3월 접수 시작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건설기계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레미콘(믹서트럭콘크리트)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 '19년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7종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1인 자영업자는 현재 8개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③ 건설기계사업 ④ 쿼서비스업 ⑤ 예술인 ⑥ 대리운전업
⑦ 금속 등 제조업 ⑧ 자동차정비업

- '19년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일선수협 투명경영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① 건설기계업종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1개→27개)
②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항공장학재단(“하늘드림재단”) 설립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48, 4254)

저소득층 등의 양질의 일자리(조종사) 등 희망사다리 확대를 위해 '18년 말까지 하늘드림 재단을 설립하고 '19년부터 조종사를 희망하는 先선발 後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에게 훈련비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조종사 희망자를 항공사가 선발한 후 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완료 후 채용

- 지금까지는 능력과 열정이 있어도 높은 비행훈련 비용으로 인해 조종사를 꿈꾸는 저소득층 등 청년들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 '19년부터는 하늘드림재단을 통해 先선발 後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 중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를 대상으로 훈련비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늘드림재단 설립

- 추진배경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희망사다리 확대
- 주요내용
 - ① (재원) 양 공사에서 60억(각 30억)을 출연하고 점차 확대
 - ② (대출금액) 약 1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금리 약 3%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
 - ③ (지원대상) 조종사 선선발 후교육 선발 인원 중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 대상자('19년도 목표 약 30명, 20억)
- 시행일 2019년 1월 2일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044-201-3826)

농어촌·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주민들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소형버스, 100원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간에는 대중교통은 지자체 업무로 간주, 정부의 지원이 미약했으나, 2019년부터는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 각 市지역 당 버스는 3억원, 택시는 5천만원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 농림부는 군 지역에 동일한 사업 별도 추진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도시형 교통 모델 추진

- 추진배경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 주요내용
 - ① 공공형 버스(소형버스 등) 기초 지자체당 3억원 (지자체 매칭 5:5)
 - ②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등) 기초 지자체당 5천만원 (지자체 매칭 5:5)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68)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국적으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10,191개 급식시설 중 약 73%(7,413곳)가 50인 미만 시설로 영양사가 없이 급식이 제공됨에 따라 위생 및 영양관리가 취약하여,
 - 전국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센터에 소속된 영양사 등 급식관리 전문인력이 급식소를 순회 방문하여 위생·영양관리를 지도하고,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급식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모든 어르신 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급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 **추진배경**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요양시설의 불량급식이 보도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아 노인 복지시설 급식 위생·안전관리 지원 필요
- **대상**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대상 급식소(280개소)
- **수행** 6개 시·도 6개소
- **운영**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그간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성과를 활용하는 등 운영 효율성 제고
- **주요 사업**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노인·조리원·요양보호사 등 대상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행일** 2019년 7월

농약 안전관리강화로 우리 먹거리가 더 안전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65)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가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19.1.1.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됩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PLS가 시행되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식품에 잔류할 경우 불검출 수준(0.01 mg/kg)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PLS의 도입으로 국내외 구분 없이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킨 안전한 농산물만이 우리나라민에게 제공됩니다.

〈PLS 이후 제도 변화〉

기준 여부	현재	향후	비고
기준 설정 농약	기준에 따라 적용	작동	-
기준 미설정 농약	① 당해 농산물의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적용	일률기준 적용 (0.01 mg/kg 이하)	기준이 없음에도 ①, ②, ③ 순차 허용했던 농약 오남용 관리 한계점 개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일부 시행

- 추진배경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 및 농약 오·남용 방지
- 주요내용 농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검출 시 일률기준 (0.01 mg/kg 이하)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18.2.2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 043-719-6210)

수입 위해식품을 수출국 현지부터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겠습니다.

- 수입검사 다수 부적합 및 사회적 이슈 등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관리합니다.
 - 2019년에는 중국산 김치 및 베트남산 과채·채소류음료 등의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우선 실시하여 위해우려 품목은 수출국 현지부터 안전 관리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특별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모든 수입국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현지실사를 기피·방해하거나 현지실사 계획에 대해 계속 무응답하는 등 의도적으로 현지실사를 기피하는 업소는 수입중단 등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계획

- 추진배경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로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수입검사 부적합 및 언론 이슈 등 위해우려가 높은 국가의 품목 제조업소에 대한 집중관리
 ②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모든 수입국에 대한 현지실사
 ③ 현지실사를 의도적으로 기피, 방해하는 업소에 대한 제재조치(수입중단 등)
- 시행일 2019년 3월(잠정)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044-719-2004)

식품판매업소에 개별 설치되었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8년 12월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부터 설치매장에 대한 운용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 화수 대상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매장의 POS 단말기로 전송하여, 위해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 모든 매장의 시스템이 항상 정상 작동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서비스(방문 및 원격)를 제공하여, 위해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중소유통매장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관리 필요
- 주요내용 ①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 1단계 : ('18) 현황판 등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축
 - 2단계 : ('19) 리포트, 통계, 보안강화 등 추가기능 개발
 ②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위해정보 수신 모니터링, 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 시행일 2018년 12월

저출력심장충격기(AED) 및 모유착유기의 성능 등 실태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043-719-3815)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설치된 공동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및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철도역사 등에 설치된 저출력심장충격기*(AED)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나, 경로당 등 의무적용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제품은 안전사각지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저출력심장충격기(3등급) : 전기 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실 세동을 제거하는 기구

- 설치 의무 기관외의 장소*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 작동성능, 배터리 방전 및 패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시설, 청소년수련관 등(출처 :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

- 또한, 모유착유기의 경우 출산 직후의 산모가 사용하고, 신생아가 섭취하는 모유를 취급하는 제품으로 위생관리가 중요합니다.

- 산후조리원, 직장내보육시설에 비치되어 공동사용하는 모유착유기에 대해 위생관리 및 소독여부 실태 조사 및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모유착유기 설치 현황 : 전국 산후조리원 624개소(11,865대) 및 전국 직장내 보육시설 562개소(562대)
(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지원과)

공동사용 의료기기 실태점검 계획

- 추진배경 안전사각지대에 설치되어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및 사용실태 점검 필요
- 주요내용 자동제세동기 및 모유착유기에 대한 성능 및 관리 실태 등 점검
- 시행일 2019년 상반기(저출력심장충격기), 하반기(모유착유기)

05

공공안전 및 질서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기상청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

시행일 : 2019년 3월

Before

지금까지는 기상특보나 지진관측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기상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FAX를 통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After

2019년 3월부터는 민원인이 방문 없이 기상특보와 지진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상청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일 : 2019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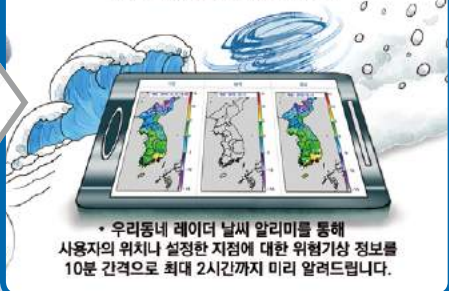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는 위험기상(호우, 눈, 낙뢰 등)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131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After

2019년 7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호우, 눈, 낙뢰 등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합니다.



•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나 설정한 지점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를 10분 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 대폭 완화 등 국적제도 개선

법무부 국적과 (☎ 02-2110-4121)

일반귀화 신청 시 필요한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추천인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종전에는 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를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갖춘 추천인(1명)*의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 2018년 12월 20일부터는 귀화신청자의 직장 동료·이웃사람·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서(2명)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검사, 변호사, 교수, 5급 이상 공무원 등

귀화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한 부동산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기존의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도 인정됩니다.

■ 종전에는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한 부동산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공시지가만을 인정하였으나

- 2018년 12월 20일부터는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됩니다.

* 일반귀화 6천만원 이상, 간이귀화 3천만원 이상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먼저 영주자격부터 취득해야 하는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시행됩니다.

■ 종전에는 외국인이 소지한 체류자격(비자)에 관계없이 국적법 제5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 2018년 12월 20일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소지)한 외국인에 한해 일반 귀화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이민자의 유입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

일반귀화 추천인
자격 대폭 완화 등
국적제도 개선

- 추진배경 추천인의 자격이 특정 직역·직위로 한정되어 있어 개선 필요
- 주요내용 귀화신청자의 직장 동료·이웃사람·동장·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서(2명)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18년 12월 20일

귀화·국적회복자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제도 시행

법무부 국적과 (☎ 02-2110-4133)

귀화·국적회복 허가자가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을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국적법이 2018.12.20. 부터 시행됩니다.

-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 사실을 귀화허가 통지서로만 받고 있어서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18.12.20.이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개정국적법 제4조제4항은 법무부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도 시민권취득을 위한 최종단계로 선서(Oath) 및 시민권증서 수여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마당>국적/귀화안내>국적증서수여식

국적증서 수여식 개요

- **참석대상** 귀화 및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 **개최일정**
 - 매월1회 이상 개최(전국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주관)
 - 국적증서수여식 참석 대상자는 일자 및 장소 개별통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국민선서 내용**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시행일** 2018년 12월 20일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4)

비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

■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 **추진배경** 맹견 관련 상해·사망사고 경감,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완화
- **주요내용**
 - ① 맹견 안전관리 사항 신설(정기 교육 의무 이수, 출입불가 장소 신설 등),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모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벌칙 규정 신설
- **시행일** 2019년 3월 21일

버스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044-201-3827)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파악을 위하여 2019년 9월 19일부터는 버스내 영상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 지금까지는 일부 노선버스에만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년 9월 9일부터는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영상기록 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승객들이 인식할수 있도록 안내판도 설치 됩니다.

-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는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임의조작이 제한되어 다른 곳 을 비추지 못하고,
 - 필요한 경우 이외의 영상기록 이용·제공 등이 제한되며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도난·훼손 등의 방지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버스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파악

- 추진배경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교통사고 상황파악
- 주요내용
 - ① 노선버스,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② 승객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인식할수 있도록 안내판등 설치 의무화
 - ③ 목적외 임의조작 및 필요한 경우 이외 영상기록 이용·제공이 제한
 - ④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조치 등
- 시행일 2019년 9월 19일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044-201-3828)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여객터미널 등 교통 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상시 점검토록 탐지장비를 구입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전국 모든 터미널에 탐지장비 1개 보급

■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12)2,400건→('13)4,823건→('14)6,623건→('15)7,623건→('16)5,185건→('17)6,465건

* '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은 1,590건(24%)

- 따라서,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강화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며,

*(터미널) 개선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최대 600만원)

■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하여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몰카 안심시대’ 만든다

여성 안심터미널 추진 계획

- 추진배경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안심 교통환경 조성」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① 전국 260개 터미널 대상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1대씩 지원
 - * 전국 295개 터미널 중 자체구입 운영 중인 40여개를 제외한 260개
 - ②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관리자 책임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시행일 2019년 1월

어린이 통학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044-201-3825)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확보 및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중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하여 총 11년(9+2) 차령이 적용됩니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 시 2018년 12월 31일까지 차령제도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 2019년도부터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은 기본 9년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합격시 최고 2년을 추가하여 총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 차령제도가 도입됩니다.

* 2015.7.20.이전에는 차령이 9년으로, 2015.7.20. 법령개정을 통하여 차령을 9+2년으로 규제완화하였으며, '15.7.20.~'18.12.31.까지 적용 유예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연혁법령 검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5.7.20. 개정)

어린이 통학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제도 시행

- **추진배경**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및 서비스 제고 등
- **주요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차량에 대한 차령 적용
 -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로부터 차령 기산
 -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로부터 차령 기산
 - 차령은 기본 9년이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시 최고 2년 추가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044-200-5563)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부터 불법어업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대폭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포상금액을 일괄 상향* 조정하는 한편,
* (현재) 10~200만원 → (조정) 50~600만원
- 기존의 불법어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분만 아니라, 불법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에 대해서도 신고포상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포상금액 대비 약 2배 가량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 **추진배경**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확대
- **주요내용**
 - ①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액을 일괄 상향 조정((현재) 10~200만원 → (조정) 50~600만원)
 - ②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포상금액 대비 약 2배 가량 확대 지급(최고 600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최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법 운용상 문제점 개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82)

선박평형수 배출금지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이 검사를 받도록 검사 대상 선박을 신설하면서 임시검사의 이서조항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 원활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안착 및 국내산업계 보호를 위해 배출금지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 법 제정 시 협약의 적용제외 및 완화규정 중 일부규정이 미반영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선박평형수관리법 규제 완화를 위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관련규정) 「선박평형수관리법」 제6조, 제14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

- **추진배경** 원활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안착 및 국내산업 보호 기반마련
- **주요내용**
 - ① 선박평형수 배출금지 예외조항 추가
 - ②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이 검사를 받도록 함
 -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해소 후 바로 등록 가능
- **시행일** 2018년 12월(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률안의 정부이송 예정) 및 2019년 6월(공포 6개월 후 시행)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 확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44-200-5651)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허가기간을 5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어항 내 편익시설의 민자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 어항시설의 안정적인 사용과 수익을 보장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 시키고, 행정절차 축소에 따라 민원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률 정보>어촌·어항법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 확대

- **추진배경** 어항 내 편익시설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기간 규제 완화
- **주요내용**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 확대(3년 이내 → 5년 이내)
- **시행일** 2019년 6월 12일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02-2181-0882)

2019년부터 자연재해와 밀접한 기상특보와 지진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기상특보나 지진관측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기상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 2019년 3월부터는 민원인이 방문 없이 기상청 기상현상증명 요소 전체를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정
기상특보, 지진 증명 발급 시 방문, 전화, FAX 접수	기상현상증명 전 요소 인터넷 발급 (기상특보, 지진 증명 포함)

참고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

- **추진배경** 자연재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의 전자화 확대
- **주요내용** ① 기상현상증명 전체 요소의 인터넷 발급
②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 온라인 즉시발급 서비스 개시
- **시행일** 2019년 3월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 02-2181-0863)

기상청은 국민 누구나 호우, 눈, 낙뢰 등을 즉각적으로 인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를 2019년 6월부터 제공합니다.

- 한반도 지역의 비, 눈, 낙뢰 실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에 위험기상 사전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호우, 눈, 낙뢰로 인한 재난·재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 **추진배경** 국민 누구나 호우, 눈, 낙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위험성에 대한 사전정보의 신속한 전파 필요
- **주요내용**
 -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에 위험기상 사전 알림 기능 추가
 - 위치설정 : 사용자 현재위치(기본설정), 관심지점
 - 알림대상 : 호우, 눈, 낙뢰(선택가능)
 - 알림주기 : 매 10분, 최대 2시간까지 미리 알림
- **시행일** 2019년 6월

06

국방·병무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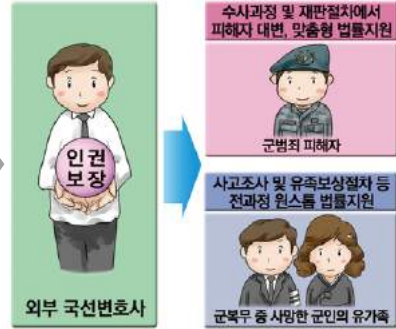
1 국방부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일 : 2019년 상반기

Before

군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변하고 사망사고조사 및 유족보상에 대해 유가족을 맞춤 법률지원함으로써, 장병 및 군가족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After



2 국방부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시행일 : 2019년 1월(보수 인상)
2019년 7월(인사제도 개선)

Before

유급지원병 보수체계를 일반하사와 달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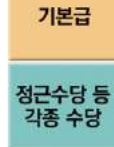


After

'19년 1월 1일부터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동일하여 '정근수당, 실적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하사와 동일하게 개선
유급지원병 보수 = 일반하사 보수
(기본급 + 각종 수당)

<유급지원병, 일반하사>



3 병무청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e-mail로 발송하였습니다.



After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병무청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Before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After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 : 28세 이상자 입영연기제한
• ‘졸업 예정’ 사유 : 학교별 제한 연령 초과 1년 범위 내
입영 연기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02-748-6812)

군인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 영내 발생 가혹행위,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진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에서 외부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하여,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합니다.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도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 사망사고 발생 즉시 신속하게 유족에게 변호사를 지원하고, 사고 조사 및 유족보상절차 등 전 과정에서 원스톱 법률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군사법개혁,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 국선 변호사 제도 계획

- **추진배경** 약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피해자, 유족에게 법률지원 실시
- **주요내용** 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외에 피해자에게도 외부 국선변호사 지원
②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사고조사 및 보상 과정에 국선변호사 지원
- **시행일** 2019년 상반기(입법진행 중) / 예산 확보 완료(시범실시 중임)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을 두고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년 1월부터(예정) 병과 명칭을 개정 적용할 계획입니다.

-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 과거, 사상과 이념무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 병과를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정훈병과의 '정'자를 정치 '政'에서 정신 '精'으로 바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장병 정신전력 강화 기능을 강조한 것입니다.
-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화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하고,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쏠 분야로 확대되었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 병과로 개정합니다.

병과 임무에 맞게 병과 명칭 개정

- 추진배경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 개선 및 현재 수행중인 병과임무 정확히 표현
- 주요내용 헌병→ 군사경찰, 정훈(政訓)→ 공보정훈(公報精訓), (해·공군)시설→ 공병, (육군) 화학→ 화생방, 인사행정→ 인사
- 시행일 2019년 1월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국방부 인력정책과 (☎ 02-748-5135)

'19년부터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해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19. 1. 1.부터 유급지원병 보수를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하여 '18년 대비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을 인상합니다.유급지원병도 일반하사와 동일하게 정근수당, 실적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9. 7. 1.부터 유급지원병이 장기복무를 희망할 경우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하여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가 가능하며, 희망시 장기 부사관으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 유급지원병 장기복무 선발시 현역병 복무기간만큼 별도의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참고 - 유급지원병 보수체계〉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안
	유형Ⅰ	유형Ⅱ	유급지원병(Ⅰ·Ⅱ) 및 일반하사
계	월 182만원	월 242만원	월 245만원
기 본 급	147.5만원(하사 3호봉)	147.5만원(하사 3호봉)	166.5만원(하사 3호봉)
장려수당	35만원	95만원	-
각종수당	-	-	78.4만원(정근수당, 실적수당 등)

* '18년 182만원 → '19년 예산안 245만원, 증 63만원 (유형-Ⅰ 기준)

유급지원병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 **추진배경** 약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한 피해자, 유족에게 법률지원 실시
- **주요내용**
 - ① 유급지원병 보수 인상 : 유형-I 기준 182만원 → 245만원(증. 63만원)
 - ② 장기복무 희망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인사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복무기간을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
 - 장기복무 선발시 현역병 복무기간만큼 별도의 가점 부여
- **시행일** 2019년 1월(보수 인상), 2019년 7월(인사제도 개선)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허용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시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외동반 휴직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군인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시 휴직이 불가능하였으나,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19년 1월부터(예정) 해외동반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부군인 증가로 배우자가 재외무관, 개인해외파병, 해외 학위 위탁교육 선발시 배우자와 동반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보장이 필요가 있고,
 - 공무원·민간인 배우자의 해외 근무 등에 따른 소요에 대한 필요성 제기되어 해외동반휴직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동반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해외동반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 및 수당도 미지급 되겠습니다.

군인도 배우자 해외 동반휴직 허용

- | | |
|---------------|-----------------------------------|
| • 대상 |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시 가능 |
| • 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 봉급/
경력인정 | 미지급/경력에 미인정 |
| • 시행일 | 2019년 1월 예정 |

평상시에도 특별한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평상시에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특별진급을 할 수 있도록 야전지휘관에게 특별진급 추천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전사 및 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로만 한정하고 있는 특별진급을 평상시에도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도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19년 1월부터(예정) 특별진급을 할 수 있도록 야전지휘관에게 진급 추천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 군인은 '전사자 및 순직자'와 '전투유공자 중 장교'는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1계급 진급 시킬 수 있었고,
- '전투유공자'를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전 군의 본보기가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고, 사유 발생시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범위를 '복무 중'으로 확대하여 적용 하겠습니다.

- 다만, 특별진급 중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그 계급을 한정하고 그 사유발생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습니다.

* 계급 : 장교(중위 이하), 부사관(중사 이하), 병(상병 이하)

평상시에도 특별한 공적 세운 군인 특별진급 가능

- | | |
|-------|---|
| • 대상 |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등
* 특별승진의 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 요건 | 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대통령령에 명시 |
| • 범위 | 공무원임용령에 공무원 및 경찰의 특별승진 계급을 한정 |
| • 시행일 | 2019년 1월 예정 |

군인도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 업무대행 지정 범위 확대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 (☎ 02-748-5172)

군인도 ‘업무대행 지정 범위’를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9년 1월부터(예정)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군인은 출산휴가, 육아휴직만 업무대행 지정 범위로 적용하고 있어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도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까지 업무대행 지정
범위 확대

- 추진배경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고려
- 주요내용 군인 휴직 업무대행 지정 범위 확대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 시행일 2019년 1월 예정

부서관 진급선발 제외 대상 개정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9)

부서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19년 1월부터(예정) 개정 적용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는 진급선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군사법원에 기소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군무이탈 중인 자라 하더라도 제적되기 전까지는 현역신분이 유지되므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를 보장 하여 부서관도 장교와 동일하게 진급선발 대상권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진급낙천 및 진급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관 진급선발 제외 대상 개정

- 추진배경 부서관 진급선발 대상자 제외 사유를 삭제하여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달한 자는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될 권리 보장 위해
- 주요내용
 - ① 개정
 - 제26조(부서관 진급 선발 대상자)
 - ② 신설
 - 제26조의2(추천자, 후보자 및 낙천자의 명단)
 - 제26조의3(진급 예정자 명단)
 - 제26조의4(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 제26조의5(발령)
 - 제26조의6(발령의 보류)
 - 제26조의7(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 제26조의8(진급 낙천)
- 시행일 2019년 1월 (예정)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3)

우리 군 장병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2019년 급식혁신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 급식혁신 사업은 ① 브런치, ② 자율메뉴, ③ 복수메뉴, ④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의 4가지 세부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병사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 : 출타 외식, 외부음식 배달, 푸드트럭 등

- 2018년 추진된 급식혁신 사업에 대한 장병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으며, 장병 다수가 혁신사업 운영횟수 증가를 희망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육·공군 전체와 해군·해병 일부 부대가 운영한 급식혁신 사업을 2019년에는 전군·전 부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장병들이 급식혁신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만, 부대별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급식시기 자율조정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추진

- 추진배경 장병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 급식 질 개선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브런치’, ‘자율메뉴’, ‘복수메뉴’, ‘병영식당 외 급식기회 부여’ 4개 사업
 - 1단계 : (‘17) 육·해·공군·해병대에서 시범대대를 선정하여 시험 급식
 - 2단계 : (‘18) 육·공군 전체, 해군·해병 일부부대로 급식 확대
 - 3단계 : (‘19) 전군·전부대로 급식 확대 추진
- 시행일 2019년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8)

국방부는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류 신규 보급 및 보급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봄·가을 장병들의 쾌적한 병영생활을 위해 기존에 1인당 1벌씩 지급되었던 춘추운동복을 '19년부터 1인당 2벌씩 확대 지급할 예정이며,
- 군 피복 만족도 조사 결과, 장병들이 선호하는 기능성 런닝과 드로어즈 팬티는 기존에 병영생활 기간 동안 각 6매씩 지급하던 것을 각 8매씩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을 대상으로 패딩형 동계점퍼를 신규 보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장병들의 피복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 추진배경 병사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
- 주요내용 춘추운동복·기능성내의류 확대 지급/신규 물자 지급
 - ① 병사 춘추운동복 1벌 → 2벌로 확대 지급
 - ② 기능성런닝, 드로어즈팬티 각 6매 → 각 8매로 확대 지급
 - ③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 대상 패딩형 동계점퍼 신규 보급
- 시행일 2019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90)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국가 주도로 '19년부터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였으나, 디자인 및 문구 등이 통일되지 않았고 명패가 보수·교체 되지 않아 훼손 또는 변색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달성에 미흡하였습니다.
- 통일된 디자인 및 문구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명패를 달아드리고, 신규 보급 및 재교부 등 사후 관리를 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홍보마당>나라사랑신문 9월 6면>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추진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 **추진배경** 국가 주도로 명패를 달아드리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달성
- **주요내용**
 - 단계적 명패 보급 추진
 - 1단계 : ('19~'20) 상이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 2단계 : ('21) 국가유공자 유족
- **시행일** 2019년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 직접 관리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5)

독립유공자 16인 및 광복군 합동묘소가 있는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19년부터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이 북한산에 소재하여 야생동물·수해 등으로 묘역 훼손이 발생하여도 후손, 기념사업회 등 관리주체의 관리능력이 미흡하여 즉각적인 복구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전국에 산재한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 ’19년도부터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 예산(351백만원)이 반영되어
 - 묘역 전담 관리자를 통한 묘소 상시 점검, 별초·묘역 훼손 복구 등을 통해 묘소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국가에서 직접 관리

- 추진배경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에 대한 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국가관리묘역’ 지정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추진
② 수유리 애국선열묘역’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19년 예산 351백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 044-202-553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변경하여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 1989년 12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제정한 이후 실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기념일 날짜가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2006년부터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의 합리적 확정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임시정부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기념일 변경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념일 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령(안)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으며,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는 4월 11일에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변경’과 함께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주관부처 변경’,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이 11월 2일 관보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장차관직속>의정관>국경일·기념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등 변경

- **추진배경** 논란이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합리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의의 제고
- **주요내용** 그동안 논란이 되던 임시정부수립기념일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학계,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2019년 4월 11일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발송 시행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15)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19년부터 모바일통지서 발송이 시행됩니다.

- 그동안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는 우편과 e-mail로 발송하였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19년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병무청 앱을 재구축하여 각종 병역정보 활용이 쉽도록 하였고, 휴대폰 본인확인 확대 등 민원 출원시스템을 모바일에 최적화함으로써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모바일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발송

- 추진배경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적 송달수단 확대 필요로 기존 전자우편(e-mail) 송달 외 모바일 앱을 통한 송달 추가
- 주요내용
 -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 확대
 - 전자우편 외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송달 시행
 - * 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와통지서 송달)제4항('17.11.28.) 및 병역법 시행령 개정('18.5.28.)
 - 모바일통지서 발송 체계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2)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19년 1월 1일 입영대상자부터 제한됩니다.

-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제한 연령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제한

- **추진배경** 입영연기 악용 우려가 있는 연기사유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병역이행 지연 방지 및 공정한 병역의무이행 유도
- **주요내용**
 -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는 28세 이상자 연기 제한
 - ‘졸업 예정’ 사유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 연기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7)

병역의무자 여비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액을 현실화합니다.

-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 시 소요되는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19년부터는 입영과정에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숙박비를 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역의무자 여비 중 숙박비 지급액 인상

- 추진배경 병역의무자 여비지급의 현실화 추진
- 주요내용 병역의무자 숙박비 지원 금액 확대(4만원→5만원)
- 시행일 2019년 1월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7)

'19년 1월 1일부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됩니다.

- '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860만원 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하여 시행됩니다.
-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은 '18년 대비 각각 400만원(6.2%), 3만 7,733원(2.1%) 인상되었으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 **추진배경** '19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산정

- **주요내용**
- 재산액 기준 : 6,860만원 이하
 - 월수입액 기준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금액(원)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가족수	5인	6인	7인	
금액(원)	2,186,816	2,528,218	2,869,619	

* 8인 이상 가족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4만 1,401원씩 증가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41)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하여 중앙신체검사소까지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신분확인 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4급~6급 판정 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하여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지방병무청 홍채인식기 설치, 신분확인 불편 해소

- 추진배경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 등의 신분확인 불편 해소
- 주요내용 신분확인 위한 홍채등록 필요시 지방청에서 가능
(현행) 홍채인식기가 준비된 중앙신체검사소 방문 등록
(개선) 지방병무청 홍채인식기 설치로 검사받은 병무청에서 확인 가능
- 시행일 2019년 1월

병무청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4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주소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관할조정*(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관할조정 : 청별 검사인원의 균형 유지를 위해 지방청 경계선 지역을 인근청으로 조정

- 서울 노원구, 도봉구 → 경기북부병무지청
- 경기 과천, 광명, 군포, 안양, 의왕, 하남 → 서울지방병무청

-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치유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 뿐만 아니라 관할이 조정되어 예전에 검사 받았던 지방병무청에서도 편리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 추진배경 질병 등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장소선택 확대로 의무자 편리성 제고
- 주요내용 재신체검사 장소 선택 확대
(현행) 실거주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가능
(개선) 관할조정 청(최초 검사를 받은 병무청) 추가 선택 가능
- 시행일 2019년 1월

민생현장 등 사회복지요원 배정인원 확대

병무청 사회복지정책과 (☎ 044-481-3024)

사회복지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 5천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소집적체 해소대책을 논의하여 국민안전, 사회복지분야 등 민생현장에 사회복지요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민생현장 등 사회복지요원 배정인원 확대

- **추진배경** 사회복지요원의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한 '19년도 추가배정 확대
- **주요내용** 국민안전, 사회복지 분야 등 민생현장에 배치될 예정
 - '19년 추가 배정 인원 : 5,571명
 - 범죄 예방 활동 보조,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 등(경찰청) : 3,617명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보건복지부) : 1,604명
 -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교육(소방청) : 350명
- **시행일** 2019년 1월 중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1)

업체 주도의 방산수출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선정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75%(중소기업) 이내에서 10억원 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 (참고)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이내에서 지원

- 대형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참여 촉진 등 방산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정부지원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개발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대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활성화 등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정부지원금 확대
- **주요내용** 선정된 과제당 정부지원금을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규정개정 2018년 7월)

07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시행일 : 2019년 3월(예정)

Before

지금까지 콘텐츠 스타트업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년이하 창업자, 재창업 기업이었습니다



After

'19년 3월부터는 콘텐츠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연계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개별 업체의 지원 금액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 후 재공지 예정

2 국토교통부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2019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환·환불 요건

-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 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 ③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

After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실시

시행일 : 2018년 12월 13일

Before

그동안 자사의 기술이 다른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더라도,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가 없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After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했다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신설

After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3,000억원)을 신설합니다.

	신입	신입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 유지 기업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	운전	시설
대출 한도						45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에내)	
대출 기간						6년 (거치기간 2년포함)	10년 (거치기간 4년포함)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우대 (*19.1분기 : 1.9%)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5 문화재청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일정 기간(13일~120일)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을 실시해왔습니다.



After

2019년 1월 1일부터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연중 야간 상시관람을 실시합니다.



6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시행일 : 2019년 3월

Before

지금까지는 기상청 민원 발급 시, 기상현상증명서를
종이에 발급해 왔습니다.



After

'19년 3월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 하며, 민원 발급은 기존의
종이 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7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After

'19년 1월 1일부터 공정위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회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는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 측에 배상책임이 물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After

'19년 1월 1일「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02-2110-1882)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업자간 방송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가입 시 선택권이 제한되었으나, 품질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방송서비스를 직접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2018년에는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하여 시범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 항목과 평가방식 등을 보완하여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MSIT PR>보도자료>2018년 유료방송서비스 시범평가 결과 발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추진배경** 품질평가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선택권 제고 및 품질경쟁 환경조성
- **주요내용**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1단계 : ('18) 유료방송서비스 시범평가 실시
 - 2단계 : ('19) 유료방송서비스 본평가 실시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 TV 사업자 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02-2110-1885)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위주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법인별로 종합유선방송 (재) 허가 신청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법인별로 대부분의 심사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동일 법인이더라도 방송구역별로 허가를 각각 신청해야 했습니다.
- 허가신청 단위를 방송구역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여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 ※ 현재 방송구역별(78개)로 92개 사업허가권(방송구역별로 복수허가 가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제도변경으로 사업허가권은 25개('18.11.20. 기준)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MSIT PR>보도자료>유료방송 분야 규제개혁 본격 추진

법인별 허가신청으로 케이블 TV 사업자 부담 경감

- **추진배경**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주의 시장상황을 제도적으로 반영
- **주요내용** 허가신청 단위를 방송구역에서 법인으로 변경(방송법 시행령 제5조)하여 잦은 재허가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 (2만 명→8만 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044-203-2819)

기업 내 휴가 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8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8만 명 규모로 4배 확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정부지원 휴가비 대비 7.1배의 관광지출 효과로 국내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국내휴가비 지원 확대

- **추진배경** 기업 내 휴가 가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국내여행 촉진
- **주요내용**
 - ① (사업방식)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
 - ② (여행경비 적립) 근로자 1인당 총 40만원
* 적립비율: 근로자 50%(20만원), 기업 25%(10만원), 정부 25%(10만원)
 - ③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 명
 - ④ (신청방법)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 ⑤ (적립금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추진일정** 참여기업·근로자 모집(2~3월) →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3월)
→ 적립금 사용(4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본격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 044-203-2897)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별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내년에는 효문화뿌리마을 조성(대전)을 비롯한 6개 사업에 대해 31억원 국비 예산을 지원하여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참고 '19년도 신규사업 : 6개 사업 31.2억원

⇒ 효문화뿌리마을(대전) 7.5, 문화산수구곡관광길(청주) 5.25, 토정비결체험관(보령) 2.7, 문헌사색원(서천) 3.75, 홍주천년양반마을(홍성) 6, 사신들의 바닷순례길(태안) 6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본격화

- **공간범위** 대전, 세종, 충북(11개 시·군), 충남(15개 시·군)
- **사업규모** 47개 사업 (개발사업 34개, 진흥사업 13개)
 - 사업지역을 8개 관광권역으로 설정하고, 거점·연계·루트사업 개발
 - 충청유교문화 관광상품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진흥사업 구성
- **총사업비** 7,947억원 (개발사업 7,151억, 진흥사업 796억)
 - 국비 3,547억원(개발 3,149, 진흥 398), 지방비 4,400억원(개발 4,002, 진흥 398)
- **사업기간** 2019년 ~ 2028년 (10개년)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044-203-2414)

콘텐츠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연계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8년까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년 이하창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사업의 대상을 3년 이하 창업자로 확대하고
- 재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재도전 프로그램의 지원 예산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소위 '죽음의 계곡' 이라고 불리는 창업 후 3~7년차 콘텐츠 기업에 대하여 창업도약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할 계획이며 문화 콘텐츠 벤처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콘텐츠 스타트업의 창업, 성장 및 재창업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확대 및 신설
- 주요내용
 - ① 창업육성 프로그램 확대('18년 19억원→'19년 30억원, 약 60개 업체)
 - ② 창업도약 프로그램 신설('19년 30억원, 약 30개 업체)
 - ③ 창업재도전 프로그램 확대('18년 5억원→'19년 20억원, 약 40개 업체)
* 개별 업체의 지원 금액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 후 재공지 예정
- 시행일 2019년 3월(예정)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운영 개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226)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한 지역별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 하고 3개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는 '18.6월 착공하여 '19下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

*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3개소

〈운영 예정 3개소〉

충북 보은 조감도	주요시설	면적	비고
	통제센터+정비고(3층)	634m ² (연면적 992m ²)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 등 *(정비고) 시험기계 정비, 데이터 분석 등
	이착륙시설 (헬리패드)	21×21m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경남 고성 조감도	주요시설	면적	비고
	통제센터 (3층)	547m ² (연면적 852m ²)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 등
	이착륙시설 (활주로)	200×20m	-
	정비고(1층)	145m ²	시험기계 정비, 데이터 분석 등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강원 영월 조감도	주요시설	면적	비고
	통제센터+정비고(3층)	600m ² (연면적 996m ²)	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 등 *(정비고) 시험기계 정비, 데이터 분석 등
	이착륙시설 (헬리패드)	21×21m	-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044-201-4315)

2019년에는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인증·조종자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제도*를 위험도(최대이륙중량·속도·장착장비) 기준으로 개편합니다.

* 사업용 혹은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시 기체신고, 자체중량 12kg 초과 사업용 드론 조종자격 필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비행승인·안전성 인증

〈4단계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잠정)〉

분류	정의(무게는 최대이륙중량 기준)
모형비행장치	① 자체중량 250g 이하·②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 미 탑재·③ 일정 운용 요건** 준수하는 기체 *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 **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 비행 금지 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kg이하 중 1,400J의 운동에너지 이하(법령상에는 무게·속도로 명기)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① 250g-7kg 무게 중 1,400J을 초과하거나, ② 7-25kg 무게 중 14,000J 이하의 기체로 규정(법령상에는 무게·속도로 명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150kg 이하 드론 중 앞서 정의된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체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계획

- 추진배경 저위험 드론의 규제완화, 고위험 드론의 안전성 확보
- 주요내용 ①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초안) 마련('18.10.1 발표)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18.10-)
②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확정('18.12 발표)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90)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추적감시 흐름이 저해되어 세관 및 검역통제 기능 약화를 이유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만 허용하여 왔습니다.
 -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6월~) 및 평가 후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혼잡을 초래하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보도자료>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추진배경**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 ① 인천공항에서 시범운영 및 평가 후 전국공항 확대
 - 1단계 : ('19) 인천공항 T1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후 입지선정
 - 2단계 : ('20) 운영성과 평가 후 면세점 보완 후 전국공항 확대
 - ②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명품관 운영,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
- **시행일** 2019년 6월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3, 4238)

제주공항에 CT X-ray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서 승객 본인여부 확인 시 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노트북·액체류 검색을 위해 가방을 열어야만 검색이 가능했으나, CT X-ray가 도입되는 제주공항에서는 가방을 열지 않고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탑승구 진입 시 탑승권을 확인하였으나,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인천공항에 생체정보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구축 추진

⇒ 승객 편의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
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 추진배경 항공기 탑승객 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
- 주요내용 ① 제주공항 : CT X-ray, 중앙판독실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② 김포공항 : 국내선 출발장 진입 시에만 운영중인 생체인식시스템을 탑승구까지 확대
- 시행일 2019년 2월(제주공항 CT X-ray 등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2019년 10월(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 생체인식 시범운영 개시)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38)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 가능합니다

※ 현재 국내의 자동차제작자(현대기아, GM, 르노, 쌍용) 및 수입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운영 중인 중재 제도에 참여하고 있음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 시행

• 주요내용

• (교환·환불 요건)

- ①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
- ②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
- ③ 자동차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 30일 초과한 경우

• (하자 입증책임)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작사, 6개월 이후 소비자

• (중재효력)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양 당사자 모두 구속)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6867)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했다면, 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하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자사의 기술이 다른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더라도,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가 없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기업과 침해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를 잘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도입 예정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치 도입

- **추진배경**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 필요
-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 가능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382)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① 일자리 창출, ② 고용 유지, ③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3,000억원)을 신설합니다.

■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정부의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과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등 일정기준 이상 충족 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비고
일자리 창출	일반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중진공
	청년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 고용부
고용유지	일반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중진공 고용부
	청년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고용부
인재육성	일반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기부
	청년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기부

■ 동 자금은 정책자금 최저금리 수준(기준금리 △0.3%p)에서 추가로 우대 금리(△0.1%p)를 적용하며, 대출기간 5~10년으로 운용됩니다.

일자리창출 촉진자금 신설

- **추진배경**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특화자금 신설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① 일자리 창출 기업, ② 고용유지 기업, ③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
 - 대출한도 : 45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Delta 0.3\%$ p(추가 우대금리 $\Delta 0.1\%$ p 적용)
- **시행일** 2019년 1월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공인 업종이 기존 중분류 기준 19개 업종에서 전체 25개 제조업 업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소공인 밀집지역 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개별 소공인에 대한 판매촉진, 제품·기술 개발(개선) 등을 지원

■ 범정부 규제혁신 차원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업종을 명기한 소공인법 시행령을 개정(18.10.30) 하여, 전체 제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이에, 2019년 소공인특화지원 공모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약 1만개의 소공인이 추가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공인특화지원 주요내용

- 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소공인 집적지 내에 역량있는 기관을 소공인특화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기술교육, 공동마케팅 등 맞춤형사업 운영
- ②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와 연계하여 소공인 집적지 내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 및 집적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 지원
- ③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 제품 품질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고정판로 확보와 매출성장 기여(업체당 30백만원 이내 지원)
- ④ 제품·기술가치 향상 : 소공인이 보유한 제품·기술의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및 부가가치 향상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지원)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검색>시행령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 **추진배경** 신사업 육성과 제조업 간 균형 성장 지원을 위해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 **주요내용** 소공인특화지원 사업 지원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19개 제조업 업종에서 25개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 **시행일** 2019년 1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 042-481-8923)

소공인의 혁신역량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현대화된 생산시설 조성 및 저렴한 소공인 입주 공간 지원 등 소공인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 '19년부터 소공인 집적지(밀집지역)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소공인들에게 입주부터 기술지원,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후화된 시설,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주요기능

- ① 판로지원 :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에게 온·오프라인 판매부터 수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판로 지원망 구축
 - (전시·판매) 동일업종의 우수제품을 전시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전시·판매장 마련(3개층 내외)
 -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판매를 위한 쇼핑몰을 구축하여 주문→서비스→배송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유통플랫폼 구축
 - (수출 지원) 수출지원센터, 코트라 등 수출지원 기관의 전문가를 상주시켜 수출안내,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수출지원
- ② 첨단장비 지원 : 제품의 판로확대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최신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여 공동 활용 지원
 - * (예시) 수제화의 경우 족부스캐너 보급으로 상주시문 시스템 구축
- ③ 비즈니스모델 개발 : 기획·디자인-제조-유통-마케팅 연계지원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수요 창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주관기관 모집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설

- **추진배경**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소공인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 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설
- **주요내용** 소공인 집적지(밀집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소공인 입주부터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 2019년 2곳을 시범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곳 내외 구축 지원
- **시행일** 2019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존의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8997

폐업 또는 폐업 준비중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확대·강화할 계획입니다.

-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18년 500명 → '19년 2,000명)
 - 점포철거시 지원한도액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2019년부터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재기교육·사업정리컨설팅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원상복구 지원

- 추진배경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 등 지원확대
- 주요내용
 - ① 지원규모 확대(연 500명→2,000명)
 - ② 지원한도 확대(최대 100만원→ 200만원)
- 시행일 2019년 3월

공공기관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GS로 변경

조달청 자재장비과 (☎ 042-724-7319)

2019년 2월부터 각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차량용 유류의 공급사업자가 SK에너지에서 GS칼텍스로 변경됩니다.

-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3.04%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고, 구매금액의 1.1%를 카드포인트로 적립받게 됩니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도를 변경하여 유류비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 시·군·구 평균가격보다 5% 이상 비싼 주유소는 공공 협약을 금지하여 공공기관은 더 저렴한 주유소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적립된 유류카드 포인트는 공공기관의 환급 신청이 없어도 연 1회 자동 환급받게 됩니다.
 - 각 공공기관은 2019년 7월부터 카드포인트 환급 신청을 위한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을 통하여 공공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싼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은 개발 후 2019년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변경

- 추진배경 기존 사업자 사업기관 만료에 따른 신규 사업자 선정
- 주요내용 각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차량용 유류의 공급사업자가 SK에너지에서 GS칼텍스로 변경
- 시행일 2019년 2월

문화재매매업 상호, 영업장소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 마련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042-481-4923)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금까지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규정이 없었으나, 2018년 12월부터 문화재매매업자는 상호 변경, 영업장주소지 변경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변경신고 절차·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법령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규정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추진배경**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매매업 허가규정만 있을 뿐 허가 이후 상호·영업장소 변경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변경신고 절차와 규정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① 상호·영업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화
 - ②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 ☎ 02-762-9515)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국민의 여가 활용 증가 등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을 실시합니다.

-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일정 기간(13일~120일)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을 실시해왔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연중 야간 상시관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운영 계획

- 추진배경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가치 실현
- 주요내용
 - ① 운영시간 : 연중 야간 21시까지 상시관람(20시 입장마감)/월요일 휴궁
 - ② 개방구역 :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대온실 권역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특허청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716)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특허청이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이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하게 되고, 출원인은 통지를 받고 난 후에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반환하는 절차였습니다.
- 하지만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특허청에 등록하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시 출원인이 반환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특허청이 등록된 출원인의 계좌로 반환금액을 직접 입금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 * 반환 받을 계좌의 사전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과 같이 반환을 별도로 청구함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소식알림>보도자료>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도입

- **추진배경**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등의 반환절차 개선
- **주요내용** 출원인이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고 특허청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발생시 출원인의 청구가 없어도 해당 계좌로 직권으로 입금하여 반환
- **시행일** 2019년 1월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개선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10)

날씨전용 누리집인 날씨누리(www.weather.go.kr)와 모바일웹(m.kma.go.kr) 사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현재 날씨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날씨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공합니다.

-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첫 화면이 매우 복잡하고 원하는 지역의 날씨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 국민들이 자주 접속하는 메뉴와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하였고, 접속한 지역의 위치 기반 날씨정보와 고해상도 레이더 자료 기반의 눈·비 영역, 우박 등 상세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웹을 전면 개편하여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실시간 날씨정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합니다.
 - 웹 화면의 디자인을 가독성 높게 개선하였고, 현재날씨와 예보정보를 터치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 모바일웹

날씨누리 및 모바일웹 개선

- **추진배경**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날씨정보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① 날씨누리 콘텐츠 정비 및 기능 개선
 - 기상정보, 날씨영상(레이더, 위성) 첫 화면 배치
 - 날씨 아이콘 변경, 가로형태 동네예보 구성 등
 - ② 모바일웹 전면 개편
- **시행일** 2019년 1월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02-2181-0882)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이 전자증명서(PDF)를 서비스합니다.

-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종이문서로 기관에 제출해 왔으나, 전자증명서(PDF) 발급으로 민원서류의 전자적 제출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증명서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증명서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증명서를 제출받은 기관은 QR코드를 이용해 원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민원 신청은 기존과 같이 인터넷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현행	개정
(발급) 종이문서	(발급) 종이문서/전자문서(PDF)

참고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

기상청 기상현상 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 **추진배경** 기상청 민원의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한 민원서류 활용성 증대
- **주요내용**
 - ① 기상현상증명 전자증명서(PDF) 제공
 - ② 개인정보 없는 증명서로 민원서식 개선
 - ③ QR코드를 이용한 원본 확인
- **시행일** 2019년 3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02-2110-1475)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등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 현행 통신분쟁 해결을 위한 재정 제도는 처리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90일, 방통위 상정)하여 이용자의 소규모 분쟁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기존의 재정제도는 사업자간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참고 방통위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추진배경** 전기통신사업자·이용자간 효율적인 분쟁조정
- **주요내용**
 -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손해배상, 이용약관에 다르게 서비스 제공, 부당한 이용요금 청구,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거짓 고지 등에 대한 분쟁조정
 - 60일 이내에 심사·조정안을 작성하고,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
- **시행일** 2019년 6월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 044-200-4304)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보도>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8.30.)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추진배경**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 및 법 위반 억지력 제고
- **주요내용**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 부과
- **시행일** 2019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933)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 외에 다른 유통채널(대리점이나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추진배경**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제공
- **주요내용**
 - 물품공급을 통한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 주요품목의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및 판매장려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물품 등 공급현황에 대한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기재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받을 길 열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938)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구제받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비윤리적인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하여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보도>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가맹계약서에 명시

- **추진배경**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해당 브랜드 가맹점 매출 급감
- **주요내용**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가맹점·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8) 대리점거래과(☎ 044-200-4960)

가맹분야 및 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이제 시·도에도 설치됩니다. (2019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설치 예정)

- 그간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들은 본사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서울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방문하여야만 분쟁조정이 가능했습니다.
 -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각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가맹점 및 대리점주들은 가까운 지역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편리하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위는 향후 더욱 많은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보도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거래·대리점 거래 분야 지방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 추진배경 분쟁조정제도 접근성 제고를 통한 가맹·대리점주 피해구제 강화
- 주요내용 서울·경기·인천에 가맹점 및 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수도권 가맹본부, 지자체에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938)

서울·인천·경기지역 가맹본부들은 내년부터 각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 그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전담해 왔으나, 올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도와 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내년부터는, 그 첫 단계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업무 분담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 그 결과 더욱 신속하고 면밀한 정보공개서 심사가 가능해지고,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가맹점주들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보도>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분담

- **추진배경** 업무 분담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의 속도와 질 제고
- **주요내용**
 - 시·도에 관할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권한 부여
 - 2019년부터는 서울·경기·인천이 참여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하도급대금 부당감액·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95)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공정위로 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게 됩니다.

- '18년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 한 차례의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크게 높여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 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 행위들이 실효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하도급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기술유용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추진배경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억제
-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는 단 한차례의 고발 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됨
- 시행일 2018년 10월 18일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044-200-4950)

대형유통업체의 4가지 주요 갑질 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만큼까지만 배상받을 수 있었으나,
- 대형유통업체가 ①상품 대금 부당 감액, ②부당 반품, ③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④보복 행위 등 납품업체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 **추진배경** 대형유통업체의 손해배상 범위 확대
- **주요내용**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
- **시행일** 2019년 4월 17일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044-200-4950)

소매업 거래를 하지 않는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어 그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됩니다.

-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요건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제한되어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유통업을 영위하는 임대업자들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의 몇 %를 임차료로 수취하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중 임대매장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복합쇼핑몰·아울렛이 입점업체에 대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의 갑질을 하는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 **추진배경** 복합쇼핑몰·아울렛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예: 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시행일** 2019년 4월 17일

금지되는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 유형 추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044-200-4950)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만이 제재되었으나,
- 앞으로 납품업체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조치도 금지되어, 이러한 보복조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또한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그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 추가

- **추진배경** 대형유통업체의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범위 확대
- **주요내용**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
- **시행일** 2019년 4월 17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2)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올해 본격 운영됩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을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선대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심판위원장은 국선대리인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 **추진배경**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마련
 - ②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선정
 -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선대리인의 보수로 지급
- **시행일** 2018년 11월 1일

08

농림·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시행일 : 2019년 3월

Before

시설

After

2019년 3월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시행일 : 2019년 4월 25일

Before

2019년 4월 25일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됩니다.

* GP유통 의무 제외대상

- ①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After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신설

After

2019년 1월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해양수산부

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 출시 및 국고보조를 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지금까지 어업인안전보험의 급부 수준은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After

'19년 1월부터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보급 및 국고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5 해양수산부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행

시행일 : 2019년 4월 18일

Before

지금까지는 해양공간을 선점식으로 이용함에 따라 이용수요간 상충 등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After

2019년 4월18일부터는 ‘先계획 後이용 체제’로 전환하여 해양공간을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 해양공간계획 수립
- ②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무충여부를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6 해양수산부

정부·민간이 함께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추진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Before

지금까지는 노후화된 원양어선 대체를 위해 융자방식(신조 대체 70%, 중고선 대체 80%)으로 지원하였습니다.



After

‘19년에는 중·소 선사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조성한 펀드를 활용하여 노후된 원양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 용이해집니다.



7 산림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After



8 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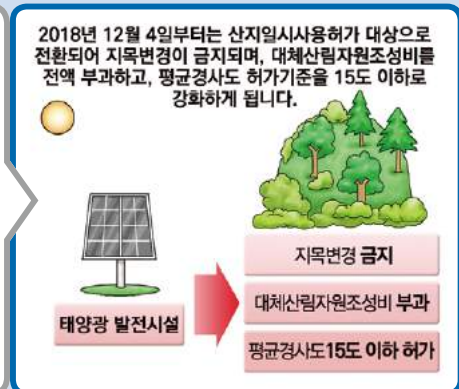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일 : 2018년 12월 4일

Before



After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9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시행일 :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부터 적용
(신청기간: 2018년 12월 19일~2019년 1월 31일)

Before

지금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25,000명 발급하였습니다.



After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어 1만 명 증가한 35,000명에게 발급 예정 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6)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 주택 단지를 조성합니다.

-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 예정입니다.
- 공동 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개별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매력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농촌분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 **추진배경**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주거·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주요내용**
 - ① 귀농귀촌 신혼부부·1자녀 이상 양육가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지원 (4곳, 120호)
 - ② 공동 육아나눔 활동 공간 조성(지구당 1개동, 4동)
 - ③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지구단 1개동, 4동)
- **시행일** 2019년 3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2019년부터는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액을 월 최대 43,650원으로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연금보험료 지원액의 단계적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책홍보>농촌분야>농업인복지증진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 ②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97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 기준소득금액(97만원) 초과인 경우 월 43,650원(정액)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농업정책국 농지과 (☎ 044-201-1733)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18.11월)하여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매입비촉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농지 단편정보 제공, 지사 방문 사업신청→

(개편) 농지 종합정보(가격·항공지도·재배작목·토양정보) 제공, 인터넷·모바일 사업신청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농지은행사업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 **추진배경** 농지은행 사업 신청시 방문 접수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 **주요내용** 전국 단위의 농지정보 제공,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농지은행포털 개편, '18.11)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1792)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하고, 보험료를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품목수 : ('01) 2개 → ('10) 25 → ('16) 50 → ('18) 57 → ('19p) 62 → ('20p) 67

또한,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는 보험료 금액의 70%로 국고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18) 모든농가 50% → ('19)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 농업분야>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정책보험 품목 확대 및 지원강화

- **추진배경**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또는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경영안정망 확충
- **주요내용**
 - ① (농작물재해보험) 노지채소 중심으로 보험 대상품목 확대(57품목 → 62품목)
 - 신규 5품목 :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 ② (농업인안전보험)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 지원비율 : ('18) 모든농가 50% → ('19) 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
- **시행일** (농작물재해보험) 품목별 가입시기 상이
(농업인안전보험) 2019년 1월 1일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4)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포획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 추진배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조직
② (지원내용) 포획트랩 설치비용 지원(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 시행일 2019년 2월 1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5)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18.11.23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그간 AI 발생·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입니다.

* 기존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반경 500m까지 예방적 살처분 조치함

-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3Km 예방적 살처분

- **추진배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확대 등 강력한 방역조치 필요
- **주요내용**
 -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
 - 다만, 발생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
- **시행일** 2018년 11월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1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9)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됩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달걀

-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GP유통 의무가 제외됩니다.

- ①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계란의 GP유통 의무화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추진배경 계란의 위생·안전관리체계 강화
- 주요내용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통한 선별·포장 유통이 의무화
- 시행일 2019년 4월 25일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4)

우수 전통식품명인이 보유한 기능에 대한 전승여건을 개선하여 차세대 전수자 발굴·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명인들의 기능과 그 제품에 대한 전시체험 등 홍보 위주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 2019년에는 '식품명인'과 '그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여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 지원

- 추진배경 차세대 전수자 발굴 및 양성을 통해 우수 식품명인이 보유한 전통식품 기능이 지속적으로 전승, 발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주요내용
 - ① 사업대상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 및 기능전수자
 - ② 지원성격 : 기능전수 활동에 따른 장려금
 - ③ 지원규모 : 3억원/전수교육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업기간 2019년 1월~10월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40)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종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능력이 뛰어난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면세유종으로 추가하여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됩니다.

-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제초농약 사용을 줄이고 제초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예초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추진배경**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는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주요내용**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 추가
 - * 현재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은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인정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4)

2018년부터 식품 분야의 기술거래와 유동 활성화를 목표로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공공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에 대해 구매를 원하는 기관으로 중개하여 이전 시키고 기술의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수요 발굴-매칭-협상에 이르는 기술거래·이전 전(全) 주기를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기술거래·이전 사업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 **추진배경** 식품 분야 기술거래 촉진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사업대상) 공공연구기관 및 지자체의 식음료제조업 및 외식업* 종사 기업으로의 식품분야** 특허 이전
 - *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근거
 -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식품분야 과학기술
 - ② (주요사업) 기술거래·이전 과정 지원, 식품 기술거래·이전 정보망 구축, 기술 이전 후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시행일** 2019년 2월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1)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식품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고령친화 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 화학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사업안내서비스>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사업 도입

- **추진배경** 식품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
- **주요내용**
 - ①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 향후 새롭게 개발·보급될 혁신적 식품이지만 국내 개발수준이 미흡한 제품군에 대해 원천기술 수준을 제고
(‘19년 2,500백만원)
 - * 혁신식품 :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화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시장이 유망한 분야임에도 국내의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산업화가 미흡한 식품
 - ② 천연첨가물 산업화 :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소비자 웰빙 수요 충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화학첨가물 대체 천연첨가물 개발
(‘19년 2,969백만원)
- **시행일** 2019년 2월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82)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허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연계하여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농촌유허시설활용창업지원

농촌 유허시설 활용 창업 공간 제공

- 추진배경 농촌의 기능유지 및 활력제고를 위해 청년 등 외부 인력의 유입·정착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지원내용) 농촌의 유허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희망자에게 창업 공간 제공
② (지원대상) 농촌지역 창업 희망자
- 시행일 2019년 1월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3)

2019년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

-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위판장에 산지경매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의 상장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의 결정, 정가·수의매매 등의 가격을 협의하는 사람

-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필기시험, 모의경매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추진배경**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산지위판장에 산지경매사 배치 의무화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수산물유통법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28조
 - (시행시기) 매 2년마다 실시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해양수산연수원 위탁
 - (시험과목) ①관련법령, 경매실무 등 4과목 필기시험, ②모의경매 실기시험
 - * 농안법에 따른 경매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는 일부과목 면제
 - (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시행일** 2019년

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 출시 및 국고보조율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71)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보급 및 국고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어업인안전보험의 급부 수준은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산재수준으로 강화된 상품을 출시하여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고보조율 확대(50% → 70%)를 통하여 영세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 출시 및 국고보조율 확대

- 추진배경 어업인에 대한 정책보험의 보장강화 실천
- 주요내용
 - ① 산재형 출시
 - 유족급여금 (1억원 → 1억2천만원)
 - 장해급여금 (1억원 → 1억2천만원) 등
 - ② 어업인안전보험 국고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보조율 50% → 70%)
- 시행일 2019년 1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안전설비할인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71)

어업인의 보험료 경감을 위해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에 대하여 사고 위험률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현재 안전설비를 설치한 어선 중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어선과 설치의무가 없으나 안전 관리를 위해 자비 부담하여 설치하는 어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비의무설치 어선 중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은 2019년 1월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어선안전 설비할인제도 도입

- 추진배경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고 위험률 감소
- 주요내용
 - ① 대상어선 : 10톤 미만 어선 및 비 의무설치 어선
 - ② 할인적용 안전설비 (각 상품별 최대합산 5% 할인)
 - 어선원 보험 : 선박자동식별장치(1%),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1%), 레이더(1%), 구명뗏목(2%)
 - 어선 보험 : 선박자동식별장치(2%),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1%), 레이더(2%)
- 시행일 2019년 1월

양식어업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71)

양식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자에 대하여양식어업재해보험 보험료 할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19년 상반기부터 전년도 무사고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식어업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 추진배경 양식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에 기여
- 주요내용 무사고 할인 제도 도입(보험료의 5% 이내)
- 시행일 2019년 4월(잠정)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5만원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6)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사항('11.10)에 따라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시범사업('12~'13년)을 거쳐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특히,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원금액이 어가당 현재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수산직불금 지급단가 65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인상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5만원 지원

- **추진배경**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 **주요내용**
 - 근거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14.10월 제정/'15.4월 시행)
 - 신청대상 :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중
 - 연간 수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 1년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
- **시행일** 2019년
 - * '12년부터 매년 어가당 50만원씩 지원하다가 '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 지급('17) 55 → ('18) 60 → ('19) 65 → ('20) 70)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5)

2019년 6월 21일부터 ‘보호대상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바뀝니다.

- ‘해양보호생물’은 ‘보호대상해양생물’이 단어 길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 공모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명칭입니다.
- ‘해양보호생물’은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80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불법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할 경우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알기쉬운 용어로
명칭 변경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

- 추진배경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알기 쉬운 용어인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보전, 관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
- 시행일 2019년 6월 21일

굴비, 생굴 품목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50)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산물 유통 관리 강화를 위해 굴비와 생굴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는 지난 2008년부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자율참여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굴비와 생굴을 이력제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국민 인식도 및 이해 관계자 순응도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참여 대상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과 인력 등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보도자료>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관심은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자율적 참여방식으로는 내실 있는 이력제 운영에 한계
- **주요내용** 굴비와 생굴에 대해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굴비와 생굴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연차별로 확대
- **시행일** 2018년 12월~2021년 12월(3년)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 *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천~7천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여객선 차량운임을 경감해달라는 도서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도서민의 차량 운임을 추가 지원하도록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 도서민 차량운임의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 추진배경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주요내용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 개정 및 국비 소요예산 반영
 - ① (지침 개정) 도서민 소유의 경차와 소형차의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 ② (국비 반영) '19년 예산 반영(국비 50%)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가 지원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5)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법」이 개정·공포(‘18.12)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던 것을 도서민이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생활연료를 구매하도록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국가에서 2019년부터 도서지역이 있는 8개 지방자치단체에 해상운송비의 일부(국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하여 운송 협약을 체결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등 운송사업자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추진배경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주요내용
 - 해운법 개정 및 국비 소요예산 반영
 - ① (해운법 개정)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지원
 - ② (국비 반영) '19년 해상운송비 10억원 반영(국비 50%)
- 시행일 2019년 6월 12일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1, 5312)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 이용·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설정 등 우리나라 쏘 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합니다.

* 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 (‘18) 부산·경남→(‘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20) 전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도·경북·동해안 EEZ 등 권역별·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적합성,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해양공간을 선점식으로 이용함에 따라 이용수요간 상충 등 갈등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 4월18일부터는 ‘先계획 後이용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양이용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수부 법률 5건 국회 통과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행

- **추진배경** 해양공간에 대한 선점식 이용에서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先계획 後이용’ 체제로 해양공간 관리 패러다임 전환
- **주요내용**
 - ①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이용·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설정·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쏘해역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 ② 해양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은 입지적합성 등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수부와 사전 협의하여 적정한 공간으로 유도

* 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석유 채취계획, 광물·골재 채취계획, 항만·어항 개발계획, 수자원 개발계획,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어장 개발계획, 그밖의 해양자원 이용·개발계획
- **시행일** 2019년 4월 18일(「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정부·민간이 함께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추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044-200-5367)

노후화된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원양어선원 복지 증대를 위해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노후화된 원양어선 대체를 위해 융자방식(신조 대체 70%, 중고선 대체 80%)으로 지원하였으나,
 - 중소 원양선사의 경우 이자 부담, 담보·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융자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19년부터는 중소선사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조성한 펀드(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선사부담 10~20%)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노후된 원양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마련이 용이해집니다.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 추진 계획

- **추진배경** ① 노후 원양어선에 대한 융자지원은 중소 원양선사의 이자 부담, 담보·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 참여가 저조
 ② 이에 지원방식을 정부출자 방식으로 개편하여 담보·자부담 비율을 낮춰 노후 원양어선 안전성 증대 도모
- **주요내용** (기존) 융자지원(신조 대체 70%, 중고선 대체 80%)
 (변경) 펀드 조성(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자부담 10~20%)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감척대상을 어선어업에서 어구어업(정치성구획어업)까지 확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044-200-5516)

그 동안 어선어업만을 대상으로 감척을 실시하였으나, 어구어업(정치성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경우도 감척을 희망하고 있어,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국의 정치성 구획어업은 총 3,267건이며, 동 업종 종사 어업인은 연안어업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고, 영세한 어업인들입니다.
 - 수산자원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더 이상 어업이 어려워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 그 동안은 감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척이 어려웠습니다.
 - * (현행) 32개 어선 어업 → (확대) 32개 어선 어업+9개 어구 어업(정치성구획어업 포함)
 - * 정치성구획어업 허가건수 및 어업인 수('17년) : 3,267건, 6,588명(전남 43%, 경남 28%)
- 감척 대상에 어구어업(정치성구획어업)이 포함될 경우 감척을 희망하는 영세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감척 시 지원내용 :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잔존가액

감척대상을 어선어업에서 어구어업까지 확대

- 추진배경 감척대상에 어구를 포함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감척대상에 어구어업(정치성구획어업 9종*) 포함
 - * 9종 :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어업
- 시행일 2019년 1월
 - * 연근해어업 범위에 어구어업(정치성구획어업, 9종)을 포함하여, 감척 대상으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개정('18.12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4)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정해진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밤, 호두, 산양삼 등 79개로 정해진 품목뿐만 아니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산림청 공식 블로그>톡톡! 인포/카드뉴스>규제혁신 미래 신산업 규제 혁파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계획

- **추진배경** 현행 지원품목 외에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포괄적으로 추가하여 임가소득 향상 도모
- **주요내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 (기존) 79개 품목 →
 - (개선) 79개 품목+「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목재 및 토석 제외)
- **시행일** 2019년 1월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 완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208)

산양삼 생산자 및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개선을 통해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고 관련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유통·통관 또는 판매 시 포장 규격을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하였습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제1항

- 2019년부터는 포장규격 기준을 삭제하고, 품질검사 합격증(7x10cm)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모든 형태의 포장 규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소규모 또는 날개 단위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산양삼 수요 확대에 기여

* 산양삼 수출현황 : ('16년) 29톤(4,648천\$) → ('17년) 10톤(1,511천\$)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특별관리임산물의 포장규격 개선(안 제17조의8)

- 생산자 등이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통관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에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에 포장하여야 하던 것을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크기의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1항)
- 제1항에 따른 직육면체 상자의 윗면 또는 측면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이도록 하던 것을 상자·용기에 붙이도록 개선 (제3항)

• 시행일 2019년 1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23)

산림 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보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지목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 지목변경이 금지됩니다.
 - 따라서, 최대 20년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후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 아울러,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면제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하게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사회적 문제(산림재해 및 부동산 투기 등) 해결
- **주요내용**
 - ①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산지로 환원하는 산지일시사용제도로 전환
 - ②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
 - ③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25도→15도이하)
- **시행일** 2018년 12월 04일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042-481-8866)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였으나,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8년 25,000명 발급에 이어 2019년에는 1만 명 증가한 35,000명에게 발급예정이며, 매년 점차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www.forestcard.or.kr)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대전광역시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고>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내용

- **추진배경**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 **주요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 대상자 확대
 - ① 장애인연금 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시행일** 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부터 적용
 - * 신청기간 : '18.12.19.~'19.1.31.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정('18.8.21)으로 산림복지 소외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2018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은 3월 말 발급 완료되어, 2019년 사업부터 적용됨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 042-481-8863)

2019년 1월 1일부터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의 해외산림인턴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는 산림관련업체에서 2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있어야만 해외 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 2019년에는 산림관련업체의 2년이상 종사경력이 없더라도 해외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해외산림인턴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해외산림인턴 참여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하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2019년 해외산림인턴 모집공고

'19년 해외산림 인턴 추진계획

- **추진배경** 지원자격 완화를 통한 참여 확대 및 전문성 제고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지원자격 완화
 - (당초) :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자
 - (개선) :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
 - ② 최대 참여기간 확대(8개월→10개월)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기상청

해양기상 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기상청 해양기상과 (☎ 02-2181-0743)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해양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marine.kma.go.kr)를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존에 기상청 누리집과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을 통해 해상예보 및 관측자료, 일기도, 해양기상방송, 항만기상정보 등 다양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6대 분야*를 선정하여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는 분야별 맞춤형 해양기상정보를 지도 기반의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대 분야: 항만, 항로, 레저, 어업, 안보, 해난

- 또한, 맞춤형 해양기상정보 뿐만 아니라, 해양관측자료, 예보 및 특보, 문자메시지, 음성방송정보 등 해양기상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 추진배경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
- 주요내용
 - 6대 분야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 (기존)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 → (개선) 해양기상정보포털
 - 분야 : 항만(53소) + 항로(65소), 레저(90소), 해난(20소), 어업(76소), 안보(해구별)
 - ※ 분야별로 필요한 기상요소를 지도기반 그래픽으로 제공
- 시행일 2019년 1월

09

산업·에너지·자원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8)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와 신규 시장창출을 위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이 신설됩니다.

- 해양심층수처리수는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처리하여 탈염수·농축수·미네랄탈염수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품용수, 농·어업, 화장품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나,
 -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이 필요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아야 하여 신규기업 진입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이에 2019년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독립된 분야로 신설하여 취수시설이 없어도 제조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만 충족하면,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도 함께 신설하여 해양심층수 관련업을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책바다>법령정보>법령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 추진배경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시장창출
- 주요내용
 - ①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 ②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시설기준 마련
 - ③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규정
 - ④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등록에 관한 규정
- 시행일 2019년 3월 22일

10

환경

환경부
해양수산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해양수산부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시행일 : 2019년 1월

Before

'19년 1월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p)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공모·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 사업자는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협약 발효('17.9.8) 후 첫 선박 정기검사 (5년 주기)일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현행 3.5%이하 → 0.5%이하로 강화하여, 탈황장치(Scrubber)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After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17)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 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 또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나가게 됩니다.
-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http://ieps.nier.go.kr>)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 **주요내용**
 - ① 10개 개별허가→1개 통합허가
 - ② 획일적 기준 적용→기술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
- **시행일**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 * (‘17~) 발전, 소각, 증기공급
 - (‘18~) 철강, 비철, 유기화학
 - (‘19~)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 비료, 질소화합물 제조
 - (‘20~) 펄프, 종이, 전자제품
 - (‘21~)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 시행)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58호, '18. 4. 25)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됩니다.
-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민간은 자율참여) 차량 2부제를 실시하였으나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월) 이후에는 민간 참여도 의무화되어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까지 운행규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센터(1833-7435), 임시 누리집(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뉴스·공지>배출가스 5등급차량 12월1일부터 안내시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의 운행제한
 - ② 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9년 2월 15일(잠정, 서울·인천·경기 조례 마련중)*
* '19.2.15일 시행을 목표로 조례제정 진행중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18)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와 유역중심의 물관리,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해 2019년 6월 13일부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물관리가 크게 수량, 수질, 수해해 분야로 구분되어 다수 부처가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물관리 일원화 입법(‘18.6)으로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2019년 6월 13일부터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며, 국가 중요 물관리계획 심의·의결하고 지역간 물 문제와 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 **추진배경**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 ① (목적)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 제시
 - ② (물관리 기본원칙)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 ③ (물관리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④ (물분쟁의 조정) 이해관계자는 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해 물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 ⑤ (물문화 육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
- **시행일** 2019년 6월 13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적용,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환경부 유역총량과 (☎ 044-201-7034)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관리 및 이용을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액비화 기준 및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허가대상 배출시설(축사 등)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 등이 사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과정 등을 확대 점검하기 위하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하는 자도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가축분뇨 액비화 기준 중 부속도 기준은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에 대해 준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액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25일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까지 부속도 기준을 준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기타지역에,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특정지역 및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 기준을 2019년 1월 1일부터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관리 강화

- **추진배경**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제도 확대 시행 및 기준 강화
- **주요내용**
 - ①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 사용대상자 확대(2019년 1월 1일 시행)
 - 배출시설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까지 확대
 - ② 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 확대(2019년 3월 25일 시행)
 -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 시설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까지 확대
 - ③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기준 강화(2019년 1월 1일 시행)
 -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기타지역) 500mg/L 이하 → 250mg/L 이하
 -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특정지역) 500mg/L 이하 → 250mg/L 이하
 - (기타지역) 600mg/L 이하 → 400mg/L 이하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도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환경부 수도정책과 (☎ 044-201-7120)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에 대해 우라늄을 수도물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여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우라늄은 수도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08)되어 먹는물 중 함유실태를 검사해왔습니다.
 - 수도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및 인체위해도 평가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허용 위해수준의 약 1/10로 나타나 수도물 수질기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우라늄이 수도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대해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자료 >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수도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 **추진배경**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수도물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여 먹는물의 안전성 강화
 - ②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정수장,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상수도에 적용(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등은 매분기 1회 이상)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77)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토양오염물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토양오염물질은 21종이었으나, 1,2-디클로로에탄과 다이옥신을 새롭게 추가하여 23종으로 확대됩니다.
 - 1,2-디클로로에탄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다이옥신은 토양오염물질로 우선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2020년까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또한,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되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3】

토양오염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확대

- **추진배경** 국민건강보호 및 토양오염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새로운 토양오염물질 확대 추진
- **주요내용** ① 토양오염물질을 21종에서 23종으로 확대(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제도 실시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18.7)에 따라 제2차 계획기간(‘18~’20)부터 발전 등 26개 유상할당 업종에 대해 경매방식으로 배출권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시 입찰물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배출권 유상할당 지침(‘18.5 제정)에 따라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하고, 매월 유상할당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매를 통해 거래시장에 배출권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배출권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여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경매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뉴스·공지>2019년도 유상 할당계획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계획

- **추진배경**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 경매실시
- **주요내용** ① '19년부터 매월 유상할당 경매 실시
② 제2차 계획기간 중 유상할당업체 할당물량의 3%를 경매방식으로 공급
- **시행일** 2019년 1월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79)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유해성 정보가 조기에 확보
되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등록대상 기존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

※ 발암물질 등 고위험물질(1톤 이상)과 다량 유통물질(1천톤 이상)은 '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
(전체 유통량 99%)

■ 다만, 소량으로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됩니다.

또한,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위해 우려가 높아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0.1% 이상)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전 용도·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보도자료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보와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관리하여 국민건강 보호
- **주요내용**
 - ①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매 3년마다 등록대상 고시 →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단계적 등록)
 - ② 고위험물질 관리(중점관리물질을 함유제품(0.1%이상, 총 1톤 이상 제조·수입) 신고제도 도입)
 - ③ 소량 유통 화학물질 관리체계 전환(등록→신고)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6)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게 됩니다.
 - 산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살충제 등)은 '22년까지 조기에 사전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일상생활 속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됩니다.
 -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회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대국민 공표 등의 사후관리도 추진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

화학제품안전법 주요 내용

- **추진배경**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살생물제 사전승인제 도입
 - * 살생물제 제조·수입자가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승인 신청 → 환경부 승인
 -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 관리대상 품목 확대(23→35), 안전기준 위반 불법제품 사후관리 등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 044-201-7613)

기후변화 등 영향, 홍수와 가뭄이 빈발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계획입니다.

- 전국 주요하천 55개소인 홍수특보(주의보·경보) 지점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전국토 행정구역 단위의 홍수특보를 제공,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특히, 집중호우 시 하천변 도로, 고수부지 등 침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시방재 활동을 적극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가뭄발생 시 원인과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뭄 취약지도를 2019년 부터 단계적으로 구축·제공하여, 지역맞춤형 가뭄대책 수립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 시행되는 가뭄 예·경보를 2019년부터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여 극한가뭄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홈페이지 <https://drought.kwater.or.kr>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

- **추진배경** 기후변화 영향으로 가뭄빈발, 집중호우 등 강우양상 변화
- **주요내용**
 - ① 홍수대응 능력강화
 - 전국 홍수특보지점 확대
(現 55개소→'19년 60개→ 장기, 228개 행정구역)
 - 하천변 실시간 홍수정보지점 확대(現 235개→'19년 287개→장기, 310개)
 - 도심지 등 홍수위험지도 작성 확대(現 한강→'19년 낙동강→'23년 5대강)
 - ② 가뭄대응 능력강화
 - 가뭄 취약지도 구축 : 평가기준('18년)→ 지도구축('19년~'21년)·제공
 - 가뭄 예·경보 : 3단계(주의·심함·매우심함)
→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 **시행일** 2019년 홍수기(5.15~10.15) 前 세부사항 이행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주택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 지원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801)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해주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동안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지원받아도 철거한 지붕을 개량할 여력이 없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개량 추가 지원으로 슬레이트 사업 중도 포기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뉴스·공지>2019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용 지원

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 **추진배경**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
- **주요내용**
 - ①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②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 비용을 가구당 최대 302만원 추가 지원
- **시행일** 2019년 1월
 - *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구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0)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고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이자의 일부(2%p)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 사업자는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협약 발효(17.9.8) 후 첫 선박 정기검사(5년 주기)일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를 설치하여야 하며,
-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를 현행 3.5%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하여, 탈황장치(Scrubber)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의 이차보전 시행으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탈황장치(Scrubber) 등 친환경 설비 설치에 따른 해운선사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 추진배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대응을 통한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 친환경 설비(평형수처리설비, 탈황장치 등) 설치를 위한 자금 대출시 이자의 일부(2%p)를 국가가 지원
- 시행일 2019년 1월
* 공모·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노후 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2)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예선은 선박 규모 대비 출력(마력)이 높은 대용량 엔진을 사용하여, LNG 연료추진 예선 전환 시 환경오염 저감 효과가 높습니다.
 - LNG 연료는 기존 디젤 예선 연료인 MDO(황 1% 함유) 대비 황산화물(NOx) 92%, 질소산화물(SOx) 100%, 이산화탄소(CO2) 23%, PM 99% 저감 효과*를 가집니다.
 - * Rolls-Royce社 가스전소엔진 기준(KOMERI, 18.4월)
- 친환경 예선 전환사업을 통해 LNG 연료추진 예선 시장을 개척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노후 예선의 LNG 연료추진 전환 보조금 지원

- 추진배경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 고효율 선박에 대한 요구 증대 및 국내 주요 항구도시의 대기오염 문제 대두
- 주요내용 선령 20년 이상 항만 예선(선박입출항법 상 예선사업자)의 보유 사업자는 LNG 연료추진 예선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모 방식을 통해 신조 보조금(척 당 14억 원)을 지원받아 대체건조가 가능함
 - * 세부 내용 및 공모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1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1 국토교통부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시행일 : 2019년 3월
(인천공항 제주항공 국제선 시범운영 실시)

Before

지금까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서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 했습니다.



After

'19년 3월 서비스참여 의사를 밝힌 항공사(제주항공)와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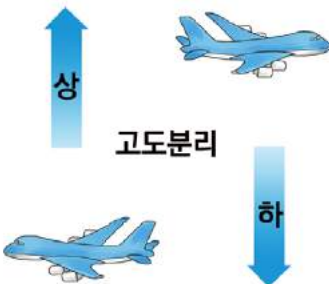
2 국토교통부

하늘길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시행일 : 2018년 12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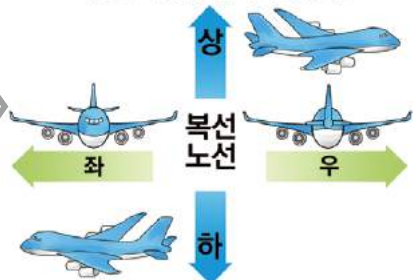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는 단일 항로에서 고도만 분리하여
양방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After

2018년 12월 6일부터는 중국·유럽행 여행이 더욱
안전하고 편해집니다. '인천-중국-몽골 구간'
의 항공로가 복선화되기 때문입니다.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로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8)

100세 시대에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19년부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권형 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시·군·구에 기본으로 1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해 온 (거점형)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18년 현재 235개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더 촘촘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19년 30개소)와 '근린형 소규모체육관'('19년 800개소)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10분내 체육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생활권형 체육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생활권형 체육시설 건립 확대

- 추진배경 모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지원규모 : 30개소 (1개소당 30억원 지원) * '22년까지 114개소 목표
 - 시설내용 : 수영장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체육시설
 -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 지원규모 : 80개소 (1개소당 10억원 지원)
 - 시설내용 : 다용도 체육관(농구, 탁구, 배드민턴, 요가 등)
- 시행일 2019년

지역의 삶을 담은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044-203-2631)

각 지역이 간직한 고유 역사를 기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 관점의 도시 재생을 확대 지원합니다.

-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18년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에는 25곳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 * 경북 포항시,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부산 영도구
- 사업 대상지는 2019년 초 문체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등과 연계한 계획을 우대하여 연관 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지역의 삶을 담은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 **목적** 문화적 관점의 지역 재생 및 사회적·문화적 지역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쇠퇴지역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구역을 지역의 역사·문화, 주민수요 등을 고려, 문화적으로 활용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사업지 수** '18년 4개 지자체 → '19년 25개 내외 지자체
- **'18년 사업 사례** (포항) 꿈틀로 문화경작소 '청포도 다방' 조성, (군산) 신흥동 마을조사기록, (천안) 복합문화 '삼거리 스튜디오', (부산 영도구) 갭강이 마을창작소 운영 등
- **시행일** 2019년 상반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044-203-2519)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19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2018년보다 1만 원 인상하여 1인당 연간 8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7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으로 소외계층 문화 향유 확대

- **추진배경**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주요내용**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전년대비 1만원 상향
 - ('18년) 1인당 연 7만 원 → ('19년) 1인당 연 8만 원
- **발급기간** 2019년 2월 1일 ~ 11월 30일
- **이용기간** 발급일~2019년 12월 31일
-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mnuri.kr)
- **시행일** 2019년 2월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개선 등 이용편의 향상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044-201-4328)

주요 공항별 시설개선 사업이 '19년에 완료되어 주차면 부족, 터미널 혼잡 등의 불편이 개선 됩니다.

- 제주공항은 '15년부터 시행되어온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19년 4월 완료되어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주공항은 주차빌딩 신축('19.1) 및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 사업('19.12)이 완료되어 혼잡은 크게 줄고 이용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 김해공항은 주차빌딩 추가 건설이 '19.12월 완료되어 주차면 부족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요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개선 등 이용
편의 향상

- 추진배경 터미널 혼잡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공항 이용객 편의 증진
- 주요내용
 - 제주공항
 - 사업기간 : '15.~'19.4
 - 사업내용 : 국내터미널 증축(2,326→2,735만명/년)
국제터미널 증축(263→420만명/년)
 - 청주공항
 - 사업기간 : '15.7~'19.4
 - 사업내용 : 국내터미널 증축(189→289만명/년), 주차빌딩 신축(4,138→4,872면)
 - 김해공항
 - 사업기간 : '18~'19.12
 - 사업내용 : 주차빌딩 신축(5,972→7,123면)
- 시행일 2019년 4월(제주공항, 청주공항)
2019년 12월(김해공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저변 확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87)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개인) 등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항공기대여업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저렴한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도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을 차별화하여 형평성 문제 및 개인 사업자의 창업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요건 합리화 및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산업 육성·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본금 요건 완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계획

• 추진배경 항공레저스포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

• 주요내용

항공레저 스포츠사업(개인)	• 법인 : (현행) 3천만원 이상→(개정) 현행과 동일 • 개인 : (현행) 4천 5백만원 이상→(개정) 3천만원 이상
항공기대여업	• 법인 : (현행) 3억원 이상→(개정) 2.5억원 이상 • 개인 : (현행) 4.5억원 이상→(개정) 3.75억원 이상

• 시행일 2019년 3월(잠정)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 044-201-4238)

해외여행을 위한 즐거운 여행길을 두 손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지금까지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서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해야 했지만,
 - 서비스참여 의사를 밝힌 항공사(제주항공)와 우선 시범운영 (‘19.3)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항에 도착한 짐은 보안검색을 거쳐 항공기에 안전하게 탑재되고, 승객은 수하물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습니다.
 - 시범운영을 거쳐 해당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호텔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항공기 탑승객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 대상으로 시범 운영
② 시범운영 후 서비스 적용 항공사 및 공항 추가확대 추진
- **시행일** 2019년 3월(인천공항 제주항공 국제선 시범운영 개시)

하늘길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 044-201-4299)

2018년 12월 6일부터는 중국·유럽행 여행이 더욱 편해질 계획입니다. ‘인천-중국-몽골 구간(1,700km)’의 항공로가 복선화되기 때문입니다.

- 현재는 단일 항로에서 고도만 분리하여 양방향으로 사용하였으나, 향후에는 선양·산둥 등 근거리 노선을 제외하고는 항공로별로 복선화하여 고도 분리 없이 일방통행(one way) 방식으로 운영 될 예정입니다.
- 항공로 복선 운영에 따른 하늘길 확대를 통해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 중국내륙 상공통과 시 비행 제한 완화 등 중국·중동·유럽행 항공편 지연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국·유럽 하늘길 확대

- 추진배경 중국·유럽 행 항로구조 개선을 통한 수용량 증대 및 지연 감소
- 주요내용
 - ① (항로구성) 중국·유럽 항로의 “인천-중국-몽골(1,700km)” 구간 복선화
 - ② (운영방법) 항로별로 일방통행으로 이용
 - 다만, 선양, 산둥반도 등 근거리노선은 비행거리를 감안 양방향 운영
 - ③ (기대효과)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 중국 내륙 상공통과시 비행제한 완화**를 통한 항로수용량 증대로 중국·중동·유럽행 항공편 지연 감소
 - * ① 인천↔중국 내륙노선 30→20마일 축소, ② 인천↔유럽·중동노선 50→20마일 축소
 - ** ③ 인천-유럽 노선 비행제한 완화(10분→6분으로 축소, '19년말까지 4분으로 축소)
- 시행일 2018년 12월 6일

12

항만개발

해양수산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규정 정비로 경쟁력 강화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70)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5)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항만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관련 규정은 항만재개발사업 절차를 준용하고 있었으나, 항만 재개발사업 관련 규정이 항만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별도 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 2019년에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조항을 먼저 시행하고, 2020년부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항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항만배후단지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입주기업의 자격, 계약·해지, 토지 또는 시설 등의 처분제한 등의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규정 정비로 경쟁력 강화

- 추진배경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규정 정비
- 주요내용
 -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자의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②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자격, 계약·해지,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분제한
- 시행일 2019년 6월(잠정)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5)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비관리청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해 준공 전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할 경우 무상사용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추진배경 비관리청 항만공사사업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항만시설 사용신고시 무상사용 신고절차 생략
 - ② 변경 허가절차 명문화
 - ③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의무화
- 시행일 2019년 6월(잠정)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신 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납입한도) 월 40만원 • (비과세기간) 복무기간 (24개월 한도) • (적용기한) 2021.12.31.	조세특례제한법 (‘19.1.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신 설〉	■ '08.12.31.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조세특례제한법 (‘19.1.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4)
발전용 유연탄· 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조정	■ 유연탄 : 36원/kg ■ 천연가스 : 60원/kg	■ 유연탄 : 36원/kg ■ 천연가스 : 60원/kg	개별소비세법 (‘19.4.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	■ 외교관 사후환급한도 • 1인당 연 100만원	■ 외교관 사후환급한도 상향 • 1인당 연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19.1.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19.12.31.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19.1.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19.12.31.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서울 • 주택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6억원이하</td><td>0.5%</td></tr><tr><td>6~12억원</td><td>0.75%</td></tr><tr><td>12~50억원</td><td>1%</td></tr><tr><td>50~94억원</td><td>1.5%</td></tr><tr><td>94억원초과</td><td>2%</td></tr></table> • 종합합산토지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5억원이하</td><td>0.75%</td></tr><tr><td>15~45억원</td><td>1.5%</td></tr><tr><td>45억원초과</td><td>2%</td></tr></table> • 별도합산토지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이하</td><td>0.5%</td></tr><tr><td>200~400억원</td><td>0.6%</td></tr><tr><td>400억원초과</td><td>0.7%</td></tr></table> ■ 세부담상한: 150%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12억원	0.75%	12~50억원	1%	50~94억원	1.5%	94억원초과	2%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45억원	1.5%	45억원초과	2%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초과	0.7%	■ 공정시장가액비율: 85%('19년) (연 5%p씩 100%까지 인상) ■ 서울 • 주택 <table><tr><th rowspan="2">과세표준</th><th colspan="2">서울</th></tr><tr><th>일반</th><th>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2주택</th></tr><tr><td>3억원이하</td><td>0.5%</td><td>0.6%</td></tr><tr><td>3~6억원</td><td>0.7%</td><td>0.9%</td></tr><tr><td>6~12억원</td><td>1%</td><td>1.3%</td></tr><tr><td>12~50억원</td><td>1.4%</td><td>1.8%</td></tr><tr><td>50~94억원</td><td>2%</td><td>2.5%</td></tr><tr><td>94억원초과</td><td>2.7%</td><td>3.2%</td></tr></table> • 종합합산토지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15억원이하</td><td>1%</td></tr><tr><td>15~45억원</td><td>2%</td></tr><tr><td>45억원초과</td><td>3%</td></tr></table> • 별도합산토지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200억원이하</td><td>0.5%</td></tr><tr><td>200~400억원</td><td>0.6%</td></tr><tr><td>400억원초과</td><td>0.7%</td></tr></table> ■ 세부담상한: 150% (단,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이상 300%)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과세표준	서울		일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2주택	3억원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	2.5%	94억원초과	2.7%	3.2%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1%	15~45억원	2%	45억원초과	3%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초과	0.7%
과세표준	세율																																																																				
6억원이하	0.5%																																																																				
6~12억원	0.75%																																																																				
12~50억원	1%																																																																				
50~94억원	1.5%																																																																				
94억원초과	2%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45억원	1.5%																																																																				
45억원초과	2%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초과	0.7%																																																																				
과세표준	서울																																																																				
	일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2주택																																																																			
3억원이하	0.5%	0.6%																																																																			
3~6억원	0.7%	0.9%																																																																			
6~12억원	1%	1.3%																																																																			
12~50억원	1.4%	1.8%																																																																			
50~94억원	2%	2.5%																																																																			
94억원초과	2.7%	3.2%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1%																																																																				
15~45억원	2%																																																																				
45억원초과	3%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	0.6%																																																																				
400억원초과	0.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 종합부동산세 분납 • (대상)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기한)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500~1천만원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 (대상)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자 • (기한) 납부기한(12.15)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 (대상금액) - 납부세액이 250~500만원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 이하 금액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종합부동산세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 명의자	■ 납세의무자 변경 • 명의자 → 실제소유자 ■ 합산배제 증여재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가 ■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 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를 적용기한 연장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 (적용 대상)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공제한도) 500만원 • (공제율) <table border="1"><thead><tr><th></th><th>기 본</th><th>우 대 공 제 율</th></tr></thead><tbody><tr><td>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td><td>2.0%</td><td>2.6%</td></tr><tr><td>기타 사업자</td><td>1.0%</td><td>1.3%</td></tr></tbody></table> • (우대공제를 적용기한) - '18.12.31. 까지		기 본	우 대 공 제 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대상 확대 등 • (좌동) • (공제한도) 700만원 - '21.12.31. 까지 • (공제율) 좌동 • (우대공제를 적용기한) - '21.12.31.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기 본	우 대 공 제 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점(개인) - 연매출액 4억원 이하 : 9/109 - 연매출액 4억원 초과 : 8/108 • 음식점(법인): 6/106 • 제조업 - 개인, 중소기업 : 4/104 - 그외 : 2/102 • 과세유흥장소 : 4/104 • 그외 : 2/102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좌동) • (좌동) • 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6/106 - 그 외 개인, 중소기업 : 4/104 - (좌동) • (좌동) • (좌동)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관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기준 명확화	(신 설)	■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 : 최종 합격 발표일 ■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시험응시 허용 (진입장벽 완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사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약조건 위반시 감면세액 조정 및 일몰 연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 대금으로 보상채권 수령후 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 만기 3년 이상: 10% • 만기 5년 이상: 20% ■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보유특약 위반시 감면세액 추징율 보완 • 만기 3년 이상: 10 → 15% • 만기 5년 이상: 20 → 25% ■ 적용기한 연장: '21.12.31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환급특례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특공제율 특례 • 8년 임대시 : 50% • 10년 임대시 : 70% ■ <신 설>	■ 좌동 • (좌 동) • (좌 동) ■ 조특법 §97의4와 중복적용 배제 명확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영농·영여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	■ 영농·영여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 면제·감면 •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인 농업인 ②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 (감면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 과세특례)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의 대지·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과세특례)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요건)공익사업시행자에게 물류시설*의 대지·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종료	■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 *(요건) 85㎡ 이하 주택을 1호 이상 등록하고 임대(시행령에 규정) • (감면대상) 신규 취득하고 3개월 내 등록한 주택 • (감면요건) 85㎡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 적용기한: '18.12.31.까지 취득분 (단, 2018년 12월 31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 일몰종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종료	■ 개인소유 토지를 임대사업자 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사업자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 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10% 감면 • 단,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로 미지정 또는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미취득시 임대사업자가 감면액을 법인세로 납부 • 적용기한: '18.12.31.	■ 일몰종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리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대상) 3년 이상 보유한 건물· 토지·조합원입주권 양도분 • (공제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 • (좌 동) • (공제율) 연간 공제율 하향 조정 및 적용기간 연장	소득세법 (‘18.7.1.)																																														
	<table><tr><th>보유기간</th><th>공제율</th></tr><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0%</td></tr><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2%</td></tr><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15%</td></tr><tr><td>6년 이상 7년 미만</td><td>18%</td></tr><tr><td>7년 이상 8년 미만</td><td>21%</td></tr><tr><td>8년 이상 9년 미만</td><td>24%</td></tr><tr><td>9년 이상 10년 미만</td><td>27%</td></tr><tr><td>10년 이상</td><td>30%</td></tr></table>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table><tr><th>보유기간</th><th>공제율</th></tr><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6%</td></tr><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8%</td></tr><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10%</td></tr><tr><td>6년 이상 7년 미만</td><td>12%</td></tr><tr><td>7년 이상 8년 미만</td><td>14%</td></tr><tr><td>8년 이상 9년 미만</td><td>16%</td></tr><tr><td>9년 이상 10년 미만</td><td>18%</td></tr><tr><td>10년 이상 11년 미만</td><td>20%</td></tr><tr><td>11년 이상 12년 미만</td><td>22%</td></tr><tr><td>12년 이상 13년 미만</td><td>24%</td></tr><tr><td>13년 이상 14년 미만</td><td>26%</td></tr><tr><td>14년 이상 15년 미만</td><td>28%</td></tr><tr><td>15년 이상</td><td>30%</td></tr></table>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율 (연8%, 최대 80%)은 현행 유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 명확화	■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 :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 1주택 보유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 1세대 범위 명확화 • 배우자 →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포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상향입법 • (좌 중)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 (적용대상) 부동산*보유비율 50% 이상인 법인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 • (과세요건) 대상 법인의 과점주주가 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주식의 50%이상 양도 * 주주1인과 국제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등(기타주주)이 주식의 50% 이상 소유 • (적용세율) 누진세율* * 주식 양도시 적용하는 10~30%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2% 누진세율 적용 〈신 설〉	■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 (좌 중) - 과점주주간에 양도(1차)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기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2차)하는 경우 1차 양도에 누진세율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시 합산하는 자산의 의미 명확화	-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비교과세) *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기타자산 ①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 (누진세율 6~42%) 적용한 산출세액 ② "자산"별로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단서 신설〉	-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계산시 "자산"의 의미 명확화 ① (좌 동) ② (좌 동) - 다만, 소득세법 §104① 각호, ④ 각호, ⑦ 각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위 각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의 합계액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연간 2,400만원 이하	연간 3,000만원 이하 (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	1과세기간 동안 사업장단위 과세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 취득재화 •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추가>	■ 자기생산 취득재화 대상 추가 • (좌동) • (좌동) •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상향입법 등	■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직장체육, 직장연애와 관련된 재화 • <추가>	■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추가 • (좌동) • (좌동) 상향입법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토지와 건물·건축물의 공급가액 산정 합리화	■ 토지·건물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 가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추가>	■ 기준시가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 (좌동)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 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 연장	■ 사업의 포괄양수 도시 대리납부기한 • 다음달 10일까지	■ 사업의 포괄양수 도시 대리납부기한 연장 • 다음달 25일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운역에서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운역 제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운역 •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 <추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운역 추가 •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고속철도 • 삭도, 유람선등 관광 또는 유흥목적은 운송수단	부가가치세법 ('19.1.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의결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신설〉	■ 신용카드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 •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대상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봉사료제외)의 4/110 (4%) • (대리납부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 • (적용기한) '21.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19.1.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전기버스 • <추가>	■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추가 • (좌동) • 수소버스	조세특례제한법 ('19.1.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구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1.12.31.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농·임·어업용) '21.12.31.까지 (여객선박용) '20.12.31.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1.12.31.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일반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 부가세 경감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부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 '21.12.31.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활용폐자원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재활용폐자원 : '21.12.31. • 중고자동차 : '19.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행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 2천만원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가산세 없음	■ 모든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의무 부여 ■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시 '20.1.1.부터 가산세 부과 예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소득세법 ('1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성실사업자 등 월세세액공제 도입	■ 성실사업자 등 월세세액 공제 미적용	■ 성실사업자 등 월세세액공제 도입 • 대상자: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 요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임차 • 세액공제: 주택월세액 (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공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12%)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 (공제한도) <table><tr><th>총급여액</th><th>공제한도</th></tr><tr><td>7천만원 이하</td><td>300만원</td></tr><tr><td>7천만원~1.2억원 이하</td><td>250만원</td></tr><tr><td>1.2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table>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 •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등)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등)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좌 등)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 (좌 등) • (좌 등)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19.12.31.	소득세법 ('18.7.1.)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 (044-215-4420)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원 이하: 15% • 2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기간 • 5년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분: 30% ■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확대 • 10년	소득세법 ('19.1.1.)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044-215-42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좌 등)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동산임대업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혜택 축소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허용 • 공제부금(공제한도 이내)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정부안) 보도자료 및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4)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기간 •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이월결손금] ×50%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 기부금 손금인정액]×10%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5년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 법정기부금 : (좌동) - 지정기부금 : (좌동)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 10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법인세법 (’19.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농어민 • (적용기한) *18.12.31.	■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좌 동) •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신 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의무가입기간) 2년 • (납입한도) 연 600만원 • (비과세한도) 이자소득 500만원 (전체 가입기간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 요건충족 시 근로소득공제도 적용 가능 • (적용기한) 2021.12.31.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 (신고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 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table><tr><th>구분</th><th>신고내용</th><th>가액기준</th></tr><tr><td>취득시</td><td>취득내역</td><td>없음</td></tr><tr><td>투자 운용시</td><td>투자 운용내역</td><td>없음</td></tr></table> 〈추가〉 • (제출자료)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명세서 •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table><tr><th>구분</th><th>과태료</th></tr><tr><td>취득시 미신고</td><td>취득가액의 1%</td></tr><tr><td>운용(임대) 소득 미신고</td><td>취득가액의 1%</td></tr></table> 〈추가〉 ※ 과태료 한도: 5천만원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없음	투자 운용시	투자 운용내역	없음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운용(임대) 소득 미신고	취득가액의 1%	■ 신고대상 조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해외부동산 처분 포함 및 건별 가액기준 신설 <table><tr><th>구분</th><th>신고내용</th><th>가액기준</th></tr><tr><td>취득시</td><td>취득내역</td><td rowspan="2">취득가액 2억원 이상</td></tr><tr><td>투자 운용시</td><td>투자 운용내역</td></tr><tr><td>처분시</td><td>처분내역</td><td>처분가액 2억원 이상</td></tr></table> • 해외 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처분 명세서 • 과태료 인상 및 조정 <table><tr><th>구분</th><th>과태료</th></tr><tr><td>취득시 미신고</td><td>취득가액의 10%</td></tr><tr><td>운용(임대) 소득 미신고</td><td>운용(임대) 소득의 10%</td></tr><tr><td>처분시 미신고</td><td>처분가액의 10%</td></tr></table> ※ 과태료 한도: 1억원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투자 운용시	투자 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처분가액 2억원 이상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 소득 미신고	운용(임대) 소득의 10%	처분시 미신고	처분가액의 10%	소득세법, 법인세법 (‘19.1.1., 해외부동산 과태료 인상 및 조정은 '20.1.1.)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없음																																			
투자 운용시	투자 운용내역	없음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																																				
운용(임대) 소득 미신고	취득가액의 1%																																				
구분	신고내용	가액기준																																			
취득시	취득내역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투자 운용시	투자 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처분가액 2억원 이상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신고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 소득 미신고	운용(임대) 소득의 10%																																				
처분시 미신고	처분가액의 10%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와과 (044-215-442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시 과태료 부과 <table><tr><th>자료 종류</th><th>과태료</th></tr><tr><td>해외현지 법인명세서</td><td>(개인) 건별 300만원</td></tr><tr><td>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td><td>(법인) 건별 500만원 ※ 年 5천만원 한도</td></tr><tr><td>손실거래명세서</td><td></td></tr></table> 〈추가〉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법인) 건별 500만원 ※ 年 5천만원 한도	손실거래명세서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 금액 인상 <table><tr><th>자료 종류</th><th>과태료</th></tr><tr><td>해외현지 법인명세서</td><td rowspan="3">(개인) 건별 500만원 (법인) 건별 1,000만원 ※ 年 5천만원 한도</td></tr><tr><td>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td></tr><tr><td>손실거래명세서</td></tr><tr><td>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td><td></td></tr></table> ■ 자금출처 소명의무 • (대상) 해외 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 (거짓 제출)자 • (소명범위) 해외 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 자금* 출처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기한)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 (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소명요구 대상자산) '19.1.1. 이후 취득하고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등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500만원 (법인) 건별 1,000만원 ※ 年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소득세법, 법인세법 (‘19.1.1., 해외부동산 과태료 인상 및 조정은 '20.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와 (044-215-4422)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법인) 건별 500만원 ※ 年 5천만원 한도																		
손실거래명세서																			
자료 종류	과태료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500만원 (법인) 건별 1,000만원 ※ 年 5천만원 한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신 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 과세대상 자산 및 세율 • (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부동산 주식은 미포함) • (세율) 20% ■ 국외전출자의 주식 보유현황 신고 의무 • (신고 기준일) 직전 연도 종료일의 주식 보유 현황 • (신고 기한) 출국일 전날 <신 설> ■ 국외전출자의 신고·납부 의무 • 주식 보유현황 등 신고·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 및 납세 관리인 신고 • 신고·납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 - <추 가> ■ 국외전출세의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식) • 국외전출세 세액공제는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제기분법 상의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적용(3개월 이내) ■ 세액공제 신청기간 •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과세대상 추가 및 세율 조정 • 부동산 주식* 포함 * 부동산자산 비율 50% (골프장·스키장업 등 80%) 이상 법인의 주식 •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신고 기준일 조정 및 미신고 가산세 신설 • 직전 연도 종료일 → 신고일 전날 • (좌 등) •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 : 주식의 액면가액 × 2% ■ 납세관리인 신고자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 (좌 등) • (좌 등) -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 ■ 경정청구 특례 신설 • 3개월 → 2년 ■ 신청기간 조정 • 3개월 → 2년	소득세법 (‘19.1.1., 중소기업 주식 세율 인상은 ‘20.1.1.)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와 (044-215-4422)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등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율 인하	■ 납부·환급·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 미납일수 1일당 : 0.03% ■ 체납 가산금 • 최초 체납시 : 3% • 매 1개월마다 : 1.2%	■ 납부·환급·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 미납일수 1일당 : 0.025% ■ 체납 가산금 • 최초 체납시 : 좌동(3%) • 매 1개월마다 : 0.7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국세기본법시행령 (‘19.2월(잠정)) 국세징수법 (‘19.1.1.(잠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1)
체납된 관세에 대한 증가산금을 인하	■ 관세체납 가산금율 • 최초 체납시 3% • 매 1개월마다 월 1.2%	■ 관세체납 증가산금을 인하 • (좌 동) • 매 1개월마다 월 0.7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관세분야 지정·등록·특허 등의 취소사유 완화	■ 보세구역, 지정공장, 국가관세정보망 운영인 등의 지정·등록·특허 등 취소사유 • 특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받은 자	■ 지정 등 취소사유 완화 • 결격사유 임원을 3개월 이내 변경한 법인은 지정 등 취소 제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불복절차 • 바로 행정소송 제기만 가능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불가	■ 심사·심판청구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 (납세자 선택 허용)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는 외에 재조사 결정을 내린 재결정에 대한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소송 제기기간) 바로 행정소송 제기 시 처분결과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시 결정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제기. 단, 기간 내 통지 미수령시 기간 경과 일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규정 신설	(신 설)	■ 관세법상 인·허가 사항(11개*)에 간주규정 신설 *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개항 아닌 지역 출입허가, 보수작업 승인, 선용품 하역허가 등 • 허가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미통지시 허가신청일로부터 10일 경과시 허가한 것으로 간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 관세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	■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 (관세특혜+비특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4)
통고처분 금액 납부 방법 개선	■ 현금으로만 납부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 납부일은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 •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관세청장이 지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수출용원재료의 관세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 신용담보업체만 관세등 일괄하여 납부 가능	■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는 관세등을 일괄하여 납부 가능 •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납부 유예가능 • 세관장은 유예기간 및 금액의 한도를 결정 • 단, 관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담보 제공 * 관세환급특례법·관세법 위반 및 조세채납 등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환급특례법 (‘19.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급금 총당 사유의 확대	■ 환급액을 총당할 수 있는 경우 • 체납된 관세등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 잠정가격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 (총당 신청 필요) • (추가)	■ 총당할 수 있는 경우 추가 • (좌 동) • (좌 동) • 과다 또는 잘못 환급된 금액 (총당 신청 필요)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환급특례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화	(신 설)	■ 관세사 연수교육제도 의무화 • (이수시간) 관세사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아야 함 • (면제사유) 휴업 등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방식) 위탁운영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사법 (‘19.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4)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화	(신 설)	■ 관세사 정보공개 규정 마련 • (공개주체) 관세사회 • (공개범위) 전문분야, 자격취득 사항 등 공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의무) 관세사는 필요한 정보를 관세사회에 제공해야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사법 (‘19.7.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4)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면세점 특허갱신 등 제도개선	■ 특허기간 만료 시 갱신 • 중소·중견: 1회 • 대기업: 갱신 불가 〈신 설〉 〈신 설〉	■ 갱신 “1회” 추가 허용 • 중소·중견: 1회 → 2회 가능 • 대기업: 갱신불가 → 1회 가능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 심의 ■ 지역별 특허 수 공표 • 매년 초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갱신허용, 제도운영위원회 '19.1.1. 특허 수 공표 '19.상반기)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 • 일반제품,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 2천억원이하: 매출액의 0.1% – 2천억원초과 1조원이하: 2억원+(2천억원 초과금액의 0.5%) – 1조원 초과: 42억원+ (1조원 초과금액의 1%)	■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 일반기업 제품 매출: (좌 동) •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 매출액의 0.0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상반기,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 대기업 신규특허 발급 요건 • (원칙) ①과 ② 동시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용자수 : 50% 이상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30만명 이상 • <추 가> ■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조건 •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시 지방(서울제외)에 진입 허용	■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 완화 • (원칙) ① 또는 ② 충족 ①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전년대비) : 2,000억원 이상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20만명 이상 • (예외) 면세점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 ■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조건 완화 • 모든 지역 상시 진입허용 - 단,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19.상반기) 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044-215-4413)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보세판매장 설치·지정 • 외국반출조건: 시내·출국장 면세점 • 외교관 물품: 외교관 면세점 〈신 설〉 ■ 판매 물품의 종류 및 수량 등 제한 • 판매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제한: 세관장 ■ 보세판매장 특허 제한 • 출국장·시내면세점: 대·중소·중견기업 〈신 설〉	■ 보세판매장 설치·지정 • (좌 동) • (좌 동)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 대상: 입국장 면세점 ■ 판매한도·판매 대상물품 제한 강화 • 판매 물품의 수량, 장치 장소 제한: 세관장 • 판매 물품의 종류 및 판매한도 제한: 기재부령으로 규정 ■ 보세판매장 특허 제한 • (좌 동) • 입국장 면세점 : 중소·중견기업에만 특허 부여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관세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와 (044-215-44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분 양도소득세 감면 등 • 자경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또는 초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단,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현물출자전 자경 기간과 합하여 8년 미만) 양도시 적용 배제 • 자경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작물재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농지·초지 제외)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적용기한: '18.12.31.	■ 일몰기한 연장 • 적용기한 연장: '21.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7)
공익법인 전용계좌 마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 【법을 제8828호 부칙 제13조】 '08.3.31. 이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08.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부과 의무 면제 • 〈 단서 신설 〉	■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전용계좌 신고기간 부여 • '16년, '17년 또는 '18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19.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면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공익법인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 공익법인등의 결산 서류 등 공시 대상 서류 • 재무상태표 • 운영상태표 •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 〈 추가 〉	■ 공시대상 서류 추가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 기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 • (추징금액) (공제금액 전액×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이자	■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추징 • 공제금액 전액 → 공제금액×자산 처분 비율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인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시 : 0.5% - 미전송시 : 1%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시 : 0.3% - 미전송시 :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부가가치세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영세율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21.12.31. 까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국가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영세율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21.12.31. 까지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도리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0.12.31.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공장·학교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1.12.31.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농협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 '18.12.31. 까지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21.12.31. 까지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심사제도 차등 운영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거래 가격 및 적정성* 여부만 심사 * 법 제30조①~③ 관련 사항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비특수관계자는 사전심사 결과 의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심사대상을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전반으로 확대 •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 * 법 제30조~35조 관련 사항 • (좌 동) • 특수관계 유무 관계없이 재심사 신청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044-215-445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수리선박에 대한 간이세율 폐지 등	■ 해외수리 선박 등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 * 관세, 부가세 등을 합산한 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통합세율 • 외국에서 선박·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한 물품 (과세가격은 수리를 위한 외화지급가격) ■ (신 설)	■ 해외수리 선박 등의 간이세율 적용 폐지 • (삭 제) ■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 운송수단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음 • 최초반입운송수단, 해외수리 운송수단, 수출·반송운송수단은 정식 수입·수출·반송신고 대상 • 수리운송수단의 과세가격은 수리 등에 소요된 가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관세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1) 산업관세과 (044-215-4434)
항공기(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면제 기한 확대	■ '19년부터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및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관세감면을 80% 적용	■ 적용기간 연장 및 감면을 확대 •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 (감면을 단계적 축소 시행 시기: '19년 → '22년) •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을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관세법 (‘19.5.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 관세 감면 한도 설정 • 부분 복귀: 2억원 • 완전 복귀: 4억원 ■ 감면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감면 한도 폐지 ■ 감면 대상 추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8년 혁신성장과일자리창출 방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도입	〈신설〉	■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 설비투자자산 전체 -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취득기간 : '18.7.1.~'19.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8년 세법개정안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단독가구 연령요건 • 30세 미만일 것 ■ 소득요건 <table><tr><th>구분</th><th>총소득기준금액</th></tr><tr><td>단독 가구</td><td>1,300만원 미만</td></tr><tr><td>홀벌이 가구</td><td>2,100만원 미만</td></tr><tr><td>맞벌이 가구</td><td>2,500만원 미만</td></tr></table>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 (삭 제) ■ 소득요건 완화 <table><tr><th>구분</th><th>총소득기준금액</th></tr><tr><td>단독 가구</td><td>2,000만원 미만</td></tr><tr><td>홀벌이 가구</td><td>3,000만원 미만</td></tr><tr><td>맞벌이 가구</td><td>3,600만원 미만</td></tr></table>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19.1.1.)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1,3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당 1.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table><tr><th>구분</th><th>최대지급액</th></tr><tr><td>단독 가구</td><td>85만원</td></tr><tr><td>홀벌이 가구</td><td>200만원</td></tr><tr><td>맞벌이 가구</td><td>250만원</td></tr></table>	구분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85만원	홀벌이 가구	20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	■ 재산요건 완화 • 가구당 2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인상 <table><tr><th>구분</th><th>최대지급액</th></tr><tr><td>단독 가구</td><td>150만원</td></tr><tr><td>홀벌이 가구</td><td>260만원</td></tr><tr><td>맞벌이 가구</td><td>300만원</td></tr></table>	구분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구분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85만원																		
홀벌이 가구	200만원																		
맞벌이 가구	250만원																		
구분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150만원																		
홀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 지급방식 • 年 1회 지급	■ 지급방식 전환 • 年 2회 지급(근로소득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지급액 • 자녀 1인당 30~50만원 ■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신청 배제	■ 지급액 인상 • 자녀 1인당 50~70만원 ■ 생계급여 수급자 자녀장려금 신청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19.1.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0만원	■ 공제금액 인상 • 10만원 → 15만원	소득세법 (‘19.1.1.)
			기획재정부 소득세과 (044-215-4212)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 및 자산심사 기준 도입	■ 대출신청자가 심사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	■ 정부시스템을 통해 해당기관과 연계 • 심사서류를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대신 전산정보로 대체하여 심사	주택도시기금법 및 시행령 (‘19.6월)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 자산심사기준 없음	■ 부부합산 보유자산(순자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예·적금, 부채 등)	주택도시기금법 및 시행령 (‘19.6월)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개선	■ 만 19세 이상~만29세 이하	■ 가입가능 연령을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19.1월)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세대주 외에 무주택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허용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시행	■ 신설	■ 사업자가 유흥·단란주점(간이과세자 제외)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징수하여 납부 ☞ (참고)국세청 홈페이지>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19. 1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22)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신설	■ ’18년 귀속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19.5.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세법 (’19. 5월)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62)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 확대	■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무상공급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 ■ 국내거래일자 확인서류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공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송장 등) ☞ (참고)관세청 홈페이지>뉴스/소식 행정규칙행정예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9.1월)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5)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 신규	■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개인실손으로 전환 가능 ■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중복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실손을 중지하고 추후 퇴직시 개인실손 재개 가능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18.12월)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개인신용평가, 등급제 에서 점수제로 전환	■ 개인신용도에 대한 평가등급 (1~10 등급) 중심으로 활용	■ 개인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점수제 (1~1,000점)로 전환 • '19년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시범 시행 • '20년 전 금융권 시행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	'19.1월 시범시행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0)
금융 부문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 금융서비스 제공시, 각종 금융법령상 규제를 모두 준수 필요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인허가 등 각종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함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및 핀테크 신규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19.4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1)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 은행 투자 확대	■ 의결권 있는 주식을 4%까지만 보유 가능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34%까지 보유 가능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ICT기업의 인터넷전문 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19.1월)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3)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 * 연매출 3억원 이하 : 0.8%, 연매출 3~5억원 : 1.3%	■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 * 연매출 5~10억원 : 1.4%, 연매출 10~30억원 : 1.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9. 1.31.)
		☞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 현재 연매출 30~500억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를 약 2.18%	■ 수수료율 역진성 시정을 위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를 인하 유도 * 연매출 100억원 이하 : 약 0.3%p 인하 (평균 2.2% → 1.9%) 연매출 100~500억원 : 약 0.22%p 인하 (평균 2.17% → 평균 1.95%)	’19년중
		☞ (참고) 금융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18년 적격비용 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개편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83)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 신규	■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영위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年 2%대 초반) 1.8조원 및 카드매출 연계대출을 0.2조원 공급	’19.1분기 시행 * 일부 시행 중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5)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 보증한도 3.15조원	■ 보증한도 5.15조원으로 확대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19.1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재직기간 6개월 이상 등 요구 (은행 사잇돌, 근로소득자 기준)	■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소득·자격요건 완화 (은행 사잇돌, 근로소득자 기준) ※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연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기간 5개월 이상)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19.1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 카드는 중금리대출 미출시	■ 카드를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에 맞는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최종구 금융위원장,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19.2분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확대	■ 개인신용정보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허용	■ 금융분야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제한없이 확대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위원회소식>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입법예고	전자금융 감독규정 ('19.1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3)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확대		■ 낮은 지원단가	■ 교육급여 지원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금액 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9.3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4)
교과서 자유 발행제 도입	심사 기준 간소화	■ 공통기준, 교과별 기준, 기준쪽수 제시	■ 공통기준만 제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9.4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044-203-7026)
	절차 간소화	■ 9개월	■ 3~4개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9.4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044-203-7026)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난임부부 사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확대	지원 소득기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및 모든 수급자	모자보건법 (‘15.12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3396)
	지원 범위· 횟수 확대	■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1회당 50만원 범위, 최대 4회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1회당 50만원 범위,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모자보건법 (‘15.12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3396)
	지원 항목 확대	■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보관	■ 비급여 지원 항목 추가 반영 :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보관 포함	모자보건법 (‘15.12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5,339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영유아보육법 (‘19.9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6)
전체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		■ 어린이집 자율 신청에 따른 평가 인증	■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실시 (평가인증제→평가의무제) ■ 어린이집 평가비용 전액 국가부담 ■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 어린이집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등급 조정	(‘19.6.12.)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84)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육료 (0~2세) 6.3%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 확대	■ 평가인증 어린이집 (39천개소), 미인증 어린이집 (8천개소) * '18.10월 기준	■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의무제로 전환	영유아보육법 ('19.6월 예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보육료 (0~2세)단가 250~878천원	■ 평가비용 전액 국가부담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0)
			■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 위반을 한 어린이집은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	
			■ 보육료 (0~2세) 단가 : 258~939천원 • 전년대비 6.3% 인상 * 부모보육료 2.6%, 기본보육료 21.8%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지원		-	■ 놀이체험실 리모델링 및 설치비 지원 (60개소, 개소 당 50백만원 지원)	('19.1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7)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 영유아 중심 및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 서비스	■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교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 2018년 다함께 돌봄센터 17개소 신설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전국 150개소 센터 신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61)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	■ 만 6세 미만 보편지급 (1월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논의중)
			■ 지급대상 연령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 (9월 시행)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	■ 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1,200개소)	- ('18.12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2,3439,343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월 상한액 200만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인상 ☞ (참고)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 (예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19.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로 지급 ☞ (참고)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19.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 월 상한 160만원 (90일간 480만원)	■ 월 상한 180만원 (90일간 540만원) ☞ (참고)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지원(예정)	고용노동부 고시 (‘19.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제도 운영	■ 제도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 (참고)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 분야별 정책>일자리 창출>고용안정장려금(총괄) (예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19.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 중소기업 지원금 월 20만원	■ 중소기업 지원금 월 30만원 ☞ (참고)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고시 (‘19.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인수인계기간 2주 인정, 대규모 기업 지원금 월 30만원, 중소기업 지원금 월 60만원	■ 인수인계기간 2개월 인정, 인수인계기간 동안 중소기업 지원금 월 120만원 ☞(참고)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 대상자별 정책>여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고시 (‘19.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	■ 지역 양성평등센터 지정 운영을 통한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 (‘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02-2100-6176)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출범운영	-	■ 성평등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기획단 출범	- (‘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02-2100-615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18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 ■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참고) 신청 및 문의 •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상담 •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 (‘19.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02-2100-6342)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내 한부모가 일·학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시 시설에 아이돌보미 무상 파견 지원 ☞(참고)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문의 1577-2514	- (‘19.1.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2)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 중위 120% 이하 ■ 연 600시간 ■ 아이돌보미 2.3만명 ■ 정부지원가구 4.6만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정부지원 • 정부지원비율 각 5%p 상향 ■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 (시간제) ■ 아이돌보미 3만명 ■ 정부지원가구 9만가구 ☞(참고)여성가족부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아이돌봄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용부담은 줄이고	- (‘19.1.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02-2100-636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113개소 운영	■ 국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218개소로 확대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31)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입소 후 퇴소하는 피해자에게 대상자를 심사·결정하여 자립지원금 지원 (1인당 500만원 내외)	가정폭력방지법 (‘19.1월)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16명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 확대 (16명 → 26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4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3)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집중 프로그램 운영	-	■ 사건발생기관 대상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 신고센터 접수 사건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 컨설팅, 실태조사, 조직구성원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19년)
			여성가족부 점검총괄팀 (02-2100-6165)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를 신설해 이주여성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	가정폭력방지법 (‘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8)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확충	-	■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형, 통합형) 간호인력 확충 ■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 (‘19.4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8,6399)
위기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CYS-Net 226개 ■ 청소년동반자 1,261명 ■ 청소년쉼터 130개소 ■ 청소년자립지원관 4개소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0개소	■ CYS-Net 운영 232개 지역으로 확대 ■ 청소년동반자 1,316명으로 확대 ■ 청소년쉼터 138개소로 확대 ■ 청소년자립지원관 6개소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0개소에 인건비 등 예산 신규지원 ☎(참고)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전화 ☎(지역번호)1388	- (‘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627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보건위생물품 현물지원 ■ 방문신청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복지로 온라인 및 모바일 어플을 통해 지원 신청 가능	- (‘19.1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6242)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설 확대	■ 꿈드림센터 206개소 ■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센터 8개소	■ 꿈드림센터 213개소로 확대 ■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9개소로 확대 ※ (참고) 지원문의 : 꿈드림 홈페이지 (www.kdream.or.kr), 청소년전화(1388)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19년)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60개소	■ 과학기술기반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80개소로 확대	- (‘19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15개소지원	■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43개소 지원	경력단절여성법 (‘19.1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3)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 상시근로자수 1인 기업 참여금지 ■ 상시근로자수 5인 기업은 센터장 확인서 첨부해야 참가가능	■ 해당 지침내용 삭제 ■ 특정 업종(지식재산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한해, 해당 업종의 증명서류로 참여 가능	새일센터 사업지침 (‘19.1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4)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	■ 지원제도 없음	■ (신규사업) 3년 이상 선수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선수에게 매월 장학금 지급	국민체육진흥법 (‘19.3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4)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인상 등 차우개선	어린이집 보조교사 충원 ■ (18년)2.5만명	■ (19년) 1.5만명	(‘19.1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확대 ■ 사회복지직 233명	■ 조리원 35명 신규 추가 ☞(참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56) (‘19.1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7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미만 외래진료비 21~42%	■ 1세 미만 외래진료비 5~20%로 경감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 예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19.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 2732)
	■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 지원금액 :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 사용기간 : 신청일부터 분만예정 (출산)일 후 60일 • 사용대상 : 임신이 확인된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사용기간 : ~ 출산(생) 후 1년까지 확대 • 사용대상 :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포함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 예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9.1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는 필수 급여, 그 외는 비급여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등까지 건강 보험 적용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19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두부· 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는 필수 급여, 그 외는 비급여	■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해당 질환자 및 의심자등까지 건강 보험 적용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등 (‘19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	-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8개 지자체, 시범사업 실시)	(‘19.6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044-202-3692)
치매안심병원 지정	-		■ 치매환자의 전문전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동 확대 및 치매안심병원 단계적 지정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18.12.13.)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 3537,35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80% 이하		■ (‘19.1.1.이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19.1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 3224, 3228)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부분적·분절적 만성질환관리 (담당 기관, 제공지역 및 내용 상이)	■ 포괄적·통합적 만성질환관리 •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케어플랜, 질병 및 생활습관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기존 분절적으로 수행된 만성질환관리 사업 단계적 통합 추진	보건의료기본법 (‘17.8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 2815, 2813)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 59개국 지정	■ 62개국으로 변경* • 콜레라 : 말라위, 잠비아 등 18개국 • SI : 중국 9개 성·시 • 메르스 :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 폴리오 :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9개국 • 황열 : 아프리카, 중남미 42개국 (동일) • 페스트 : 마다가스카르 (동일) ※ 감염병별 중복지국이 포함 ※ (참고)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해외질병>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검역법 (‘10.12월)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7140)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 지역 신규 선정	■ 1개국 지정	■ 6개국으로 변경* • (종전 지정) 카타르 • (신규 선정) 바레인, 요르단, 이란, 레바논, 예멘 ※ 감염병별 중복지국이 포함 ※ (참고)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해외질병>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검역법 시행규칙 (‘16.8월)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7140)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장애 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장애 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장애등급을 1~6단계로 구분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 장애등급(1~6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구분(1~3급/4~6급) ■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를 통한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복지법 (‘19.7월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44-202-3289) 장애인활동지원법 (‘19.7월 ~)	
		장애 등급제 폐지 및 발달 장애인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5)	■ 신규 실시 • (주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1,500명 대상으로 월 88시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방과후돌봄) 청소년 발달장애인 4,000명 대상으로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이용권 (바우처) 제공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19.3월, ‘19.7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발달 장애인 거점병원 · 행동 발달증진 센터 권역별 확대	■ 2곳 운영	■ 8곳 운영 • ‘19년에 6곳 신규 지정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대부분 민간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 사·도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서 • 지자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 •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재가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컨설팅, 시설 안전점검 등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47)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보장 수준 강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19.1.1.)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의자·기술 향상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 운영	■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지원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수행 1.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 지급 2. 경계선지능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3.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복지법 제38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4, 382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미적용	■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고시 (‘19.1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5)
자활장려금 지급		■ 생계급여 수급자가 탈수급·탈빈곤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 시 발생하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인정액에 100% 반영하여 생계급여 차감	■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19년 자활참여 생계수급자 약 19천명 대상, 최대 38.5만원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1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3,3081)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	■ 지역자활센터에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자활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1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4, 3080)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 카페도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금연구역	■ 흡연 가능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중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18.12.3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
	모든 흡연카페 금연구역	■ (‘18.7.1.이전) 흡연가능 ■ (‘18.7.1.이후)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흡연가능	■ (‘19.1.1.이후)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영업소는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18.7월/ ‘19.1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범 운영		-	■ (‘19.3.이후) 청년층의 건강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19.1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3228)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일반건강 검진 대상확대	■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19.1월)
		■ (의료급여수급권자)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19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8)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0~30대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	■ 40세·50세·60세·70세	■ 20세·30세·40세·50세·60세·70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19.1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8)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		■ 전체 수급자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 지급	■ 저소득 어르신 (소득하위 20% 이하)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원으로 확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 배포 예정(12월 말)	기초연금법, 동법 시행령 (‘19.4월 (잠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2)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		■ 51만개	■ 노인일자리 61만개로 확대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 (60시간, 65만원)	(‘19.1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6)
희귀 질환자 지원 확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652개 질환	■ 927개 질환으로 확대 ☞(참고)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새소식> 의료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희귀질환 지원확대 추진	희귀질환관리법 (‘16.12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043-719-8775)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 확대	■ 51개 극희귀질환	■ 89개 질환으로 확대 ☞(참고)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새소식> 의료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희귀질환 지원확대 추진	희귀질환관리법 (‘16.12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043-719-8775)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지정· 운영	■ 4개 기관	■ 공모를 통해 1개 중앙센터, 10개 지역 센터 선정 및 운영 ☞(참고)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새소식> 의료지원의 사각지대였던 희귀질환 지원확대 추진	희귀질환관리법 (‘16.12월)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 (043-719-8775)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연·반기·분기 등)로 산정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미산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통화로 지급) 중, •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상여금), 7%(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25%,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참고) 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뉴스·소식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최저임금법 (`19.1.1.)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13만원(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15(13)만원 (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5인 미만) 월 15만원 (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 (참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 (`19.1월)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 (044-202-778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인상 및 간접노동비 신설	■ 인건비 • (우선지원·중견) 월 60만원 • (대규모) 월30만원 지원	■ (인건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60만원 지원 ■ (신설)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 한해 간접노동비 월10만원 지원 ☞ (참고) 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 (일자리창출) 고용창출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시 (`19.1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67)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간선택제 지원요건 완화	■ 지원요건 • (우선지원-중견) 최저임금의 110%이상 임금지급 • (대규모) 최저임금의 120% 이상 임금지급 • (승인필요)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요건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임금 지급 • (승인절차 폐지) 사업계획서만 제출 ☞ (참고)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정책자료(일자리창출)> 고용창출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시 (`19.1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67)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지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참고)'19.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 (youthcenter.go.kr) 통해 접수 시작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침 (`19.3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93)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레미콘 기사에 한하여 산재보험 적용 ■ 1인 자영업자: 8개 업종 한정 산재보험 가입 허용	■ 「건설기계관리법」 상 27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특례적용 ■ 기존 8개 업종* 외에 종사규모 및 가입 수요가 높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1인 자영업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허용 업종에 추가 ☞ (참고)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1.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2)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항공장학재단 ("하늘드림재단") 설립	■ 높은 훈련비용으로 조종사 꿈나무들에게 높은 진입장벽	■ 先선발 後교육으로 선발된 훈련생들 중 중위소득 기준 150% 이내를 대상으로 훈련비 대출을 지원	비영리법인 설립 및 본적운영 (‘19.1.2.)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8)
도시형 교통모델 추진	■ 없음	■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공공형 버스, 택시 제도 시행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규칙 (현재 국회 예산심의중)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30)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 영양관리 지원	■ 지원 없음	■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이 급식소 순회 방문지도 등을 통해 급식관리 지원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임위 계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75)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또는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 적용 가능	■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 불검출 수준(0.01 mg/kg)의 기준 적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18.2.22.)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54)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강화	■ 수입검사 부적합 된 업소만 관리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량 많은 업소 현지실사 ■ 수입검사 강화	■ 위해우려 높은 품목 집중 관리로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확대 • 중국산 김치 및 베트남산 과채·채소류 음료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모든 국가 현지실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6.2.4.)
		■ 수입중단(의도적인 현지실사 기피, 방해 업소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10)
위해식품판매차단 종합관리시스템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없음	■ 현장기술지원, 원격지원 등 사후관리 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04)
공동사용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 의무적용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제품에 대한 점검 미실시	■ 의무적용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 및 위생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15)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일반귀화 추천인의 자격요건 완화	■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등만 추천서(1명)를 작성 가능	■ 귀화신청자의 직장 동료·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추천서 (2명)를 작성 가능	국적법 시행규칙 (‘18. 12월)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귀화 신청 관련 생계유지능력 평가 시 실거래가 등도 인정	■ 부동산 자산 평가 시 공시지가만 인정	■ 공시지가 외에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중은행 공표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	국적법 시행규칙 (‘18. 12월)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일반귀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시행	■ 외국인이 소지한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일반귀화 신청 가능	■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만 일반귀화 신청 가능	국적법 (‘18. 12월)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 시행	■ 없음	■ 귀화 및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 증서를 수여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참고)하이코리아 홈페이지>정보마당> 국적/귀화안내>국적증서수여식	국적법 (‘18. 12월)
			법무부 국적과 (02-2110-4133)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맹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맹견 입마개 착용	■ 맹견 출입불가 장소 신설 ■ 맹견소유자 정기 교육 의무 신설	동물보호법 (‘19. 3월)
	■ 맹견·일반견 동일 처벌	■ 맹견 관련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 반려견의 안전의무위반으로 사람이 사망 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동물보호법상 처벌규정 신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동물보호법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4)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 의무화	■ 자율적 운영	■ 노선버스,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인식할수 있도록 안내판등 설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9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7)
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및 이용 제한	■ 규제없음	■ 목적의 임의조작 및 필요한 경우 이외 영상기록 이용·제공이 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9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7)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법촬영 점검· 단속 체계 강화	■ 규제없음	■ 전국 260개 터미널 대상 몰래카메라 탐지장비 1대씩 지원 ■ 불법촬영 점검·단속 체계 강화, 관리자 책임강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관련법규 없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9)
어린이 동학차량 유상운송 허가차량 차령적용	■ 차령 적용 유예 (‘15.7.20. ~ ‘18.12.31.) * ‘15.7.20. 이전에는 차령 9년 적용	■ 최장 11년의 차령 적용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법령 검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칙(2015.7.20.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1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상향	■ 불법어업자 징역형 시 • 100~200만원 포상 ■ 불법어업자 벌금형 시 • 20~100만원 포상 ■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시 • 10만원	■ 불법어업자 징역형 시 • 200~300만원 포상 ■ 불법어업자 벌금형 시 • 100~200만원 포상 ■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시 • 경고 50, 정지 100, 취소 200만원 ※ 수산자원 남획 등 중대 위반사항 위반 : 포상확정금액 2배 지급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19. 1월)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044-200-5563)
선박평형수 배출금지 예외조항 추가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에 영구적인 선박 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 공해상에 주입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공해상에서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 모든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한 장소와 같은 해역에서만 배출하는 경우의 해당 선박. 다만, 다른 지역에서 주입되고 관리 되지 않은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 국내 관할수역에서만 항해하는 외국선박	선박평형수 관리법 (‘19. 7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2-200-5882)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검사를 받도록 함	■ 신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	선박평형수 관리법 (‘18.12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2-200-5882)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해소 후 바로 등록 가능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선박평형수관리법 (‘18. 12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2-200-588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기간 확대	■ 3년 이내	■ 5년 이내로 확대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정책바다> 법령정보>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19. 6.1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1)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상특보와 지진관측 증명의 인터넷 발급	■ 기상청 방문 혹은 전화 신청· 발급	■ 인터넷에서 신청 즉시발급 ※(참고)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민원신청	기상법 (’19. 3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2-2181-0898)
호우위험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실황정보 실시간 제공	■ 모바일 앱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에 호우, 눈, 낙뢰 등 위험기상 사전 알림 기능 추가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02-2181-0863)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군 범죄 피해자 및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본격 지원	■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 지원	■ 군인 간 발생한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할 근거 마련 ■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하여 법률조력 받을 수 있게 함 ☞(참고)국방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 군사법개혁,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	군사법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9.상반기)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02-748-6812)
「헌병, 정훈, 시설, 화학, 인사행정」 병과 명칭 개정	■ 헌병, 정훈(공동) ■ 시설(해·공군) ■ 화학, 인사행정(육군)	■ 군사경찰, 공보정훈(공동) ■ 공병(해·공군) ■ 화생방, 인사(육군)	군인사법시행령 (‘19.1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유급지원병 충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유급지원병 유형Ⅰ의 경우 일반 하사와 보수체계 상이 ■ 복무기간 : 6~18개월	■ 유급지원병 유형Ⅰ 기준 • 182만원 → 245만원(63만원 증액) ■ 복무기간 : 6~48개월	공무원 수당규정 (‘19.1월) 병역법 (‘19.7월)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5)
군인 해외동반휴직 허용	■ 군인은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 시 휴직이 불가능	■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 시 해외동반휴직 허용	군인사법 (‘19.1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1)
평상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 가능	■ 특별진급 대상 • 전사 및 순직자, 전투유공자 중 장교	■ 특별진급 대상 (확대) •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	군인사법 (‘19.전반기)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범위」 확대 적용	■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범위 • 출산휴가, 육아휴직	■ 군인의 업무대행 지정범위 •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유산·사산휴가 (확대)	군인사법 시행령 (‘19.1월)
			국방부 국방여성가족정책과 (02-748-5172)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서관 진급선발 제외대상 개정 적용	■ 진급선발 제외 대상 • 군사법원에기소된 사람 • 행방불명이 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군무에서 이탈중인 사람 • 전상·공상외의 사유로 입원중인 사람	■ 부서관 진급선발 제외 대상 조항삭제, 장교와 동일하게 진급선발 대상권으로 개정 ■ 진급낙천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등의 법적근거를 별도로 마련	군인사법 시행규칙 (‘19.1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9)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급식혁신 사업 확대	■ 육·공군 전채와 해군·해병 일부 부대 급식혁신 사업 운영	■ 전군·전부대 대상 급식혁신 사업 추진	’17년 4분기 (시범운영)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3)
파복류 보급 개선	■ 춘추운동복 1벌 지급 ■ 기능성런닝, 드로어즈팬티 각 6매 지급	■ 춘추운동복 2벌 지급 ■ 기능성런닝, 드로어즈팬티 각 8매 지급 ■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 대상 패딩형 동계점퍼 지급	(‘19년)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8)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 지방자치단체 명패 보급	■ 국가 주도 국가유공자 명패 보급 ※(참고)국가보훈처홈페이지>홍보마당> 나라사랑신문 9월 6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주기 추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 1월)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90)
‘수유리 애국선열묘역’ 국가에서 직접 관리	■ 후손 및 기념사업회 관리	■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상시점검, 별초, 묘역훼손 복구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9년 중)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85)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념일 변경 등	■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 4. 13 ■ 학생독립운동기념일주관부처 : 교육부 ■ (신규)	■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 4. 11 ■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주관부처 : 교육부·국가보훈처 ■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3. 8.)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18. 11월)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79)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44-202-5531,4)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 우편 또는 대면교부, 전자우편 송달	■ 모바일통지서 수신 신청(동의)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병역법 제6조,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 ('19.1월)
			병무청 자원관리과 (042-481-2915)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령 등의 제한 없음	■ '대학원 진학예정' 사유는 28세 이상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 '졸업예정' 사유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영일자 연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19.1.1.)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병역의무자 여비 중 숙박비 지원 확대	■ 4만원 지원	■ 5만원 지원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기준 ('19.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042-481-2967)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 재산액 : 6,460만원 ■ 월수입액 • 4인기준 1,807,681원	■ 재산액 기준 : 6,860만원 이하 ■ 월수입액 기준 • 4인기준 1,845,414원 이하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기준 (‘19.1.1.)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7)
전 지방병무청 홍채인식기 도입, 원거리 이동 불편 해소	■ 중앙신체검사소 방문 홍채등록	■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등록	병역판정검사 규정 (‘19.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1)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체검사 장소 선택 확대	■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	■ (종전)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병무청 ■ (추가) 관할조정 (최초 검사를 받은) 병무청)	병역처분변경 규정 (‘19.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2)
사회복무요원 민생안전 분야 지원 등 배정인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 배정	■ ‘19년 사회복무요원 국민안전, 사회복지분 야 등 추가배정 확대 (5,571명)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4)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10억	■ 선정과제 당 지원금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동 운영규정 (‘19.1월)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 유료방송 서비스 정보 부족	■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서비스별·사업자별 평가 결과 제공 ☞(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MSIT PR> 보도자료>2018년 유료방송서비스 시험평가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2)
케이블 TV, 법인별 허가신청	■ 방송구역별허가 신청 (92개 사업자)	■ 법인별(25개* 사업자) 허가 신청 * '18.11.20. 기준 ☞(참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홈페이지> MSIT PR>보도자료> 유료방송분야 규제개혁 본격 추진	방송법 시행령 (‘19.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2-2110-1885)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자 휴가비 지원 확대	■ 2만 명 지원	■ 8만 명으로 지원 규모 확대 ☞(참고)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http://vacation.visitkorea.or.kr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19)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보은, 고성, 영월) 운영 개시	■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부재	■ 주요 지역별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 검증을 위한 시험비행과 테스트가 가능 ☞(참고)기획재정부 홈페이지>뉴스> 보도자료>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 확정	항공사업법 제69조의2 (‘19.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26)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드론 분류체계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드론 기체의 무게 기준으로 안전관리	■ 드론의 최대이륙중량, 속도, 장착 장비 등에 따라 드론 분류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 제도* 적용 *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19.上)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315)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 출국장 면세점만 허용	■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참고)기획재정부홈페이지>뉴스> 보도자료> 입국장면세점 도입방안 확정	관세법 (‘19.1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6)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 노트북·액체류 검색시 가방을 열어야만 검색 가능 ■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 확인 필요	■ 제주공항 CT X-ray 등 첨단장비 도입 ■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 앞 생체인식 시범 운영 (‘19.10) * 탑승구 진입 시 탑승권 확인을 승객 생체정보 (정맥, 지문) 인식으로 대체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및 생체정보로 신원확인	항공보안법 (‘19.下)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3)
하자있는 신차 교환·환불제도 시행	■ 없음	■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 교환·환불요청 가능	자동차 관리법 (‘19.1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8)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도입	-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가능 ☞ (참고)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보도자료> 중소기업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도입 예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18.12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042-481-6867)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산설	■ 신규	■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특화자금 산설 ☞ (참고)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9년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9.1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
소공인특화지원 지원업종 확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9개 제조업 업종(중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5개 전체제조업으로 확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검색> 시행령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10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042-481-8923)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산설	■ 신규	■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신규 지원 ☞ (참고)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주관기관 모집	‘19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주관기관 모집 공고 (‘19.2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042-481-8923)

문화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규정 마련	■ 최초의 허가규정 외 변경 신고 규정 없음	■ 문화재매매업자의 상호 변경 및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변경되는 지자체에 변경신고 의무 규정 ■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참고)문화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법령정보>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18.12.13.)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3)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실시	■ 일정 기간 야간 특별관람 실시 (’18년 70일)	■ 연중 야간 상시관람 실시 • 09시부터 야간 21시까지 상시관람 (20시 입장마감)/월요일 휴궁	(’19.1.1.)
			창경궁관리소 (02-762-9515)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도입	■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출원인이 반환청구가 있어야 반환	■ 출원인이 사전에 반환받을 계좌를 특허청에 등록한 경우, 반환금액이 발생할 때마다 출원인의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직권으로 입금하여 반환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소식알림> 보도자료>특허청,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제 시행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 (’19. 1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상청 날씨 홈페이지 개선	■ 날씨누리 정보 찾기 어려움 ■ 모바일웹 개선 요구	■ 날씨누리 콘텐츠 정비 및 기능 개선 ■ 모바일웹 전면 개편 ☞(참고) 기상청 날씨누리, 모바일웹	- (`19.1월)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02-2181-0410)
기상청 기상현상증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	■ 오프/온라인 발급하여 종이문서로 출력	■ 전자증명서(PDF) 제공 ☞(참고) 기상청 전자민원 홈페이지> 민원신청	기상법 (`19.3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2-2181-0898)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재정, 90일 이내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60일 이내 조정 ☞(참고) 방통위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2017.9.20.)	전기통신사업법 (`19.6월)
			방통위 이용자정책 총괄과 (02-2110-1475)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도입	■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 조치를 한 사업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3배 이내의 배상 책임 부과 ☞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19. 9월)
			공정위 경쟁정책과 (044-200-4304)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없음	■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보 ■ 다른 유통채널에 대한 정보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19. 1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33)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가맹계약서에 기재	■ 본사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주가 피해 입을 경우, 배상 청구의 근거 불명확	■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비윤리적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 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본부 측이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보도>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19.1월)
			공정위 가맹거래과 (044-200-4938)
시·도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분쟁조정 신청가능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보도>대리점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19. 1월)
			공정위 가맹거래과 (044-200-4938) 대리점거래과 (044-200-4960)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도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분담	■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전담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관할지역 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수행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보도)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19.1월)
			공정위 가맹거래과 (044-200-4938)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기술유용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및 기술유용·유출행위 고발조치 시 벌점 3점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및 기술유용· 유출행위 고발조치 시 벌점 5.1점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 공정위소식)보도)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8. 10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5)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 피해액까지만 손해 배상 책임	■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3배까지 확대	대규모 유통업법 (‘19. 4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950)
복합쇼핑몰·아울렛 등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 별도 규제 없음	■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 (예: 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복합쇼핑몰·아울렛 등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 ■ 법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부과	대규모 유통업법 (‘19. 4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950)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 추가	■ 공정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만 제재	■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이유로한 보복조치도 제재	대규모 유통업법 (‘19. 4월)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4950)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없음	■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선대리인 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18.11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신규	■ 귀농귀촌 청년가구를 위한 공동 보육시설 및 여가·문화·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 조성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농촌분야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044-201-155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월 최대 40,950원	■ 월 최대 43,650원 확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농촌분야> 농업인복지증진	보건복지부 고시 (‘18.12월)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 방문, 온라인 신청 가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 농지은행사업	- (‘19.1월) 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33)
농업정책보험 지원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57개	■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추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 농업분야>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업 재해보험법 (‘19.2월) (044-201-1728)
	■ (농업인안전보험) 모든 농가 보험료 50% 국고 지원	■ 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 보험료 국고지원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책홍보> 분야별정책> 농업분야>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9.1월) (044-201-179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 신규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농어업 재해대책법 (‘19.3월)
			(044-201-179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3km 예방적 살처분	■ AI 발생농장 반경 500m까지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 훈령 예규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18.11월)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5)
가정용 계란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신규	■ 가정용 계란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를 통한 선별 포장 유통 의무화 신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9. 4월)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11)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9)
식품명인 기능전수 지원	■ 신규	■ 연간 3억원 / 기능전수 활동 장려금 지원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19. 1월)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4)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농업용 난방유 중 부생연료유는 1호(등유)로 한정 ■ 동력예취기는 연간 52.5리터 공급	■ 농업용 난방유 중 부생연료유 2호(중유) 추가 공급 * 단,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시 농업용 면세유로 공급 ■ 동력예취기의 연간 공급량을 75.0리터로 확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19.1.1.)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840)
식품 기술거래· 이전 사업 지원	■ 신규	■ 기술거래·이전 과정 지원, 식품 기술거래·이전 정보망 구축, 기술 이전 후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중소 식품기업 기술중개수수료 지원	- (‘19.2월)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사업시행지침서> 기술거래·이전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4)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 개발사업 도입	■ 신규	■ 고령친화 식품, 채식주의자를 위한 비육류자원 기반 단백질 공급식품 등 미래형 식품 개발 지원 ■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	- (‘19.2월)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사업안내서비스>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044-201-2121)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 신규	■ 농촌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하는 청년 (귀촌자)에게 창업 공간 제공	- (‘19. 1월)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알림마당>보도자료>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8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자격시험 없음	■ 제1차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실시	'20년 사업 예산 확보 ('20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3)
어업인안전보험 산재형 출시 및 국고보조율 확대	■ 신설 ■ 국고보조율 50%	■ 산재형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고보조 율 상향지원('18)50%→('19년)70%	어업인안전보험 시행지침 ('19.1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안전설비 할인제도 도입	■ 신설	■ 안전설비 설치어선 각 상품별 최대 합산 5%할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시행지침 ('19.1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양식어업재해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도입	■ 신설	■ 무사고 할인 제도 도입 • 전년도 무사고자, 보험료 5% 할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9.4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산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 60만원 지원	■ 65만원 지원으로 확대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수산직불금 지원단가 5만원 인상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새 이름, ‘해양보호생물’	■ 보호대상해양생물	■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법 (‘19.6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 모든 수산물 자율적 이력등록관리	■ 굴비, 생굴 품목 이력제 의무적 이력등록관리 시범사업 추진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 보도자료>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첫걸음	언론브리핑 (‘18.10.24) (‘18.12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50)
도서관 여객선 차량운임지원	■ 도서관 명의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차량운임의 20% 지원	■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지원 확대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19.1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3)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 신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관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 지원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바다) 보도자료>섬마을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국가가 지원한다	해운법 (‘19.6.12.)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044-200-573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 시행	■ 개별법에 따른 선점식 해양이용	■ 우리나라 쏘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해양이용·개발 계획 등 수립시 입지적정성 등에 대해 해수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수부 법률 5건 국회 통과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19.4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1, 5312)
정부·민간이 함께 노후 원양어선 신조대체 추진	■ 용자 (신조 대체 70%, 중고선 대체 80%)	■ 펀드조성 (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자부담 10~20%)	(‘19.1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7)
감척대상을 어선어업에서 어구어업 (정치성구획어업) 까지 확대	■ 연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선어업 32개 업종)	■ (현행) 32개 어선어업 → (확대) 32개 어선어업 + 9개 어구 어업 (정치성구획어업 포함) * (9종) 건간망, 건망, 들망, 선인망, 승망류, 안강망, 장망류, 지인망, 해선망어업	「연근해어업구조 개선법 시행령」 개정 (‘18. 3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6)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확대	■ 79개 품목 지원	■ 79개 품목 + 「산림자원법」에 따른 임산물 (목재 및 토석 제외) 지원 ☞(참고) 산림청 공식 블로그> 특독! 인포/카드뉴스> 규제혁신 미래 신산업 규제 혁파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19.1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4)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완화	■ 특별관리임산물 포장규격 제한	■ 품질검사 합격증 부착이 가능한 상자·용기에 포장할 수 있도록 완화 ※(참고) 산림청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진흥법 시행령 (’19.1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독과 (042-481-4208)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 산지전용허가 • 지목변경가능(임야→잡종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	■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지목변경 금지(임야→잡종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부과 ■ 평균경사도 기준(15도 이하)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18.12.4.)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2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고>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1월)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6)
해외산림인턴 참여자격 완화	■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 업체 2년 이상 종사자 ■ 6개월 근무 기본(4~8개월) 탄력적 운용	■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자 ■ 6개월 근무 기본(4~10개월) 탄력적 운용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2019년 해외산림인턴 모집공고	’19년 해외산림인턴 시행계획 (’18.12월)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042-481-8863)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기상 맞춤형서비스 '해양기상정보포털' Sea for You' 제공 ※ 웹: marine.kma.go.kr	■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 • 항만기상정보 서비스 • 통합 해양기상정보 부재	■ 해양기상 맞춤형 서비스 • 항로, 항만, 해난, 레저, 어업, 안보 6개 분야별 상세 해양기상정보 서비스	-
			기상청 해양기상과 (02-2181-0743)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 해양심층수 처리수 제조업· 수입업 관련 규정부재	■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수입업 신설, 제조업 시설기준, 처리수 수질기준, 수입업 등록 규정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정책바다> 법령정보>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9.3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8)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업종 확대	■ 17·18년도 업종 (발전·증기·폐기물처리·철강·비철·유기화학업) 시행	■ 19년도 적용 업종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질소)추가 시행 ※ (참고)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 (http://ieps.nier.go.kr)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21년까지 단계적 시행)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수도권외의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2부제 실시. 민간은 자율참여	■ 민간 참여도 의무화되어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뉴스·공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12월1일부터 안내시작	미특법 및 사·도 조례 (‘19. 2월)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9)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 신규 제정	■ (목적)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원칙과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 제시 ■ (물관리 기본원칙)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등 ■ (물관리위원회)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유역물관리 위원회의 구성·운영 ■ (물분쟁의 조정) 이해관계자는 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해 물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 (물문화 육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문화 육성, 물관리 국제협력 추진,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등을 위해 노력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본법 (‘19. 6월)
			환경부 물관리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 확대 적용, 가축분뇨 액비화 및 정화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 시스템	■ 허가대상	■ 신고대상까지 확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1월)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34)
	액비화 기준 중 부속도 기준	■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 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 시설	■ 신고대상 및 신고대상 미만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까지 확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3월)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34)
	정화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총질소 기준, mg/L)	■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기타지역) 500 이하 ■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특정지역) 500 이하 • (기타지역) 600 이하	■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기타지역) 250 이하 ■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특정지역) 250 이하 • (기타지역) 400 이하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1월)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25)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 수돗물 수질기준 총 60종	■ 수돗물 수질기준 총 61종으로 확대 • 우라늄 추가 ※(참고)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먹는물 수질관리 강화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9. 1월)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0)

환경부

구 분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토양오염 물질 및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확대		■ 토양오염물질 21종	■ 토양오염물질을 21종에서 23종으로 확대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확대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9. 1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3]	환경부 토양지하수와 (044-201- 7177)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경매		■ 100% 무상할당	■ 26개 유상할당업종의 경우 3% 유상할당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19. 1월)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 뉴스·공지> 2019년도 유상 할당계획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9)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기존화학 물질 등록체계 변경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지정·고시	■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30년까지 기존화학물질 등록하도록 개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19.1월)
			☞(참고)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보도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보도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 (044-201-6779)
	중점관리 물질 함유제품 신고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 지정·고시한 물질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 발암·돌연변이·생식능력 이상 등 위해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19.1월)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보도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보도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 (044-201-6785)
	신규화학 물질 신고	■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	■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변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19.1월)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보도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보도자료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 (044-201-6779)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 사전 승인제 도입· 시행	■ 관리제도 부재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 시행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1.1.)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 위해우려제품(화평법) * 관리대상 : 가정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학제품안전법) * 관리대상 가정용→사무실·다중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 * 제조·수입자는 3년마다 자가검사 후 검사결과 환경부에 신고, 안전기준 위반제품 사후관리 강화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보도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1.1.)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홍수가뭇대응능력 강화	■ 가뭄정보제공미비	■ 가뭄 정보 상황판을 통한 내주변의 가뭄 예측정보를 한눈에 확인 ☞ (참고)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홈페이지 https://drought.kwater.or.kr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044-201-7638)
슬레이트 주택 개량 추가 지원	■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취약계층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 비용도 추가로 가구당 최대 302만원 지원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 뉴스·공지> 2019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용 지원	석면안전 관리법 (‘17.11월)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801)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친환경 설비 개량 이자보전	■ 신규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를 위한 자금 대출시 이자의 일부 (2%p)를 국가가 지원	해운법 (`19.1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0)
노후예선 LNG연료 추진 전환 사업	■ 신규	■ LNG연료 추진 예선 전환을 희망하는 선령 20년 이상 항만 예선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전환 보조금 지원받아 대체건조 가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9.1월)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2)

문화체육관광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시·군·구당 1개소 (50만이상 추가 1개소 가능)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19년 30개소 (개소당 30억원) ■ 근립형 소규모체육관 건립 지원 • '19년 10개소 (개소당 10억원)	국민체육 진흥법 22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8)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 4개 지자체 지원	■ 25개 내외 지자체로 사업 대상지 확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3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 1인당 연 7만원 지원	■ 1인당 연 8만원으로 지원 확대 ※ (참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문화예술진흥법 ('19.2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044-203-2519)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제주·청주·김해공항 여객 편의 향상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2,589만명/년	■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3,175만명/년 (전년대비 586만명 ↑)	공항시설법 (~'19.12월)
	■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189만명/년 주차면수 : 4,138면	■ 여객터미널 수용능력 : 289만명/년 (전년대비 100만명 ↑) ■ 주차면수 : 4,872면 (전년대비 734면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28)
	■ (김해공항) 주차면수 : 5,972면	■ 주차면수 : 7,123면 (전년대비 1,151만명 ↑)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변 확대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 차별화	■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자본금 요건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 ■ 관광용 헬기 등록기준 완화 등	항공사업법 시행령 ('19.上)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자본금 요건 완화를 위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7)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 무거운 여행가방을 공항까지 가져가서 항공사에 위탁	■ 공항 갈 때 호텔에서 짐 부치는 수하물 위탁서비스 시범운영	국가항공 보안계획 ('19.下)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공항 갈 때 빈손으로" 수하물 위탁서비스 도입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8)
하늘길 확대로 항공교통이용자 편의 개선	■ 한-중-몽 항로 단선 운영으로 항공기 지연	■ '인천-중국-몽골 구간(1,700Km)'의 항공로 복선 운영을 통해 해당 노선의 항공기 지연 감소 및 보다 편리한 중국· 유럽행 여행 구현	한-중 합의서 체결 및 복선화 운영개시 ('18.12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044-201-429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자의 잔여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	■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구역내 잔여부지의 대해 우선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항만법 (‘19. 6월 예정)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70)
항만배후단지 입주자의 자격, 계약·해지,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한	-	■ 항만물류의 원활화 및 물동량 창출 등에 필요한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고, 항만배후 단지 관리기관 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제한	항만법 (‘19. 6월 예정)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200-5755)
무상사용 신고절차 생략	■ 준공 전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한 후 무상사용신고	■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항만시설 사용신고를 할 경우 무상사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준공 전 항만시설 사용일을 무상사용 신고일로 보아 별도 절차를 받지않아도 됨)	항만법 (‘19. 6월 예정)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 절차 명문화	■ 비관리청 항만공사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을 적용	■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 허가 조건과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항만법 (‘19. 6월 예정)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의무화	■ 비관리청 항만공사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을 적용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 강화	항만법 (‘19. 6월 예정)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